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4-17

전북형 돌봄체계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eonbuk State's Care System

이중섭 조원지 오병록 김현수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이중섭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원지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철학박사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오병록

서울시립대학교 공학박사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현수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4-17

전북형 돌봄체계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eonbuk State's Care System

이중섭 조원지 오병록 김현수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이중섭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일부, 5장 일부, 6장
공동연구	조원지	책임연구위원	제2장 일부, 3장 일부, 5장 일부
	오병록	책임연구위원	제2장 일부, 3장 일부
	김현수	전문연구원	제2장 일부, 제4장

자문위원	권영세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이선경	전북종합재가센터장
	정주애	전북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
	최창현	장애인인권연대 대표

연구관리 코드 : 24JU2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돌봄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고립은둔청년이나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위기청년의 증가로 인해 기존 돌봄체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새로운 돌봄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돌봄안전망 구축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23.2%이고 1인 가구도 35.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립은둔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도 약 5% 내외로 추정되며, 전북자치도의 맞벌이 가구는 2021년 말 기준 24.6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54.3%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
- 이처럼 맞벌이 가구와 함께 주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아동 돌봄이나 노인 및 장애인 돌봄도 일시적인 돌봄의 부재가 발생하는 등 돌봄욕구의 다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한 새로운 돌봄안전망 구축 필요
- 현행 돌봄정책은 국가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돌봄체계는 대부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돌봄까지를 포괄하는 데 한계 발생
- 따라서 보호와 요양 중심의 단순 돌봄을 뛰어넘어 심리·정서,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돌봄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민관 돌봄체계의 연계 강화로 돌봄서비스의 고도화와 질적 성장 견인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돌봄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타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주도의 돌봄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를 진단하여 전북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전북형 돌봄정책의 세부적인 실천 방안 제시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특별자치도의 돌봄정책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세가지로 제시
- 먼저 전북형 돌봄체계는 국가돌봄과 기존 지역돌봄과 연계하여 3단계로 다층의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국가의 돌봄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정책으로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으로 국가돌봄과 연계한 돌봄의 확장 지원 추진
- 두 번째는 돌봄환경의 변화에 따른 新돌봄수요(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소외 중장년 등)에 대응한 종합적인 돌봄정책이 가능하도록 민관의 다양한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돌봄사각지대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돌봄 안전망 구축 추진
- 마지막으로 전북형 돌봄체계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축, 즉, 돌봄필요도에 따른 돌봄수요층 대상 통합돌봄과 중위소득 85% 이하의 모든 도민에게는 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 돌봄 추진
- 돌봄필요도 조사에 기반하여 돌봄필요정도와 돌봄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되 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기준 487만원) 돌봄수요가 있는 중산층 등의 도민에게는 무상 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소득수준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부여
- 이를 통해서 전북자치도는 국가의 돌봄체계와 연동하여 모든 도민에게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실천방안 마련 필요
- 전북형 돌봄정책은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과 전담 조직 등 세부적인 실천로드맵 구상이 필요하고, 전담조직은 반드시 노인만이 아닌 장애인, 아동, 청년, 일반 지역주민을 모두 아우르는 행정조직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설계와 운영과정 필요
- 다만, 전북형 돌봄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특별돌봄서비스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단계적 전면 시행의 방향으로 추진 방안 마련 필요

차 례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장 돌봄의 개념 및 정책동향

- 1. 돌봄의 개념 및 정의 11
- 2. 국가 돌봄정책 현황 및 경향 13
- 3. 지역주도 돌봄정책 현황 및 사례 19
- 4. 선행연구 검토 33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돌봄수요 진단

- 1. 일반 지역주민 돌봄수요 진단 39
- 2. 노인돌봄수요 진단 43
- 3. 장애인 돌봄수요 진단 48
- 4. 아동 돌봄수요 진단 51
- 5. 청년 돌봄수요 진단 54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돌봄 정책 현황

1. 일반 지역주민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59
2. 노인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63
3. 장애인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76
4. 아동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사업	85
5. 청년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사업	93

제5장 전북형 돌봄체계 조성 및 운영방안

1. 추진 방향	99
2. 전북형 돌봄정책 추진(안)	101
3. 전북형 돌봄정책 추진체계(안)	116
4. 전북형 돌봄정책 예산계획(안)	123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129
---------------	-----

영문요약 (Summary)	131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1-1] 건강보험 65세 이상 인구 진료비 및 의약품 비중	4
[표1-2]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돌봄수요 추정	6
[표1-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7
[표 2-1] 중앙정부 돌봄 관련 정책	13
[표 2-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현황	14
[표 2-3]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주요 계획	15
[표 2-4] 노인 의료돌봄 대상별 맞춤형 연계 서비스	16
[표 2-5] 시범사업 대상자 현황	16
[표 2-6]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전달체계	17
[표 2-7]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18
[표 2-8] 서비스의 내용 및 단가	18
[표 2-9] 지역돌봄정책 주요내용	19
[표 2-10] 지역돌봄정책 주요사업 비교	20
[표 2-11] 지자체별 돌봄서비스(국가+지역) 대상별 현황	21
[표 2-12] 지역사회 통합돌봄관련 조례제정 현황	22
[표 2-1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조례 분석	23
[표 2-14]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사업 지역 조례 분석	24
[표 2-15] 경기도 누구나 돌봄 핵심가치	26
[표 2-16] 경기도 365돌봄 주요 내용	27
[표 2-17] 광주+돌봄 7대 서비스	28
[표 2-18] 광주형 돌봄 주요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	29
[표 2-19] 광주형 돌봄서비스 세부유형별 제공 현황	30
[표 2-20] 돌봄SOS 위기상황 판단기준	31
[표 2-21] 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서비스	31
[표 2-22] 서울 돌봄SOS 접수 및 이용현황	32
[표 2-23] 돌봄SOS 5대 돌봄서비스 제공현황	32
[표 2-24]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선행연구	33

[표 2-25] 노인 돌봄 관련 선행연구	34
[표 2-26] 장애인 돌봄 관련 선행연구	35
[표 2-27] 아동돌봄 관련 선행연구	36
[표 3-1] 전북특별자치도 입원환자 현황 및 사적간병자 추정	40
[표 3-2] 중증도별 입원환자 현황	41
[표 3-3]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및 추이	42
[표 3-4] 장기요양제도 노인돌봄사각지대 추정	43
[표 3-5] 장기요양보험의 치매돌봄 사각지대	44
[표 3-6]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및 이용비율	45
[표 3-7]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돌봄수요 추정	45
[표 3-8] 장기요양 이용자 추계(연평균 증가율 적용)	47
[표 3-9]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48
[표 3-10]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49
[표 3-1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49
[표 3-12]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이용자 현황	50
[표 3-13] 아동돌봄 사각지대 유형화	51
[표 3-14] 아동돌봄 시간대별 돌봄제도 및 사각지대	51
[표 3-15] 방과후 돌봄시설이용자 현황	52
[표 3-16] 가족돌봄청년 추정치	54
[표 3-17] 고립은둔인구 추정	55
[표 4-1]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지역주민 대상 돌봄서비스 현황	59
[표 4-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60
[표 4-3] 일상돌봄 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61
[표 4-4] 일상돌봄 서비스의 내용 및 단가	61
[표 4-5] 주민도움센터 운영현황	62
[표 4-6]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63
[표 4-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64
[표 4-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판정자 현황	65
[표 4-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판정자 현황	66
[표 4-1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돌봄유형별 이용자 현황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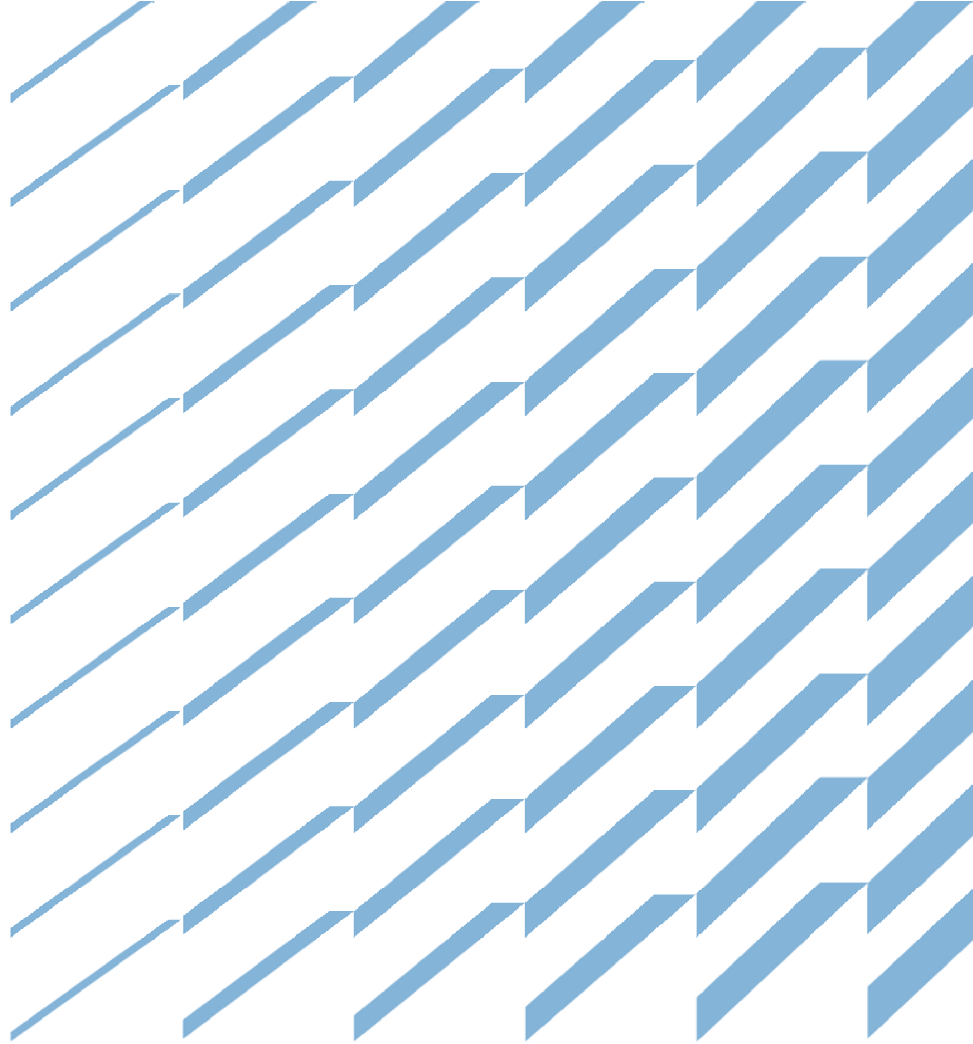
[표 4-11]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돌봄유형별 이용자 현황	67
[표 4-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및 현황	68
[표 4-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69
[표 4-14]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시범)	70
[표 4-15]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목록	71
[표 4-16] 노인응급안심지원서비스 내용 및 현황	72
[표 4-17] 급식지원 내용 및 현황	73
[표 4-18] 세부사업별 이용대상 가능자	74
[표 4-19] 세부사업별 이용가능 서비스 내용	75
[표 4-20] 장애인 돌봄정책 현황	76
[표 4-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내용	77
[표 4-2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78
[표 4-2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별 유형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79
[표 4-24]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현황	80
[표 4-25]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80
[표 4-26]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현황	81
[표 4-27]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82
[표 4-28]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서비스 현황	83
[표 4-2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84
[표 4-30] 초등돌봄서비스의 지원체계	85
[표 4-31] 연령에 따른 아동돌봄서비스 사업	86
[표 4-3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86
[표 4-3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 및 이용자 현황	87
[표 4-34]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88
[표 4-3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현황	88
[표 4-36] 전북특별자치도 드림스타트센터 사업내용	89
[표 4-37]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내용 및 이용자 현황	90
[표 4-38]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90
[표 4-39]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현황	91
[표 4-40]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지역별 지원현황	91
[표 4-41]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현황	92
[표 4-4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소득기준	92

[표 4-43] 청년대상 돌봄서비스 현황	93
[표 4-44] 청년마음건강서비스 현황	94
[표 4-4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94
[표 4-4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95
[표 4-4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대비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자 현황	96
[표 5-1] 전북형 함께돌봄 정책 구조	102
[표 5-2]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함께돌봄(안) 지원대상 구분	103
[표 5-3] 전북형 함께돌봄 유형 및 내용	105
[표 5-4] 전북형 돌봄 지원대상 및 정책목표	108
[표 5-5] 전북형 함께돌봄 지원대상 분류	109
[표 5-6] 전북형 함께돌봄 대상별 돌봄서비스 유형	113
[표 5-7] 전북형 8대 특별돌봄 주요사업 및 지원단가	114
[표 5-8] 돌봄서비스 신청 및 조사방법	116
[표 5-9] 전북형 특별돌봄 추진체계	117
[표 5-10] 전북형 함께돌봄 정책 대상과 방향	123
[표 5-11] 전북형 함께돌봄 중장기사업 목표 및 예산계획	124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요양시설 현황 및 추이	4
[그림 1-2]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대별 고립은둔인구 추정	8
[그림 2-1]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30
[그림 3-1]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대별 입원환자 현황	39
[그림 3-2] 전북특별자치도 중증도별 입원환자 현황	41
[그림 3-3]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돌봄 사각지대 추정	46
[그림 3-4]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추정	50
[그림 3-5]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돌봄지원 대상 및 사각지대 유형 분류	53
[그림 3-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돌봄수요 유형 추정	55
[그림 3-7]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대별 고립은둔인구 추정	55
[그림 4-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률 현황	79
[그림 4-2] 전북자치도 장애인생활지원서비스 주행거리 현황	83
[그림 5-1] 전북형 함께돌봄 정책 비전	100
[그림 5-2] 전북형 함께돌봄 다층적 돌봄지원 구조	101
[그림 5-3] 전북형 함께돌봄 유형 및 지원대상 분류	106
[그림 5-4] 전북형 함께돌봄 지원대상 분류	107
[그림 5-5] 전북형 함께돌봄 지원 우선순위 분류	110
[그림 5-6] 전북형 8대 특별돌봄	112
[그림 5-7] 전북형 특별돌봄 전달체계	113
[그림 5-8] 전북형 함께돌봄 지원체계	119
[그림 5-9] 전북형 함께돌봄 전달체계	120
[그림 5-10] 전북형 함께돌봄 수행주체별 사업내용	121
[그림 5-11] 전북형 특별돌봄 주요 전달체계 및 역할	122
[그림 5-12] 전북형 함께돌봄 정책대상 추정	123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 고령인구의 증가와 돌봄수요의 확대로 인해 돌봄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국가적으로는 돌봄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돌봄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증가율이 2.7%였지만 2021년에는 6.8%, 2022년에는 9.2%, 2023년에는 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돌봄에 수반되는 비용은 대부분 국가의 공적장기요양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아 일평균 15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이 같은 지출액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적 간병비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평균값을 10.1만원으로 추정)
- 공적 돌봄비용의 미흡으로 인해 사적 간병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6조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0조원 정도되는 것으로 추정
- 특히, 가족간병에 대한 의존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5.3%, 요양병원 74.8%, 그리고 종합병원 63.1%으로, 평균적으로 가족간병에 대한 의존도는 61.2% 정도임
- 여기에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돌봄비용 중에서도 노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돌봄의 사회적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총 진료비는 102.9조원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43.2조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42.0%를 차지하고 있고, 총 약품비 23.0조원 중 노인의 약품비는 10.5조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45.6%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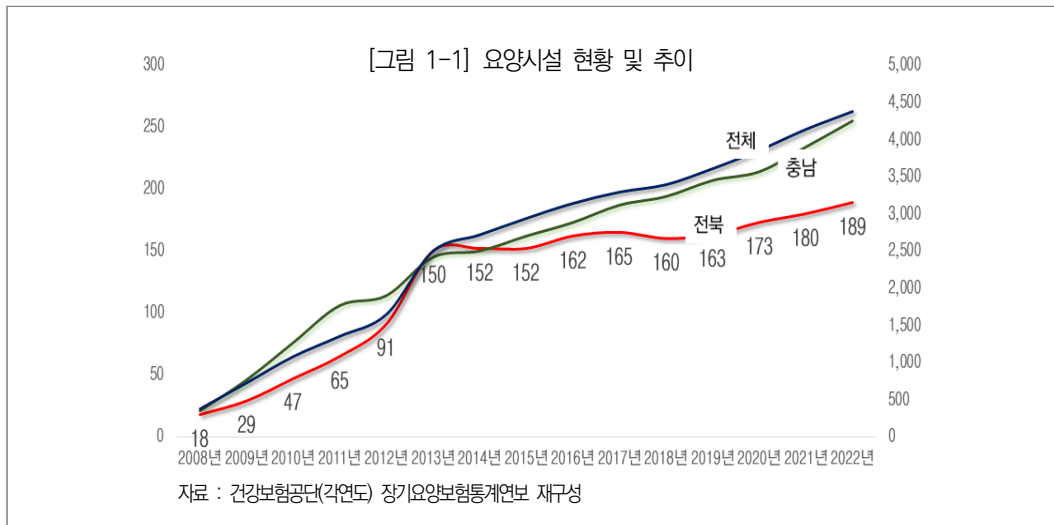
[표1-1] 건강보험 65세 이상 인구 진료비 및 의약품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총진료비 (A)	노인인구 진료비(B)	비중 (B/Ax100)	총약품비 (C)	노인인구 약품비(D)	비중 (D/Cx100)	1인당 65세 이상 월평균진료비	1인당 전체 인구의 월평균진료비
2018년	779,141	311,173	39.9	178,764	73,027	40.9	378,657	126,891
2019년	857,938	347,251	40.5	193,211	80,706	41.8	409,536	140,663
2020년	868,339	365,320	42.1	200,085	88,683	44.3	404,331	141,086
2021년	934,984	396,491	42.4	213,094	96,955	45.5	415,887	151,613
2022년	1,029,770	432,348	42.0	230,481	105,058	45.6	429,585	166,073
증감율 (18-22)	32.17	38.94	5.26	28.93	43.86	11.49	13.45	30.88

자료 : 건강보험공단(각연도)

-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의 사회적 비용 확대에 대응한 돌봄지원체계 구축 필요
-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약 63.7%를 차지하고 있음(전체 진료비 4.8조원 중 3.1조원)
- 특히,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약 70% 이상이 노인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어 고령인구의 입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에서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필요
- 돌봄정책의 필요성은 돌봄수요의 대부분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유입되고 있어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축 필요



■ 돌봄사각지대 완화 필요

- 전북형 돌봄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의 돌봄지원정책만으로는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북자치도 차원의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
- 국가의 핵심돌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대부분 치매노인과 외상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 국가의 돌봄정책은 대부분 혼자서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외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외상경계에 있는 노인이나 입원 대기 중인 재가 노인 등은 돌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전북자치도는 고령인구의 증가에도 돌봄인력과 돌봄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가 다수 존재
- 기존 노인돌봄사업은 외상노인의 보호중심으로만 지원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 계층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부재
-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의 돌봄사각지대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IADL)의 장애를 기준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 필요
- 따라서 전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ADL장애 노인과 IADL장애 노인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최저기준과 최소기준의 단계적 충족 필요
- 전북의 돌봄필요노인을 추정해 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장애가 있는 노인은 총 6.2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여기에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 10.9만명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 돌봄필요 노인은 17.1만명으로 추정
 - 전북의 돌봄필요노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65세에서 69세의 노인은 약 3.2만명 정도가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70세에서 74세의 노인은 3.2만명, 75세에서 79세는 3.1만명 그리고 70세 이상은 약 6.5만명 정도가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표1-2]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돌봄수요 추정

(단위: %, 명)

특성	기능제한 없음	도움필요노인			전북 노인인구	도움필요노인			돌봄필요 노인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치매노인		IADL 장애	IADL+ ADL	치매노인		
전체	87.8	6.6	5.6	25.3	423,128	27,926	23,695	107,051	158,672	
연령	65~69세	98.7	2.8	1.5	20.6	129,798	3,634	1,947	26,738	32,319
	70~74세	91.9	4.7	3.4	25.7	95,537	4,490	3,248	24,553	32,291
	75~79세	86.5	7.6	5.8	28.0	76,268	5,796	4,424	21,355	31,575
	80~84세	78.2	11.4	10.5	27.8	65,548	7,472	6,883	18,222	32,577
	85세 이상	58.0	19.2	22.8	34.0	55,977	10,748	12,763	19,032	42,543
	전체	-	-	-	-	-	32,140	29,265	109,901	171,306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노인실태조사 재구성

- 이를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 외상노인만이 아닌 경증 노인까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보건소, 건보공단 등)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완화 필요
- 한편 돌봄사각지대는 노인만이 아닌 장애인도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장애인돌봄정책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대비 이용자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상당한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5,163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13.0만명의 3.97% 수준으로 전국 평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인 4.68%보다도 낮은 수준임
- 특히, 전체 장애인의 약 35.3%는 일상생활수행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11.3%는 대부분 혹은 거의 전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면 전체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중증의 경우 최대 5%정도는 돌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증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장애인의 약 30% 이상이 여전히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1-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활동지원 대상자	123,715	23,121	9,052	5,727	6,866	4,808	5,520	1,788	663	26,946	2,900	3,859	5,598	5,163	5,716	5,625	8,597	1,715
등록 장애인	2,641,896	389,735	175,467	130,520	152,226	69,314	71,440	51,383	12,944	586,421	100,515	97,117	134,004	130,189	136,472	178,341	188,825	36,918
활동지원 이용률	4.68	5.93	5.16	4.39	4.51	6.94	7.73	3.48	5.04	4.59	2.94	3.97	4.18	3.97	4.19	3.15	4.55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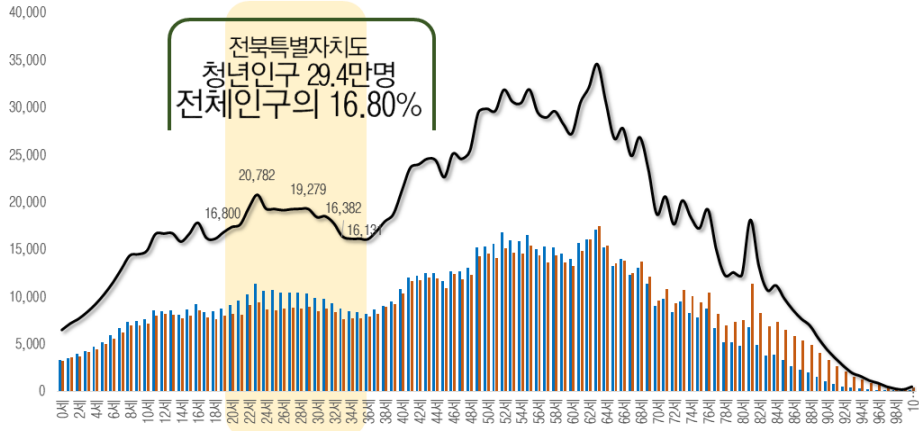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추정해 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11,488명 그리고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8,187명으로 이중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5.1천명을 제외하면 약 1.5만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이 대부분 저소득의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상생활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돌봄서비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돌봄정책 개발 필요
- 아동돌봄에 있어서도 연령대별 돌봄욕구에 따른 돌봄인프라와 돌봄서비스가 여전히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별로 돌봄사각지대의 형태와 유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아동돌봄의 연령대별 돌봄인프라의 부족과 함께 아동입원이나 맞벌이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에서의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동돌봄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내에서 위기돌봄의 일정 지원 이외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특히, 아동돌봄 사각지대는 도시와 농촌에 따라 사각지대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돌봄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사업발굴 추진 필요

■ 돌봄수요의 다양화와 다변화 대응 필요

- 기존 와상노인 중심의 단순한 돌봄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돌봄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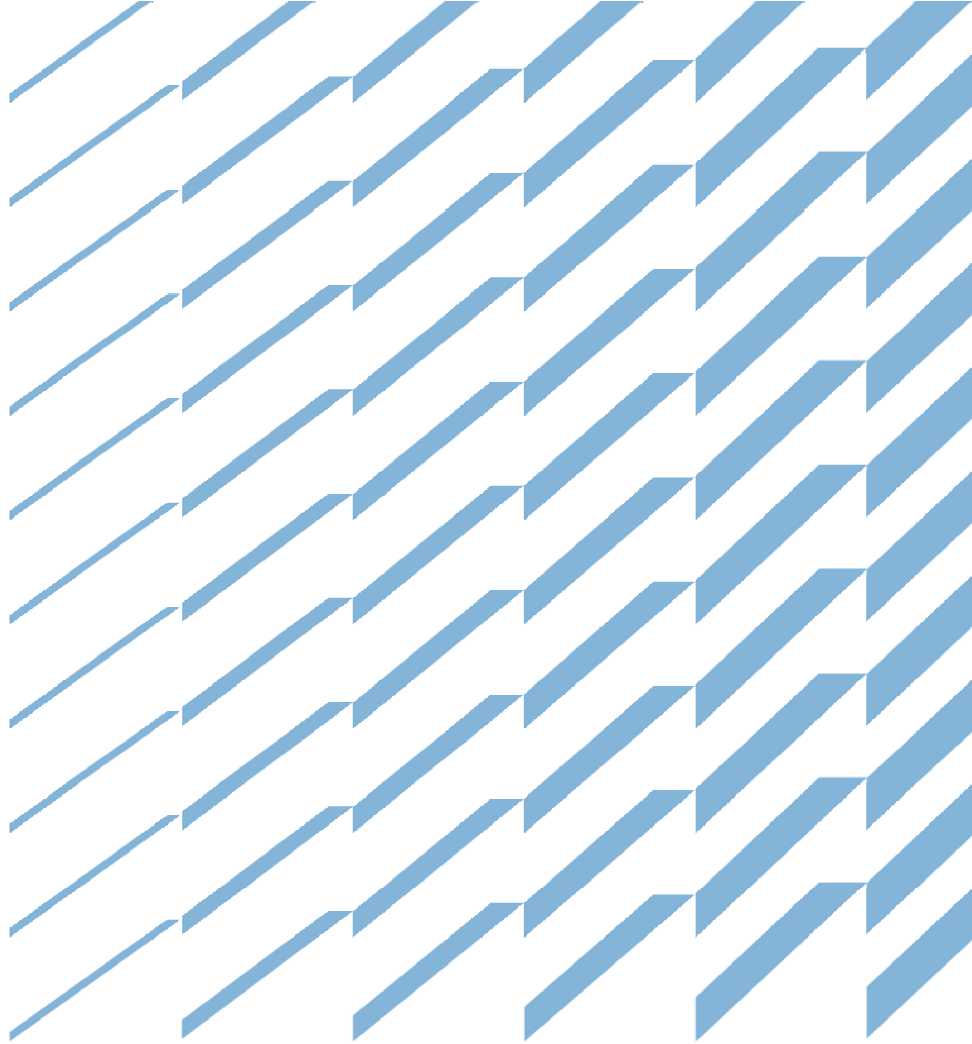
[그림 1-2]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대별 고립은둔인구 추정



구분	19~34세	35~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출현율	5.0	5.4	6.6	8.3	10.5
전체인구수	294,796	330,930	455,917	225,335	197,793
고립인구추정	14,740	17,870	30,091	18,703	20,76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재구성

- 최근 고립과 은둔 그리고 사회적 배제 등을 경험하는 지역주민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돌봄정책의 수요도 단순 보호중심에서 상담과 재활, 보건의료와 주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새로운 돌봄수요에 대응한 돌봄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최근 청년의 가족돌봄도 증가하고 있고 고립과 은둔 상황에 노출된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돌봄환경의 변화와 돌봄대상의 다양화에 능동적인 대응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에서는 청년의 부양가능성이 큰 저소득, 한부모, 중증장애인 가구의 청년인구는 약 4.4만가구의 8.3만명 정도이고, 취약가구를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인구는 최소 8.3만명에서 최대 9.2만명 정도로 추정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 중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최소 1.3만명에서 최대 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 결과 추정치 적용)
- 따라서 새로운 돌봄수요에 대응한 지역차원의 돌봄육구 진단과 맞춤형 돌봄정책 개발 필요



제 2 장

돌봄의 개념 및 정책 동향



1. 돌봄의 개념 및 정의
2. 국가 돌봄정책 현황 및 경향
3. 지방주도 돌봄정책 현황 및 사례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돌봄의 개념 및 정책 동향

1. 돌봄의 개념 및 정의

■ 돌봄의 개념 및 정의

-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치매와 중풍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동안 돌봄의 주체로서 개인이나 가구의 차원을 벗어나 국가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수요의 증가는 단순한 고령노인의 양적 증가에 국한되지 않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다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돌봄의 사전적 개념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국어교육원, 2023)로 정의되지만 학술적 의미에서 돌봄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임
- 돌봄은 돌봄대상자의 돌봄욕구에 따라 그리고 적용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서 일관적인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돌봄은 그 영역과 내용을 두고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돌봄은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개선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Fisher & Tronto, 1990)이라고 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됨
- 협의의 개념으로는 돌봄은 단순히 기저귀를 교체하고 집을 청소하고 노인을 돌봐주는 행위(Brandsen, 2009)로 정의됨
- 하지만 최근 돌봄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먹고, 씻고, 정돈하는 등 기능적 돌봄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호신뢰와 상호존중 및 배려와 같은 관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서비스가 분화하고 전문화되기 이전 돌봄은 단순히 스스로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간병이나 일시적 보호, 양육, 요양 등으로 협소하게 정의했지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보호나 간병 등의 협소한 돌봄에서 교육이나 보건의료, 주거와 상담 및 재활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 특히, 최근 고령노인의 증가는 치매나 중풍 등의 의료적 돌봄과 함께 재활과 치료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독거노인은 요양이나 주거 등의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의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현행 법에서도 돌봄은 단순한 보호나 케어로 한정하지 않고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 올해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 제정)에서는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의 사업유형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등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일상생활돌봄의 구체적인 사업유형으로 가사활동지원, 이동지원, 보조기기서비스, 시설이나 기관의 통원서비스,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복지시설 생활자 지역사회 복귀서비스, 복지안내서비스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이른바 돌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돌봄의 개념은 일상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처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돌봄의 개념도 협의의 개념이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어 돌봄정책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돌봄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생활 지원 사회서비스를 통칭하여 돌봄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의 돌봄욕구는 단순히 보호만의 욕구가 아닌 치료와 재활 그리고 교육 등이 다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돌봄의 개념은 기존 단순 보호의 개념에서 의료와 재활, 사회서비스와 교육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 함
- 따라서 돌봄에 대한 정의는 단순한 법률적 및 학술적 정의로 개념화하기보다는 전 생애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목표를 두고 돌봄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국가 돌봄정책 현황 및 경향

■ 국가 돌봄정책의 현황 및 경향

- 돌봄정책은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법과 제도 하에서 돌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재가급여자,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자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 중앙정부 돌봄 관련 정책

구분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	제4차 치매관리계획	의료돌봄통합지원
기간	2018~2022	2019~2025	2021~2025	2023~2025
추진조직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주요 대상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및 가족	장기요양재가급여자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장기요양등급외자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인정	기분, 심화평가	선별평가, 심화평가 (돌봄필요도 조사)
	확대 계획	인공지능(6)등급 확대 경증치매	지역 및 대상 확대	장기요양등급판정 개편 장기요양5등급 인공지능 등급(삼타) 대상
주요 서비스	재가	통합재가, 가족상담 확대	만성질환자 관리, 등외자 돌봄	통합재가, 순회방문서비스, 주간단기보호, 가족지원
	시설	치매전담형 기관, 전문요양실 도입지역중심 노인의료-시설-재가 연계	장기입원자 지역복귀, 퇴원 후 단기돌봄, 회복지원	방문의료(75세 이상 노인) 퇴원환자 재가복지지원 주간지원 일상생활지원(이동, 가사 등)
제공자	기관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지정경신제 도입, 공립요양시설, 주간보호 등 확대	요양병원, 의료기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 참여 확대, 공급인프라 확충	치매안심센터 분소,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병원
	인력	요양지도사 도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본청 통합돌봄추진단, 읍면동 통합돌봄안내창구 담당자,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등	노인일자리 연계,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치매환자 공공후견, 치매파트너
전달 체계	신규	이용지원 강화사례관리 체계화	통합돌봄안내창구, 지역케어회의, 민관협의체 등	치매안심센터 종합코디네이터 역할맞춤형 서비스계획 수립지역지원 연계
재정	주요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세	조세
	개편	본인부담 경감 확대, 비급여의 급여화, 보험재정 확충, 거버넌스 체계 재편 등	공공 민간 거버넌스 검토(지자체 내 유사 및 중복사업 조정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활용 등

- 국가차원에서는 돌봄정책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외에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치매관리 계획 그리고 최근 의료돌봄통합지원까지 다양한 제도적 실험을 통해서 돌봄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와 돌봄자원 연계
- 최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은 장기요양보험 등 기존의 돌봄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던 장기요양재가급여자나 요양병원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방문의료를 포함하여 주거지원과 일상생활지원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재택의료,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기존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돌봄 제공
-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 초까지 수행할 예정으로 시범지역은 경기도 부천과 안산, 충북 진천, 전북 전주 등 총 12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돌봄필요도를 조사하여 돌봄대상을 선별, 지원하고 있음
-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주로 75세 이상 노인 중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전체 대상자 중 70%이상을 이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 우선 대상자로는 장기재가요양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노인맞춤돌봄의 중점군, 장기요양 미인정자, 퇴원환자 중 의료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특정하고 있어 1차적으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등급외자, 중점군 등 실제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가 주된 정책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현황

구분	주요내용
돌봄필요자 범위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세 이상 노인 중, 요양병원(시설) 이용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전체 대상자 중 70% 이상) · (우선 대상자) 장기요양재가급여자(40%), 장기요양등급외자 A, B 및 노인맞춤돌봄중점군, 장기요양미인정자(20%), 퇴원환자(병원퇴원 이후 2주 이내 환자, 10%) 중 의료-돌봄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자 · 그 외 일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대상자 발굴체계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창구운영 (읍면동주민센터) · 통합안내창구(보건소, 건보공단지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DB)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 시범사업 준비 초기 지자체 내 75세 이상 우선 대상자 (장기요양재가 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노인맞춤돌봄 중점군)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욕구 및 상태 확인
대상자 돌봄필요도 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조사 도구를 활용한 돌봄 필요도 확인 · 돌봄필요가 확인되는 경우 심화평가(필요도조사)실시 (본청 노인통합지원센터 총괄, 통합지원창구(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 지원, 필요시 건보공단 담당자 공동 조사 실시)

자료 : 보건복지부(2024) 의료돌봄 사업운영안내

[표 2-3]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주요 계획

연도	목적	세부사업 계획
2023년	운영기반 조성	· 지자체별 사업기획 및 운영 · 우선대상자 기반 사업운영체계 마련 · 의료돌봄서비스 확충 ·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협업체계 마련
2024년	운영모델 고도화	· 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담당인력 보강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 고도화 · 의료돌봄 서비스 이용체계 고도화 · 통합지원회의 운영 노하우 축적
2025년	운영모델 안착기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자체별 운영계획 마련 · 시범사업 대상자의 만족도 및 변화 등에 대한 추적관찰 · 본청-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 서비스 질 내실화
2026년	전국적 모델로 보편화	· 시범사업 지자체 이외 자체 지자체를 위한 매뉴얼, 컨설팅, 교육 등의 초기지원 · 시범사업 지자체의 운영과정 우수사례 보급

자료 : 보건복지부(2024) 의료돌봄 사업운영안내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로드맵을 보면, 2023년 시범사업 초기에는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지자체별 사업기획과 운영, 우선대상자 기반 사업운영체계 마련, 의료돌봄서비스 확충 그리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협업체계 마련을 세부사업으로 추진
- 2024년에는 운영모델 고도화를 목적으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등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 고도화, 의료돌봄 서비스 이용체계 고도화 그리고 통합지원회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을 세부사업으로 추진
- 2025년에는 운영모델 안착을 목적으로 지자체별 운영계획 마련, 시범사업 대상자의 만족도 및 변화 등에 대한 추적관찰, 본청과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그리고 서비스 질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2026년에는 전국적 모델로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시범사업 지자체 이외 지역을 위한 매뉴얼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과 시범사업 지자체의 운영과정 중 우수사례에 대한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
- 한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원활한 지역사회로의 유인을 위해 방문의료 및 퇴원환자 확대를 위한 의료돌봄서비스 확충 제시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모델을 적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대상자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그리고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 수행

[표 2-4] 노인 의료돌봄 대상별 맞춤형 연계 서비스

대상	목적	관련 맞춤형 서비스			
장기요양 재가노인	·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지연 · 안전한 재가생활 유지	재가요양 서비스	방문의료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재가노인 (장기요양 진입전)	· 장기요양보험제도 진입 지연 · 안전한 재가생활 유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문의료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생활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퇴원환자	· 원활한 재가생활 복귀+정착 · 안전한 재가생활 유지	방문의료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노인맞춤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 실제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의료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을 보면, 총 4,273명의 이용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약 2.0천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5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장기요양 등급외자가 555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대부분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이 전체 지원자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의 자체계획에 따른 자체유형도 약 20%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당초 본 사업의 정책목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된 퇴원환자 184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4.3%정도로 다른 지원대상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참여자 중 우선 관리대상자는 총 3,368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78.8%를 차지, 시범사업 12개 지역 중에서 대덕구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우선 관리대상자의 권고기준인 60%를 충족

[표 2-5] 시범사업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지역	합계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자체유형	
		n	%	n	%	n	%	n	%	n	%
광주 서구	403	256	63.5	27	6.7	16	4.0	12	3.0	92	22.8
광주 북구	730	434	59.5	179	24.5	49	6.7	3	0.4	65	8.9
대전 대덕구	215	78	36.3	6	2.8	7	3.3	8	3.7	116	54.0
대전 유성구	302	161	53.3	21	7.0	6	2.0	10	3.3	104	34.4
경기 부천시	450	265	58.9	31	6.9	17	3.8	14	3.1	123	27.3
경기 안산시	409	247	60.4	49	12.0	7	1.7	21	5.1	85	20.8
충북 진천군	228	98	46.0	20	8.8	11	4.8	69	30.3	30	13.2
충남 천안시	420	209	49.8	91	21.7	14	3.3	18	4.3	88	21.0
전북 전주시	330	178	53.9	35	10.6	37	11.2	7	2.1	73	22.1
전남 여주시	356	272	76.4	25	7.0	45	12.6	1	0.3	13	3.7
경북 의성군	142	90	63.4	28	19.7	8	5.6	2	1.4	14	9.9
경남 김해시	288	114	39.6	43	14.9	10	3.5	19	6.6	102	35.4
합계	4,273	2,402	56.2	555	13.0	227	5.3	184	4.3	905	21.2

자료 : 최재우(2024)

[표 2-6]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전달체계

주요기관	사업내용
본청 노인통합지원센터	사업운영전반총괄관리, 통합지원계획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
통합지원창구	신규 대상자 상담 및 선별 조사, 필요도조사 등 본청 업무 지원, 읍면동 내 서비스 연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제 발굴, 통합안내창구 업무수행, 지자체 통합지원회의 지원 등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	통합지원회의 참여, 서비스 업무

-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전달체계는 대상자의 발굴 및 접수단계를 거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에 대한 필요도조사 그리고 조사결과에 기반한 통합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실시, 제공계획수 립과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로 진행

■ 일상돌봄서비스 현황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수요계층 이 외에 돌봄이 필요한 일상적 돌봄의 대상으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을 제시하고 관련 돌봄지원 추진 중
- 중앙정부의 일상돌봄의 주요 정책대상은 중장년과 청년이고 관련 돌봄서비스는 재가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제공하고 특화서비스로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그리고 간병 교육과 건강생활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일상돌봄서비스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청년과 장 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수요와 욕 구가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실적 향 상 등을 통한 고도화의 선도사례를 창출한다는 점임
- 일상돌봄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그 리고 동행지원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교류증진지원, 건강생활지원 등 총 10개 서비스로 구성
- 일상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서 A형에서부터 D형까지 4가지 형태로 구분하 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36시간,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12시간, 그리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는 72시간, 마지막으로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화서비스인 D형만 이용가능

[표 2-7]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구분	주요내용
돌봄필요 중장년	·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 · (돌봄필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돌봄자 부재) ① 주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부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② 동거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③ 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가족돌봄청년	·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만 13세-34세) ·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가능

자료 : 보건복지부(2024) 보도자료

-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는 식사 및 영양관리, 병원동행, 맞춤형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그리고 소셜다이닝과 교류증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 서비스로는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휴식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으로 구성

[표 2-8] 서비스의 내용 및 단가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단가
돌봄 필요 중장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월 25만원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월 24만원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4회)	월 24만원
	휴식 지원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일 6.3만원
	건강생활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월 20만원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월 12만원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월 20만원
가족 돌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월 25만원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월 24만원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4회)	월 24만원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일 6.3만원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8회)	과정당 15만원
	독립생활 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3회)	월 12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2024)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재구성

- 전술한 바와 같이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대상의 제한없이 돌봄욕구가 있는 모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의 본인부담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 일상돌봄서비스의 이용료는 기본서비스의 경우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20%이하부터는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부담하고, 특화서비스는 수급자·차상위는 5%, 중위소득 120% 이하부터는 20%에서 최대 100%까지 본인부담률 설정

3. 지역주도 돌봄정책 현황 및 사례

■ 지역돌봄정책 대상 및 주요내용 비교

- 국가돌봄 이 외 지역차원에서도 국가돌봄이 보호하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형 돌봄정책을 개발하여 추진 중

[표 2-9] 지역돌봄정책 주요내용

구분	지원대상	연간 1인당 이용한도	전담조직	서비스종류	비고
서울 돌봄S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 돌봄 : 만 50세 이상 성인 및 장애인 중심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본인부담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5대 중장기 돌봄 : 모든 시민 이용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160만원	서울시 안심돌봄과 돌봄SOS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100%이하 시민은 전액 지원 중위소득 100%이상 시민은 전액 본인부담
광주 광주다움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①신체기능 저하, ②돌볼 수 있는 사람 부재, ③서비스 공백인 경우 기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부족한 경우(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보충적 서비스로 활용 가능 * 광주형 돌봄서비스 이용 중 동일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광주돌봄은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주돌봄 연간 100만원 ② 긴급돌봄 연간 60만원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통합돌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광주돌봄 · 가사지원 · 식사지원 · 동행지원 · 건강지원 · 주거편의 · 일시보호 ② 긴급돌봄 	
대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거주 모든 시민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전액 무상지원 	서비스 이용한도 있음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돌봄 · 재가돌봄 · 주거편의 · 이동지원 · 영양급식 · 단기시설 ② 통합돌봄 ③ 스마트돌봄 ④ 방문건강 ⑤ 민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장애인, 아동, 장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무료 · 중위소득 81~120% 본인부담 50% ·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100%
경기 누구나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위 3개의 위기상황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연간 150만원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형 · 생활돌봄 · 동행돌봄 · 주거안전 · 식사지원 · 일시보호 ② 확대형 · 재활돌봄 ·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 중위소득 120%~150% 50% 지원 · 중위소득 150%이상 전액자부담
제주 가처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틈새돌봄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전액 무료 (85%초과 전액자부담) · 긴급돌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전액 무료 (150%초과 전액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틈새돌봄 연 150만원 · 긴급돌봄 연 60만원 	제주도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틈새돌봄 · 가사지원 · 식사배달 · 일시보호 · 주거편의 ② 긴급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틈새돌봄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전액 무료 (85%초과 전액자부담) · 긴급돌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전액 무료 (150%초과 전액자부담)

[표 2-10] 지역돌봄정책 주요사업 비교

구분	대상	주요사업																																								
서울	돌봄욕구를 가진 모든 서울시민 ① 어르신 ② 중장년(만50세~64세) ③ 장애인 * 자격기준 ①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 발생 ④ 최근 1~3개월 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상황이 발생한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명</th> <th>서비스내용</th> <th>지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5대 돌봄</td> <td>일시재가</td> <td>청소, 세탁, 식사지원 등</td> <td>60시간</td> </tr> <tr> <td>단기시설</td> <td>시설입소 후 보호(1일 70,500원)</td> <td>14일</td> </tr> <tr> <td>동행지원</td> <td>외출동행, 이동지원, 업무보조</td> <td>12회</td> </tr> <tr> <td>주거편의</td> <td>가정 내 수리, 보수, 청소 방역, 세탁</td> <td></td> </tr> <tr> <td rowspan="4">5대 중장기 돌봄연계</td> <td>식사배달</td> <td>식생활유지를 위한 식사배달</td> <td>30식</td> </tr> <tr> <td>안부확인</td> <td>서울시, 자치구, 동단위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관 연계</td> <td></td> </tr> <tr> <td>간강지원</td> <td>보건소 건강돌봄, 방문진료, 의료기관, 기타 지역사회자원 연계</td> <td></td> </tr> <tr> <td>돌봄제도</td> <td>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기타 공적 돌봄제도 연계</td> <td></td> </tr> <tr> <td>사례관리</td> <td>동주민센터 및 사례관리, 민간복지기관 연계</td> <td></td> </tr> <tr> <td>긴급지원</td> <td>소득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긴급지원 기금 등 연계</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지원한도	5대 돌봄	일시재가	청소, 세탁, 식사지원 등	60시간	단기시설	시설입소 후 보호(1일 70,500원)	14일	동행지원	외출동행, 이동지원, 업무보조	12회	주거편의	가정 내 수리, 보수, 청소 방역, 세탁		5대 중장기 돌봄연계	식사배달	식생활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30식	안부확인	서울시, 자치구, 동단위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관 연계		간강지원	보건소 건강돌봄, 방문진료, 의료기관, 기타 지역사회자원 연계		돌봄제도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기타 공적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동주민센터 및 사례관리, 민간복지기관 연계		긴급지원	소득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긴급지원 기금 등 연계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지원한도																																					
5대 돌봄	일시재가	청소, 세탁, 식사지원 등	60시간																																							
	단기시설	시설입소 후 보호(1일 70,500원)	14일																																							
	동행지원	외출동행, 이동지원, 업무보조	12회																																							
	주거편의	가정 내 수리, 보수, 청소 방역, 세탁																																								
5대 중장기 돌봄연계	식사배달	식생활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30식																																							
	안부확인	서울시, 자치구, 동단위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관 연계																																								
	간강지원	보건소 건강돌봄, 방문진료, 의료기관, 기타 지역사회자원 연계																																								
	돌봄제도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기타 공적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동주민센터 및 사례관리, 민간복지기관 연계																																									
긴급지원	소득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긴급지원 기금 등 연계																																									
대전	돌봄이 필요한 대전시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명</th> <th>서비스내용</th> <th>지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기본돌봄</td> <td>일시재가</td> <td>24시간 돌봄(가정방문 등)</td> <td rowspan="2">연 160만원 한도 최대 300만원</td> </tr> <tr> <td>주거편의</td> <td>주택 수리, 보수, 가정청소, 수납정리, 방역위생</td> </tr> <tr> <td>이동지원</td> <td>병의원 외출시 이동지원</td> <td rowspan="2">월 20식(최대#50식)</td> </tr> <tr> <td>영양급식</td> <td>질병, 부상, 수술, 퇴원 등 노인장애인 영양급식</td> </tr> <tr> <td rowspan="2">스마트돌봄</td> <td>단기보호</td> <td>퇴원환자 단기보호, 긴급지원 등</td> <td>연 최대 14일 최대 60만원</td> </tr> <tr> <td></td> <td>돌봄로봇, 로봇 등 정서지원돌봄</td> <td>1,000대 보급</td> </tr> <tr> <td rowspan="2">재택의료, 방문의료 지원</td> <td></td> <td>IoT기반 돌봄스마트기기 제공</td> <td></td> </tr> <tr> <td></td> <td>이동시설 교육콘텐츠제공, 24시간 돌봄</td> <td></td> </tr> <tr> <td rowspan="2">커뮤니티 공유공간</td> <td></td> <td>재택의료, 일차의료(한외포함)</td> <td>연 최대 24일</td> </tr> <tr> <td></td> <td>퇴원환자 단기보호 지원</td> <td>연 최대 14일</td> </tr> <tr> <td></td> <td></td> <td>커뮤니티 어울림 공간 조성</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지원한도	기본돌봄	일시재가	24시간 돌봄(가정방문 등)	연 160만원 한도 최대 300만원	주거편의	주택 수리, 보수, 가정청소, 수납정리, 방역위생	이동지원	병의원 외출시 이동지원	월 20식(최대#50식)	영양급식	질병, 부상, 수술, 퇴원 등 노인장애인 영양급식	스마트돌봄	단기보호	퇴원환자 단기보호, 긴급지원 등	연 최대 14일 최대 60만원		돌봄로봇, 로봇 등 정서지원돌봄	1,000대 보급	재택의료, 방문의료 지원		IoT기반 돌봄스마트기기 제공			이동시설 교육콘텐츠제공, 24시간 돌봄		커뮤니티 공유공간		재택의료, 일차의료(한외포함)	연 최대 24일		퇴원환자 단기보호 지원	연 최대 14일			커뮤니티 어울림 공간 조성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지원한도																																							
기본돌봄	일시재가	24시간 돌봄(가정방문 등)	연 160만원 한도 최대 300만원																																							
	주거편의	주택 수리, 보수, 가정청소, 수납정리, 방역위생																																								
	이동지원	병의원 외출시 이동지원	월 20식(최대#50식)																																							
	영양급식	질병, 부상, 수술, 퇴원 등 노인장애인 영양급식																																								
스마트돌봄	단기보호	퇴원환자 단기보호, 긴급지원 등	연 최대 14일 최대 60만원																																							
		돌봄로봇, 로봇 등 정서지원돌봄	1,000대 보급																																							
재택의료, 방문의료 지원		IoT기반 돌봄스마트기기 제공																																								
		이동시설 교육콘텐츠제공, 24시간 돌봄																																								
커뮤니티 공유공간		재택의료, 일차의료(한외포함)	연 최대 24일																																							
		퇴원환자 단기보호 지원	연 최대 14일																																							
		커뮤니티 어울림 공간 조성																																								
광주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 누구나 ① 영유아 ② 아동청소년 ③ 노인 ④ 장애인 ⑤ 1인 가구(청년, 장년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내용</th> <th>지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가사지원</td> <td>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신체활동(식사, 세면, 일상생활(외출동행 등), 방문목욕</td> <td rowspan="2">연 150만원 *1회 추가 지원 가능</td> </tr> <tr> <td>식사지원</td> <td>맞춤형 영양설계, 영양음식 조리배달(일반식, 죽식, 간편식 등)</td> </tr> <tr> <td>동행지원</td> <td>병원동행, 관공서 외출동행</td> <td></td> </tr> <tr> <td>간강지원</td> <td>방문진료, 방문맞춤운동</td> <td></td> </tr> <tr> <td>안전지원</td> <td>SI안부전화, ICT활용 안전체크, 안전생활환경</td> <td>연 100만원</td> </tr> <tr> <td>주거편의</td> <td>간단수리, 대청소, 방역방충</td> <td>1회 10만원 ~60만원</td> </tr> <tr> <td>일시보호</td> <td>시설 단기입소</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내용	지원한도	가사지원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신체활동(식사, 세면, 일상생활(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연 150만원 *1회 추가 지원 가능	식사지원	맞춤형 영양설계, 영양음식 조리배달(일반식, 죽식, 간편식 등)	동행지원	병원동행, 관공서 외출동행		간강지원	방문진료, 방문맞춤운동		안전지원	SI안부전화, ICT활용 안전체크, 안전생활환경	연 100만원	주거편의	간단수리, 대청소, 방역방충	1회 10만원 ~60만원	일시보호	시설 단기입소																		
구분	서비스내용	지원한도																																								
가사지원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신체활동(식사, 세면, 일상생활(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연 150만원 *1회 추가 지원 가능																																								
식사지원	맞춤형 영양설계, 영양음식 조리배달(일반식, 죽식, 간편식 등)																																									
동행지원	병원동행, 관공서 외출동행																																									
간강지원	방문진료, 방문맞춤운동																																									
안전지원	SI안부전화, ICT활용 안전체크, 안전생활환경	연 100만원																																								
주거편의	간단수리, 대청소, 방역방충	1회 10만원 ~60만원																																								
일시보호	시설 단기입소																																									
제주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명</th> <th>서비스내용</th> <th>지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틈새돌봄</td> <td>가사지원</td> <td>가사(취사, 청소), 일상지원(세면, 식사, 정보기, 정서지원 등), 자취일시돌봄, 방문목욕 등</td> <td rowspan="3">연 150만원 이내 * 1회 연장가능</td> </tr> <tr> <td>식사배달</td> <td>도시락, 반찬 및 죽배달</td> </tr> <tr> <td>일시보호</td> <td>시설 단기보호</td> </tr> <tr> <td rowspan="2">주거편의</td> <td>방역방충</td> <td></td> <td rowspan="2">연 150만원</td> </tr> <tr> <td>주거편의</td> <td>주거편의(문턱제거, 단차조정, 난간설치 등)</td> </tr> <tr> <td>긴급돌봄</td> <td>긴급돌봄</td> <td>가사지원(방문목욕 제외)과 동일</td> <td>연 60만원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지원한도	틈새돌봄	가사지원	가사(취사, 청소), 일상지원(세면, 식사, 정보기, 정서지원 등), 자취일시돌봄, 방문목욕 등	연 150만원 이내 * 1회 연장가능	식사배달	도시락, 반찬 및 죽배달	일시보호	시설 단기보호	주거편의	방역방충		연 150만원	주거편의	주거편의(문턱제거, 단차조정, 난간설치 등)	긴급돌봄	긴급돌봄	가사지원(방문목욕 제외)과 동일	연 60만원 이내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지원한도																																							
틈새돌봄	가사지원	가사(취사, 청소), 일상지원(세면, 식사, 정보기, 정서지원 등), 자취일시돌봄, 방문목욕 등	연 150만원 이내 * 1회 연장가능																																							
	식사배달	도시락, 반찬 및 죽배달																																								
	일시보호	시설 단기보호																																								
주거편의	방역방충		연 150만원																																							
	주거편의	주거편의(문턱제거, 단차조정, 난간설치 등)																																								
긴급돌봄	긴급돌봄	가사지원(방문목욕 제외)과 동일	연 60만원 이내																																							

- 돌봄서비스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인 돌봄 대상에게 지원되는 중앙정부의 기존돌봄서비스 외에 지자체 자체 돌봄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현재까지 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했었던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별로 돌봄이 필요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상돌봄, 긴급돌봄, 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표 2-11] 지자체별 돌봄서비스(국가+지역) 대상별 현황

구분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영유아 아동 청소년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	초등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서울형 늘봄학교	경기형 늘봄학교	늘봄학교	부산형 늘봄학교	늘봄학교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거점온돌방(대전형아이돌봄)	24시간 긴급돌봄	광주광역시 마을돌봄
	공동육아방	경기육아나눔터	손오공 돌봄공동체	우리동네지원터	잘병강남아동아이돌봄서비스
	가정형 키움센터	연제나눔돌봄(긴급돌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광주광역시 긴급 아이돌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긴급 일시 돌봄서비스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사업(부천시,안산시)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사업(대덕구,유성구)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사업(서구,북구)
	긴급 틈새돌봄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지투)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어디나돌봄 (최중증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기타 대상별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중장년1인가구)	일상돌봄서비스(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중장년, 가족돌봄청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인사부·맞벌이·다자녀)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다문화 육아나눔터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전체 시민	돌봄SOS사업	누구나돌봄	대전형지역사회통합돌봄	부산형 통합돌봄	광주다움통합돌봄서비스
	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만65세미만)	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만65세미만)	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만65세미만)	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만65세미만)	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만65세미만)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함께돌봄서비스 틈새돌봄서비스	

■ 지역돌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사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65개 지역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 마련
- 2022년 8월 기준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30개 지역으로(광역 3개, 기초 27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수행 중

[표 2-12] 지역사회 통합돌봄관련 조례제정 현황

지역명	조례명	제정시기	지역명	조례명	제정시기
전북 전주시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8.14 2021.03.18. 전부개정	충남 청양군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2020.12.15
경남 김해시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2019.10.04	충남 천안시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21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8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2020.12.24
강원 동해시	동해시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1
충북 진천군	진천군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2020.05.20	경기 시흥시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2021.02.08
강원 원주시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2020.05.29	강원 춘천시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2021.02.25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6.03	경기 양평군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5.12
경기 화성시	화성시 지역사회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2020.06.03	경기 평택시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2021.06.24
부산 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2020.07.10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5
경기 부천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조례	2020.07.13	경남 고성군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2021.11.10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에관한 조례	2020.07.13	경기 안성시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2021.11.19
경기 안산시	안산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1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2021.12.29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2020.09.21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2021.12.30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관한 조례	2020.10.21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2022.02.17
전남 순천시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18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2022.07.14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ow.go.kr)

[표 2-1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조례 분석

구분	정의	책무	계획수립 및 평가	지원 사업	위탁 및 지원	통합돌봄안 내장구	지역케어 회의	협약체 및 자문단	홍보 교육 등	및 연구 기타
경기 화성시	정의 통합돌봄의 대상	시장의 책무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	통합 돌봄의 수행	통합 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통합 돌봄의 수행		통합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임기, 해촉 등 실무협의회 간사, 수당 등		
경기 부천시	정의	시장의 책무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통합돌봄 지원사업	사무의위탁 통합돌봄기관등 지원		통합돌봄 사례관리	통합돌봄 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임기, 해제 등 회의 및 수당 등	홍보 교육 등	
경기 안산시	정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제공기관 지원		통합돌봄 사례관리	통합돌봄협의체 설치, 협의체위원임기 등	구성 홍보 교육	
경기 고양주시	정의 통합돌봄의 대상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의 수립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협의체 설치 운영 등	교육 홍보 등	다른조례와의 관계
부산 북구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추진실적평가	지원사업	위탁		통합돌봄 사례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외부자문단 수당, 위원임기	교육 홍보	주민의 참여 구의회보고
부산 진구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계획 수립 등 추진실적평가	지원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관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관지원		지역케어 회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위원임기 협의체의운영		
대구 남구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관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관지원	구청장의 책무	지역 케어 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지역사회통합돌봄민·관협의체	통합 돌봄 수요조사	기본원칙 국가및다자방자치 단체와의협력 다른조례와의관계
광주 서구	정의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	통합 돌봄에 관한 사례관리	통합 돌봄 협의체의 설치 등	통합 돌봄 관련 수요조사 통합돌봄교육홍보	
충북 진천군	정의	군수의 책무	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 사업		통합돌봄 사례조정 회의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임기, 해촉 등 협의체의운영	교육 홍보	다른조례와의관계
충남 영양군	정의	군수의 책무	계획의 수립	예산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관 사무의위탁		지역케어 회의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지역사회통합돌봄자문단 수당지급등	교육 홍보	군민의 역할
충남 천안시	정의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의 수립 등	지원사업	사무의위탁 기관등에대한지원	시장의 책무	지역케어 회의	민·관협의체의 설치	홍보 교육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전북 전주시	정의 통합돌봄의 대상	시장의 책무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관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관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시민의 역할 기본원칙 다른조례와의관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단
전남 순천시	정의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시장의 책무	사례조정 회의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임기, 해촉 등 협의체의운영		
경남 김해시	정의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추진실적평가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지원사업		자문단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임기 회의 등, 수당 등	홍보 교육 등	
제주 특별 자치도	정의 대상자	도지사의 책무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도지사의 책무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구성, 기능 회의 등	실태조사	지역사회통합돌봄 기관 구축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세터설치운영 다른조례와의관계

-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선도사업 지역과 자체사업 지역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도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은 사업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제1조)과 정의(제2조), 시군구청장의 책무(제3조 또는 제4조),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수립, 통합돌봄 제공기관 지정, 위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
- 또한 지자체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통합돌봄 수립, 평가, 사업 등 결정을 위한 심의·자문 기관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례조정회의체 구성 및 기능, 사례관리 관련 회의 운영 방안 등 포함

[표 2-14]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사업 지역 조례 분석

구분	정의	시군구청장의 책무	계획수립 및 평가	자원사업	위탁 및 지원	통합돌봄 안내장구	지역케어회의	협의체 및 자문단	홍보 및 교육, 연구	기타
서울 동작구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통합돌봄 지원사업			통합돌봄에 관한 사례관리	통합돌봄 실무협의체의 설치 등 실무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해촉	통합돌봄 관련 수요조사 통합돌봄 교육홍보 등	구민의 역할
서울 동대문구	정의 통합돌봄의 대상	구청장의 책무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통합돌봄 지원 업무	통합 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인력 및 예산지원			통합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 회의록 실무협의회 간사, 수당		
서울 영등포구	정의	구청장의 책무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통합돌봄 지원업무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인력 및 예산지원		통합돌봄 사례회의 수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경기 안성시	정의	시장의 책무	통합돌봄계획의 수립	자원사업	사무의 위탁		통합돌봄 사례회의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등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의 운영, 수당	교육 및 홍보	다른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주민참여 기반시설 확보
경기 평택시	정의 통합돌봄 대상	시장의 책무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협의체 설치 등,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회의 등, 간사, 준용	교육 및 홍보 등	다른조례와의 관계
경기 시흥시	정의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등	자원 사업	사무의 위탁 등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등	설치 기능 등		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등, 회의 운영 등	교육 및 홍보 등	다른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역할
경기 양평군	정의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통합 돌봄 사례관리	통합 돌봄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자문단	통합 돌봄 관련 조사 교육 및 홍보 등	포상
부산 서구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통합 돌봄 기관		지역케어 회의	통합 돌봄 민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자문단	통합 돌봄 관련 조사 교육 및 홍보 등	포상

[표 계속]

구분	정의	시군구청장 의 책무	계획수립 및 평가	지원사업	위탁 및 지원	통합돌봄 안내창구	지역케어회 의	협업체 및 자문단	홍보 및 교육, 연구	기타
대전 광역시	정의 대상자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협업체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등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센터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대전 대덕구	정의	구청장의 책무	동네 돌봄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지원			커뮤니티케 어센터와 지역케어회 의 설치 운영 수당 등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의회의 설치, 기능 등,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제척 등, 해축, 공동의정의장 회의, 간사, 실행단 구성 등		기본원칙 다른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협약의 체결 포상
강원 춘천시	정의	시장의 책무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통합돌봄 사업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통합돌봄 사례회의 수당			지역사회보장 협업체 연계
강원 동해시	정의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등 계획실시 등 추진실적의 평가	지원 사업 예산 지원	업무의 위탁	시장의 책무		자문단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수당	홍보 및 교육 등	시민의 역할
강원 원주시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통합돌봄기 관 설치 및 지정	시장의 책무		지역사회통합돌봄협업체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	정의 통합돌봄 대상자	도시사의 책무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통합돌봄 지원사업 재정지원				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 협업체의 구성 및 운영	홍보 및 교육 실태조사	다른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자원센터 의 설치 및 운영 등 전문인력의 양성 협력체계 구축
경남 고성군	정의 통합돌봄 대상	군수의 책무	통합돌봄 시행계획의 수립 통합돌봄 사업추진			통합돌봄 안내창구 설치		통합돌봄추진단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축 회의 등, 회의록의 비치, 간사		민간의 참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사업 지역의 조례 내용도 선도사업과 유사하게 제정되어 있으나 통합돌봄제공기관 위탁관련 사항, 지역케어회와 같은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은 선도사업에 비해 적은 수준
- 서울 영등포구와 춘천시 등은 따로 협업체를 마련하는 대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조례에 제시

■ 경기도 360도 돌봄 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 경기도 360도 돌봄은 크게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나 돌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제나 돌봄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어디나 돌봄으로 구성
- 누구나돌봄은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언제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
- 경기도 360도 돌봄의 서비스로는 크게 생활돌봄, 통합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조, 재활돌봄 그리고 심리상담 등 7대 돌봄서비스 제공
-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4개의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누구나는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그리고 특별한 돌봄으로서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 여기에 든든한 돌봄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제공기관 구축 마지막으 상생의 돌봄으로서 위기상담콜센터(핫라인) 접수 등 도시군간 협력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핵심가치로 제시
- 경기도의 누구나돌봄은 기본형 5개 분야와 확대형 7개 분야로 구성되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형은 생활형,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개로 구성되고 확대형은 기본형 5개에 더하여 재활돌봄과 심리상담 등 2개 분야를 추가한 돌봄서비스로 구성
- 경기도 누구나 돌봄 지원대상은 15개 시군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별로 지원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기본형은 용인시를 포함하여 총 9개 지역에서 제공하고 확대형은 시흥시를 포함하여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표 2-15] 경기도 누구나 돌봄 핵심가치

구분	주요내용
누구나 돌봄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 적극 발굴 및 지원
특별한 돌봄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돌봄서비스 제공
상생의 돌봄	경기도 위기상담콜센터 접수 등 도-시군 간 협력 추진
든든한 돌봄	도 단위 전국 최초 시행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제공 기반 구축

자료 : 경기도(2024) 내부자료

- 경기도 365돌봄의 대상자 판단기준은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③ 공적돌봄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임
-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나 돌봄서비스는 전술한 7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서비스의 지원비용은 1인 연간 150만원 이내로 설정
-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중위소득 120% 이하는 모든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중위소득 120%~150%이하는 이용금액의 50%만 지원하며, 중위소득 150% 초과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부과 체계를 설정

[표 2-16] 경기도 365돌봄 주요 내용

구분	정의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①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 연간 최대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지원비용 : 1시간 16,630원 * 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추가적용 · 제공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②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 ·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 연간 최대 15일 이내(4시간 이내/일) · 지원비용 : 1시간 16,500원(경기도생활임금 적용) · 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적 기업
③ 주거안전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부분 수리 · 방충망, 못박기 등	·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회당) · 지원비용 : 1시간 16,500원(경기도생활임금 적용) · 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적 기업
④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일반식, 죽식 제공	· 연간 최대 15일 이내(1일 1~3식) · 지원비용 : 1식당 9,000원 (입원환자식대+운영비, +배달비 기준) · 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적 기업
⑤ 일시보호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지원비용 : 1일 70,500원(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기준) · 제공기관 :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노인 등)
⑥ 재활돌봄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 지원비용 : 시간당 50,000원(지역사회투자사업 맞춤형재활서비스 기준) · 제공기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⑦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 지원비용 : 1시간 60,000원 (성인심리지원서비스 기준) · 제공기관 : 심리상담센터(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자료 : 경기도(2024) 내부자료

■ 광주다움 통합돌봄 주요내용

- 광주통합돌봄은 7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그리고 일시보호 등임
- 일상생활지원은 가사활동, 신체활동, 일상활동, 방문목욕 그리고 식사지원은 영양설계와 음식조리 및 배달 등의 서비스 제공
- 광주형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크게 광주돌봄과 긴급돌봄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광주돌봄은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와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이고, 긴급돌봄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재단 등 긴급위기상황으로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대상자 기준 제시

[표 2-17] 광주+돌봄 7대 서비스

구분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	서비스비용
일상생활 지원	·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신체활동 (식사·세면·구강관리 도움 등) · 일상활동 (근거리 외출동행, 정서지원 등)	24시간 (야간, 휴일은 비용 할증) 방문목욕은 평일	1시간 20,000원 (비용할증) 야간30%, 심야 50%, 휴일 50%
	·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목조 이용 목욕)	9사-18시	1회 차량 84,000원 가정 내(차량이용) 76,000원 가정 내(차량미이용) 47,000원
식사지원	· 맞춤형 영양설계 (전문 영양사 진단) ·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평일 9사-18시	일반식 1식 9천원 반찬식 1식 8천원
동행지원	· 병원동행 (잡·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처방약 구입 등) 지원) ·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소통 등 업무 지원)	24시간 (야간, 휴일은 비용 할증)	1시간 17,000원 (비용할증) 야간30%, 심야 50%, 휴일 50%
건강지원	· 방문진료 (의사 가정방문 진료, 약물 처방, 약물 중재, 만성질환 관리, 건강 교육 등) · 방문맞춤운동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가정방문 통증 감소 지원, 운동계획 수립 및 지도)	평일 9사-18시	의과 1회 12만원 한의 1회 10.2만원 재료비 별도
안전지원	· AI 안부전화 (AI 보이스봇 통화, 안부·안전 확인) · ICT 활용 안전체크 (움직임센서, 응급호출기 등 ICT 기기 활용 안전 확인) · 안전생활환경 (낙상예방 미끄럼방지 장치, 문턱경사로, 가스타이머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AI·안전생활환경의 경우, 평일 9사-18시 ICT의 경우, 24시간	AI안부 무료 ICT 안전체크 무료 안전생활환경 : 연150만원 한도
주거편의	· 간단수리 (전등·수전류 교체, 배관막힘 처리, 열쇠수리, 가구 수선 등 간단한 집수리) ·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방역·방충 (방역 및 소독, 해충 방제 등)	평일 9사-18시	대청소 연 60만원 한도 방역방충 연3회 회당 10만원 한도
일시보호	· 시설 단기 입소(당장 생활할 곳이 없는 경우 단기시설 입소)	24시간	1일 5.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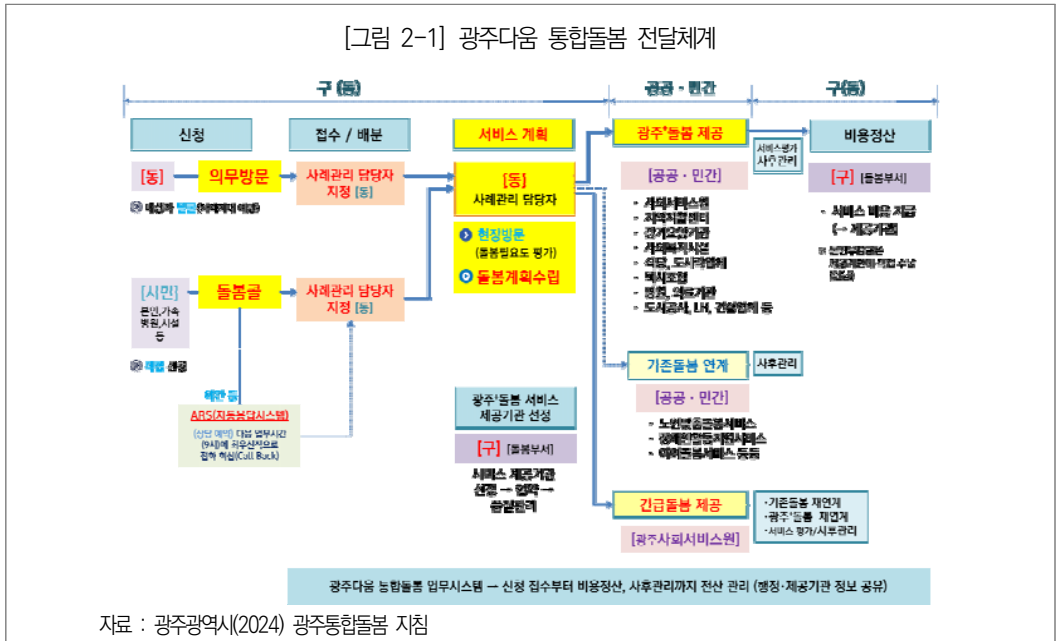
자료: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침(2024)

[표 2-18] 광주형 돌봄 주요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

구분	주요 역할
광주광역시	<p>통합돌봄 체계 및 기반 구축, 운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구축) ① 운영지침 제(개)정, 조례 제정 지원, ② 市 돌봄콜(돌봄 대표전화, 區 연결) 개설, ③ 전산시스템(광주다움통합돌봄 업무시스템) 개발 및 보급 · (운영 지원) ① 대시민 공동 홍보, ② 사례관리학교 운영(사례관리 담당자 상시 전문교육 등), ③ 사례관리지원단 운영(사례회의 전문슈퍼비전 지원 등), 우수사례 발굴
	<p>동 사례관리 지원, 광주+돌봄 서비스 지원망 구축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례관리 지원) ① 구 돌봄콜 개설 및 운영 등 단일 접수창구 마련, ② 의무방문 대상자 선정 및 방문현황 관리, ③ 동 사례관리 현황 관리 및 지원, ④ 권역별 사례회의 운영, ⑤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 훈련 및 슈퍼비전 · (광주+돌봄 지원망 구축) ① 광주+돌봄 서비스 총괄 계획 수립, ② 제공기관 선정/협약/교육/품질관리/평가, ③ 제공기관에 서비스 의뢰, ④ 서비스 비용 정산 및 지급
구청	<p>사례관리 실행 (돌봄계획 수립 및 서비스 결정, 연계/의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방문/신청접수)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의무방문 / 돌봄서비스 신청자 접수 · (돌봄계획 수립) 현장방문, 돌봄필요도 평가 ⇨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기존돌봄 연계(사후관리) 광주+돌봄 의뢰(→구) 긴급돌봄 의뢰(→사회서비스원) · (평가 및 사후관리) 제공기관 서비스 결과 평가 ⇨ 사후관리, 필요시 돌봄계획 재수립
	<p>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제공인력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돌봄) 긴급 위기상황, 민간돌봄 곤란 등으로 기존돌봄 또는 광주+돌봄을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제공인력 교육) 서비스 질 공동 관리를 위해 광주+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제공인력) 교육 일괄 운영 (광주+돌봄 서비스별 맞춤형 교육 실시)
동	<p>돌봄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질 확보) 돌봄 분야는 물론 보건 의료, 운송, 건축, 요식업 등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영역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돌봄 서비스 질 제고 · (교육 사전이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및 돌봄 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 등 제공기관, 제공인력 교육 사전이수
사서원	<p>돌봄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질 확보) 돌봄 분야는 물론 보건 의료, 운송, 건축, 요식업 등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영역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돌봄 서비스 질 제고 · (교육 사전이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및 돌봄 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 등 제공기관, 제공인력 교육 사전이수
민간공공 제공기관	<p>돌봄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질 확보) 돌봄 분야는 물론 보건 의료, 운송, 건축, 요식업 등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영역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돌봄 서비스 질 제고 · (교육 사전이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및 돌봄 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 등 제공기관, 제공인력 교육 사전이수

- 광주돌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아하는 연간 이용한도가 150만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위급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의 범위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이용자는 전액 지원을 하고 1인당 60만원까지 이용 가능
- 광주형 돌봄의 전달체계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5개 구청 그리고 제공기관의 상호 연계하여서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구조를 갖추고 있음
- 먼저 동주민센터는 지원대상자 상담 및 발굴을 위해 의무방문과 신청접수, 현장방문 그리고 상담결과에 기반한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에서는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의뢰하고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제공 및 결과보고와 비용청구 등의 업무 수행
- 서비스 제공 이후 구청에서는 결과확인과 함께 결과통보 그리고 다시 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업무 수행

[그림 2-1]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 광주형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기준 약 4.5천명으로 남자가 1.7천명, 여자 2.8천명으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대에서는 노인이 약 3.5천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7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년이 932명으로 20.7%를 차지하고 있음
- 장애여부로 보면, 장애인 1.5천명으로 32.6%, 비장애인이 3.1천명으로 67.4%였고 소득수준별로 보면 중위소득 85% 이하가 4.4천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99.0%로 절대다수를 차지
- 광주형 돌봄서비스의 세부유형별 제공현황을 보면, 식사지원이 2.6천명으로 전체 서비스의 약 4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사지원 833명(13.6%), 안전생활 537명(8.8%), 맞춤형운동 435명(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9] 광주형 돌봄서비스 세부유형별 제공 현황

(단위: 명, %)

합계	가사지원			동행 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		방문 진료	맞춤 운동	AI	ICT	안전 생활	간단 수리	대청소	방역 방충
6,107	833	189	2,588	252	338	435	108	119	537	245	169	294
100.0	13.6	3.1	42.4	4.1	5.5	7.1	1.8	1.9	8.8	4.0	2.8	4.8

주 : 이용자가 2개 이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포함

■ 서울 돌봄SOS 운영 사례

- 서울시 돌봄SOS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비스 신청 현재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임

[표 2-20] 돌봄SOS 위기상황 판단기준

이용자 차원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및 수술, 퇴원 후 회복기 · 급성기질환 발생에 따른 수발 필요 상황 · 주 돌봄자의 감염 등 객관적 위급상황 · 그밖에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이 요청되는 위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거부 및 미연계 상황 · 제공인력 부재 및 교체기간 · 제공인력 감염 등

- 돌봄SOS는 5대 돌봄으로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그리고 식사배달 등을 중심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전액 지원
- 돌봄SOS는 5대 돌봄서비스와 함께 5대 중장기 돌봄연계로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그리고 긴급지원 등을 비수가로 연계 제공

[표 2-21] 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가 요구되는 주요 상황	주요 지원	서비스 수가
일시재가	· 당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서비스 제공	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 우에 대해, 당사자 수발과 관련된 집중적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시설	1시간 24,120원 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			1일 70,500원 연간 최대 14일
동행지원	· 당사자의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60분 15,800원 연간 최대 12회 교통비 지원
주거편의	· 당사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대청소, 방역위생 서비스 제공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자 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컨소시 엄 방식의 사업단 구축 (우리동 네나눔반장) 추진 가능	(1인당 연간 12만원 내) 60분 15,800원 재료비 지원 (1인당 연간 15만원 내)
식사배달	· 당사자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 를 위한 서비스 제공			1식 9,400원 연간 최대 30식
안부확인	· 일상적 안부확인, 야간 안전확인, 정서 지원 등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 사례관리 연계를 통한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등 지역 자원 활용
건강지원	· 보건소 건강평가 및 케어플랜 을 통한 서비스 진행		보건소 건강돌봄팀	보건(지)소 연계 건강돌봄서비스

자료 : 서울돌봄SOS센터 운영 매뉴얼

-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절차는 크게 신청접수단계를 시작으로 동주민센터의 현장방문, 돌봄계획 수립, 그리고 제공기관의 돌봄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사례종결 등의 절차로 진행
- 신청접수를 개시로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대상자의 돌봄욕구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함께 응급상황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이후 돌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대상자의 돌봄욕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서비스 의뢰와 계약 등이 진행되고 계약에 근거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특히, 돌봄SOS는 신청 접수 이후 돌봄욕구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까지 최대 7일(응급 사례리시에는 72시간)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2일에서 3일 내에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돌봄서비스의 응급성에 따라 되도록 신속하게 제공
- 돌봄SOS 상담접수건수는 매년 평균 4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2019년 한해에는 약 3.0만건에서 2021년 5.3만건 그리고 2022년 4.5만건, 2023년은 7월까지 약 3.2만건 접수

[표 2-22] 서울 돌봄SOS 접수 및 이용현황

접수이용현황	동-SOS 의뢰 현황	업무절차 소요일	서비스 이용건	중장기돌봄 연계건	서비스 이용금액	(접수건수 대비 비율)
						자부담
접수건 31,596건 실인원 28,620명	동→SOS 3,781건 SOS→동 2,843건	접수→방문 1.4일 방문→계획 1.7일	5대서비스 39,268건	25,042건 실인원 9,705명	11,239,172천원 구별 약450백만원	2,020건 (6.4%)

자료 :서울복지재단(2023) 내부자료

- 2023년 기준 접수된 건수 중 약 3.9만건은 5대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약 2.5만건은 중장기 돌봄으로 연계함
- 돌봄서비스의 이용건수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이용건수 3.9만건 중에서 식사배달이 1.5만건으로 전체 제공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주거편의 8.7천건, 일시재가 8.3천건 그리고 동행지원 6.7천건 등임

[표 2-23] 돌봄SOS 5대 돌봄서비스 제공현황

구 분	실인원	5대 서비스 이용건						이용금액(천원) (자부담액 포함)*
		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합 계	108,765	173,440	40,631	76	20,625	29,954	82,154	55,095,307
19년~20년	17,101	22,617	6,549	20	1,123	2,280	12,645	8,558,862
2021년	33,156	52,998	12,900	15	5,473	8,552	26,058	17,956,227
2022년	34,169	58,557	12,863	25	7,261	10,427	27,981	17,341,046
2023년	24,339	39,268	8,319	16	6,768	8,695	15,470	11,239,172

자료 :서울복지재단(2023) 내부자료

4. 선행연구 검토

- 최근 돌봄 대상은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등 전체 주민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돌봄관련 연구 대상도 초등돌봄,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성인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통합돌봄 체계나 서비스모형, 사업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나 접근성 강화, 전달체계를 동 중심 전달체계로 강화하고, 간호직에 대한 역할 강화, 서비스 내용을 개선해야 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참여가 미비한 건강의료 영역의 확대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임지연 외, 2022) 읍면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추기관으로 지역돌봄 총괄추진단을 설립하고 통합창구 일원화 등 제안
- 정인경 외(2023)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비용에서 본인부담률 설정의 필요성과 투입인력의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모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송인주 외(2022)는 기존 대상자에서 돌봄이 필요한 성인 전체로 대상자를 확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기(지속)서비스 유지와 의료서비스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함

[표 2-24]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대상	주요 내용
임지연 외 (202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공공보건의료 연계 모델 개발	돌봄이 필요한 주민 (노인, 장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욕구 사정 및 사례관리 핵심 중추기관의 부재로 기관별 분절적 서비스 제공, 욕구와 공급의 불일치 · (개선 방안) 중추기관으로 읍면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주민 욕구 조사 및 평가도구 마련, 지역돌봄 총괄추진단 설립 등 현장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자원 확보, 행정복지센터를 통합돌봄 창구로 일원화하여 공공 사례관리 실시, 건강의료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주거자원은 주거복지센터, 요양돌봄을 요양돌봄센터로 연계, 보건소 역할 확대
송인주 외 (2022)	지속가능한 돌봄SOS센터 사업발전방안 연구	돌봄이 필요한 성인 (5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방안)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성인 전체로 확대, 통합돌봄창구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 전달체계: 동 중심 전달체계 강화, 돌봄매니저 역할(간호직 등) 확대 및 케어플랜 보완, 자치구의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 및 서비스량 확보 지원 - 서비스내용: 사각지대(일시서비스 초과 및 재이용군) 해소를 위한 중기(지속)서비스 유지, 돌봄주거(중간집) 또는 주거관리 서비스 신설, 의료서비스 협력체계 강화
정인경 외 (2023)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모형 개선방안 연구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방안)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접근성 강화: 동 사례회의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업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돌봄콜 및 의무방문 세분화 - 서비스 구성 및 비용: 가사, 식사 등 제공범위 및 단가 인상, 본인부담률 설정 필요 -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강화: 모든 지역에 복지직과 간호직 각 1명 이상 구성, 동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등 - 서비스 과정 및 네트워크: 전산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개선 및 고도화, 동 행정복지센터, 제공기관, 자치구의 정보공유과정 재정립 필요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마련: 주제별 품질관리 방법 및 역할 마련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이후 연구에서 전용호(2018)는 노인 돌봄의 의료·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부족과 등급외자, 건강한 노인 등 예방적 측면에서의 돌봄서비스 부족과 서비스 내, 서비스 간 연계 부족을 지적하면서 지역단위 노인 돌봄의 필요성 제안
-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입 등 이후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역 주도로 노인돌봄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황명구(2021)는 중복형 노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제공을 총괄하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충북사회서비스원 중심 노인 돌봄 관제탑 구축, 대상자 욕구 파악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
- 박선희, 강채련(2024)은 경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선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상적 돌봄체계와 함께 위기 및 사각지대 노인 대상 긴급지원서비스 보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연계, 서비스 가이드 마련 등 제안

[표 2-25] 노인 돌봄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대상	주요 내용
전용호 (2018)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문제)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적합한 의료 서비스 부족 및 분절적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대상 보건소 중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으로 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한계 발생, 보건소의 취약한 건강증진 인프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심 방문건강관리사업 · (취약한 노인을 위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취약한 노인을 위한 왕진제도 부재, 고위험 취약노인에게만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 ·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취약성) 의료, 보건의 간호 영역 내 연계 취약으로 대상자 및 서비스 중복 문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취약 · (사사점) 중앙부처 내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 간 교류 활성화, 지방정부 주도 지역단위 연계 확대, 돌봄팀 구성 및 지역단위 케어메니지먼트 제공
황명구 (2021)	중복형 노인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맞춤형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충북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노인인구 및 시설 분석) 충북 복지 대상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가장 많고, 이들은 경제적 문제, 외로움과 고독 문제, 건강 문제 순으로 어려움 경험, 9988 행복자립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노인 돌봄서비스 등이 연계성 없이 분절적으로 제공 · (중복형 노인 돌봄 체계 구축 기본 방향) 대상자, 서비스 중복 및 자원제공 문제 등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 구축, 대상자 욕구 파악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지역 인프라의 한계성 극복을 위한 지역자원 개발과 이를 위한 처우 보장 필요 · (중복형 노인돌봄 체계 기본 체계) 충북사회서비스원 중심 노인 돌봄 관제탑을 구축하여 광역 돌봄 추진협의체 추진
박선희 강채련 (2024)	경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및 개선과제	경남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선 쟁점) 서비스 대상의 사각지대 존재, 위기상황 노인에 대한 보완적 서비스 필요, 서비스 제공기관 편차 완화, 진존가능 확대하는 서비스 목적에 대한 이용자 이해 필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미흡, 사업수행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시군별 민관협력 강화 · (경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선과제) 사각지대 없는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일상적 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위기 및 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긴급지원 서비스 보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연계 및 중장기적 통합방안 필요, 서비스 인식개선 및 서비스 가이드 마련, 수행기관 서비스 질관리 체계 마련, 기관운영 실무 매뉴얼 개발보급 및 우수기관 지원 제도 마련, 돌봄거버넌스 구축

- 장애인 돌봄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장애아동,

최중증 장애인 등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대상을 중심으로 기존 돌봄체계 개선 방안 및 새로운 돌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황주희 외(2020)는 고령 장애인 돌봄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과 보전에 초점을 둔 전국형 시범사업 모형을 제안하였고, 이민경 외(2021)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장애 정도를 고려한 돌봄 시간 보장,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시설 확대 및 통합된 체계 구축 등 제안
- 김미옥(2024)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모형과 서비스 내용, 관리체계를 개발하고 향후 과제로 위기관리 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재편 등 제안

[표 2-26] 장애인 돌봄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대상	주요 내용
황주희 외 (2020)	65세 이상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고령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장애인의 돌봄 정책관련 쟁점) 신체기능(ADLs) 제한과 이동·사회참여 제한에 대응하는 서비스 필요, 고령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패러다임 반영, 대상자 선정 방식과 급여수준, 서비스 내용에서의 차이,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관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급외자 관리 등 · (보전급여량 산정) 제도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 감소량에 대한 보전에 초점을 두고 65세 도래자와 미전환자 등에 대해 전국형 시범사업 모형(안) 제안 · (정책 제언)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정립 필요, 서비스 중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외자에 대한 제도 개편, 최중증장애인 및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대책 검토
이민경 외 (2021)	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	장애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유형화 및 함의) 능동적 대처형, 자녀장래걱정형, 국가지원 촉구형으로 분류, 장애자녀의 주 돌봄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화에 대한 적극적인 가족지원 필요, 사회적 돌봄서비스 신뢰도 향상, 장애자녀의 자립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장애인 가족 지원 개선 방향) 가족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돌봄시간 보장, 장애인(아동) 이용 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 교육, 복지 영역에서 통합 체계 구축,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욕구사정권을 인정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서비스 이용을 권리로 지원,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생애 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사회적 지원 구성 등
임성은 외 (2021)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장애돌봄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장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물적 환경 기준) 지역사회 장애아동 방과후돌봄을 위한 거점기관 선정 후 직영 또는 법인·단체 위탁 방식으로 운영 검토 - 인적 기준 : 장애아동 돌봄 전담인력 대 장애아동 비율은 1:3 또는 1:4 적용 - 물적 환경 개선 : 장애아동 이용에 적합하게 장애아 어린이집 시설 설치기준 등 적용 · (장애아동 전담센터) 장애아동만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전문인력 확보된 공공기관 중심 장애아동전담센터 시범 설치·운영 필요 · (장애아동 통합센터) 일반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서 장애아동 방과후돌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선 및 사업지침 내 내용 명시 등 통합돌봄 제공 근거 마련 및 체계화 필요
김미옥 (202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실행과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모형) 24시간 개별 1:1 지원(낮활동+주거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낮활동 중심, 개별형), 주간 그룹형 1:1 지원(낮활동 중심, 그룹형) 등 1:1 맞춤형 지원체계 ·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훈련(신체활동, 가사활동, 금전관리, 의사소통, 건강인전), 취미활동(통합활동, 요리활동, 생태활동, 예술활동, 야외활동), 자립생활(생활동지원, 지역사회활동, 관계지원, 권익옹호활동, 의료지원), 행동지원, 가족지원 · (관리체계) 지역단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현(만·관, 발달센터·서비스기관, 지역사회기관·서비스기관-가족 등 다양한 파트너십 체계) · (항후과제) Pro-Act 등 위기관리체계 마련, 보험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재편, 인력 양성체계 마련, 품질관리 체계 마련 등

- 아동돌봄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초등돌봄의

공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마을돌봄의 역할이나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연구 진행

- 김승이 외(2021)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체제로 운영된 우리동네키움센터(4개)의 부족으로 확대 필요,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 돌봄자원 간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 도출
- 최현임(2022)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마을돌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함께돌봄과 같이 국가주도 돌봄체계에서도 상시돌봄이나 일시돌봄의 필요성, 작은 도서관, 아파트,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돌봄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연구(최아라, 2023; 김은경 외, 2023)를 통해 온종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수요 맞춤형 공급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특히 법적 기반 마련과 중앙과 지자체, 그리고 제공기관 간의 협의 체계 마련 등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개선과제로 도출

[표 2-27] 아동돌봄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대상	주요 내용
김승이 외 (2021)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의 역할과 과제	아동 (초등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마을돌봄기관으로 긴급돌봄체제로 운영 · 종일 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하는 양육자들의 돌봄부담 완화 등 긍정적 영향 · 돌봄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및 업무 부담 과중, 온라인 수업지원 및 기초학습 지도 등으로 놀이와 심층심의 고유 정체성 혼란 등 · (개선 방안) 지역사회 내 돌봄 담당 기관 및 공간 확대 필요, 질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학교돌봄, 마을돌봄 등 돌봄자원 간 연계 및 협력 필요
최현임 (2022)	보편적 초등아동 마을돌봄 모델개발 실행연구	아동 (초등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돌봄 모델 개발) · 다함께돌봄(키움센터): 국가수준에서 상시돌봄 및 일시돌봄, 아침·저녁돌봄을 실시하며 숙제 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 · 마을돌봄: 마을 내 아동을 방과 후 19시까지 수시돌봄, 놀이돌봄 등을 실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 틈새돌봄: 개방된 아동을 중심으로 민간, 아파트, 교회 등 작은도서관에서 아동의 욕구와 운영자 역량에 따른 자율적 서비스 제공
최아라 (2023)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고찰	아동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및 문제점) 온종일돌봄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인지 부족, 초등저학년의 이용의향이 높고 이용의향이 없는 학부모는 가정돌봄 선호, 고학년은 사교육기관 선호,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희망 · (개선 방안) 온종일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 공급, 서비스 유형 및 시간 확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늘봄학교, 아이돌봄사업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 수요자(아동)의 만족도 및 요구 조사 필요
김은경 외 (202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정책의 개선과제 탐색	아동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 개선과제) 돌봄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수요 맞춤형 공급 지원, 서비스 홍보 및 안내 확대, 인적 자원의 전문성 및 처우 문제 개선, 돌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질 향상, 담당부처와 지자체 역할 등 추진 시스템 개선 · (체계 구축의 개선과제) 법적 기반 마련 및 실효성 있는 협의 체계(중앙-지자체-제공기관) 마련, 지역 맞춤형 접근을 위한 지자체 자원발굴과 연계 및 지원, 수요자(아동) 요구 반영을 위한 조사 시스템 고도화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돌봄수요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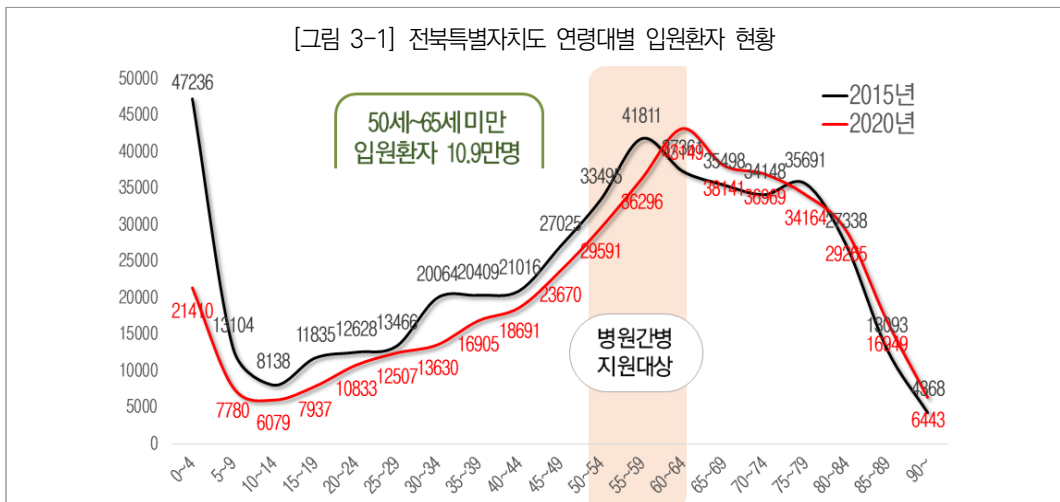
1. 일반 지역주민 돌봄수요 진단
2. 노인 돌봄수요 진단
3. 장애인 돌봄수요 진단
4. 아동 돌봄수요 진단
5. 청년 돌봄수요 진단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돌봄수요 진단

1. 일반 지역주민 돌봄수요 진단

- 돌봄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의 돌봄수요는 주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입소가 필요한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병원입원이나 퇴원 등에 따른 간병 혹은 일시적인 한시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제공자가 부재하거나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50.5만명 정도가 입원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55.6만명 정도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남
- 입원환자의 경우 국가의 돌봄제도에서 간병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가족간병이나 일반 사설간병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은 간병에 있어서도 상당한 사각지대에 노출
- 전북형 돌봄체계 구축에서 중요한 돌봄사각지대는 현행 돌봄서비스에서 제공되지 못한 입원환자의 사적 간병 이용자라고 할 수 있고, 사적 간병이용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최대 61.2%정도 수준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사적 간병률이 전체는 61.2%에 달하고 이중 유급간병은 2.9%, 가족간병은 53.9%, 기타간병 4.4% 등(이진산·김진연, 2021 재구성)으로 분석



[표 3-1] 전북특별자치도 입원환자 현황 및 사적간병자 추정

(단위: 명)

구분		전체	0~19세	20~39세	40~64세	50~64세	65세 이상	65~79세	80세 이상
입원자	남자	191,136	23,465	23,620	72,552	52,250	71,499	52,112	19,387
	여자	219,273	19,741	30,255	78,845	56,786	90,432	57,162	33,270
	전체	410,409	43,206	53,875	151,397	109,036	161,931	109,274	52,657
사적 간병률	전체 (61.2)	254,043	26,745	33,349	93,715	67,493	100,235	67,641	32,595
	유급간병률 (2.9)	11,902	1,253	1,562	4,391	3,162	4,696	3,169	1,527
	가족간병률 (53.9)	223,673	23,547	29,362	82,511	59,425	88,252	59,554	28,698
	기타간병률 (4.4)	18,879	1,987	2,478	6,964	5,016	7,449	5,027	2,422
돌봄수요			· 병원동행 · 입원간병		· 입원시 간병돌봄 · 퇴원 전후 일정기간 한시적 돌봄				
관련 돌봄정책			· 야돌봄	· 가시간병방문자원사업			· 장기요양보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전 연령대별 입원환자에 대한 돌봄수요는 아동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병원동행과 입원 시 간병이 요구되고 20세 이상에서 64세 미만의 청장년은 입원 시 간병돌봄과 퇴원 시 일정기간 한시적 돌봄 그리고 퇴원 후 의료 및 건강상담 등의 돌봄욕구 발생
- 현행 돌봄서비스에서는 65세 이상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국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일정 부분 해당 연령대 노인의 돌봄은 제공되고 있지만 65세 미만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후 회복기까지의 한시적 돌봄이나 병원 동행, 입원 시 간병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은 여전히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
- 전북형 돌봄체계 구축에서 중요한 돌봄사각지대는 현행 돌봄서비스에서 제공되지 못한 입원환자의 사적 간병이용자라고 할 수 있고 사적 간병이용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최대 61.2%정도 수준임
- 사적 간병률을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적 간병자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전체 입원환자의 약 25.4만명 정도는 사적 간병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유급간병은 1.2만명, 가족간병 22.4만명 그리고 기타간병은 1.9만명 정도로 추정됨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 부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년층의 경우 돌봄대상자가 부재하거나 자녀의 출가나 직장 등의 사유로 인해 사실상 돌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50세에서 64세까지의 장년층 사적 간병자는 6.7만명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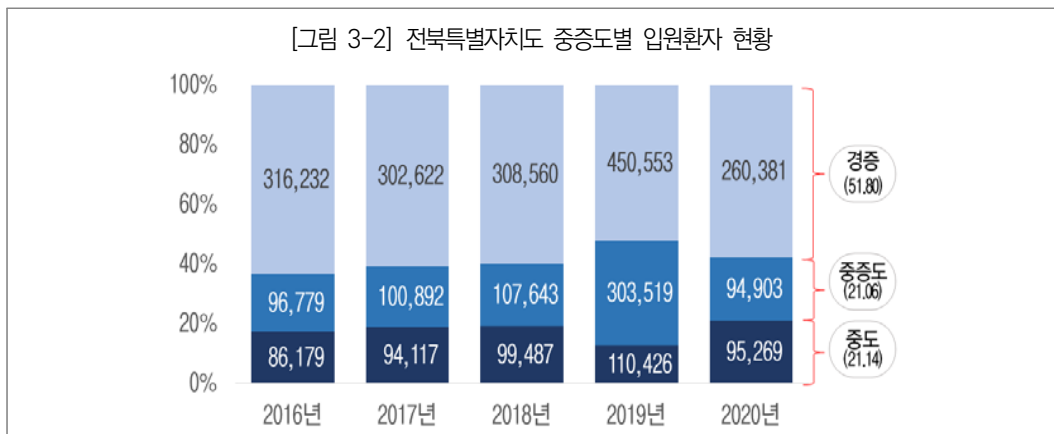
[표 3-2] 중증도별 입원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				2018				2020			
	전체	중증	중증도	경증	전체	중증	중증도	경증	전체	중증	중증도	경증
전국	10,913,937	1,703,466	2,002,058	7,208,413	10,972,400	1,954,848	2,060,613	6,956,939	9,775,796	1,628,776	1,702,403	6,444,617
서울	1,686,409	250,970	273,959	1,161,480	1,678,266	283,213	275,623	1,119,430	1,518,976	231,786	238,809	1,048,381
부산	818,076	132,524	163,758	521,794	813,611	152,162	162,782	498,667	740,569	133,897	133,164	473,508
대구	450,478	60,903	81,512	308,063	456,075	70,689	82,363	303,023	398,961	57,812	66,246	274,903
인천	629,067	90,704	111,186	427,177	619,119	100,087	116,268	402,764	556,242	81,335	91,912	382,995
광주	371,738	52,599	71,774	247,365	378,115	60,466	77,229	240,420	338,173	52,284	64,899	220,990
대전	272,613	44,997	48,102	179,514	270,383	51,338	52,416	166,629	240,499	37,991	42,407	160,101
울산	252,807	37,390	50,248	165,169	253,306	41,175	49,317	162,814	220,703	31,861	35,760	153,082
세종	38,987	6,085	6,947	25,955	48,937	8,731	9,369	30,837	51,482	7,791	8,568	35,123
경기	2,355,162	331,442	404,726	1,618,994	2,378,774	388,669	414,253	1,575,852	2,193,072	317,609	351,916	1,523,547
강원	348,138	68,586	64,653	214,899	349,254	79,303	65,840	204,111	308,526	63,475	55,884	189,167
충북	348,027	58,358	65,406	224,263	348,288	69,969	67,391	210,928	302,954	56,830	53,962	192,162
충남	501,963	89,879	90,323	321,761	501,935	104,051	95,857	302,027	427,920	85,301	78,721	263,898
전북	499,190	86,179	96,779	316,232	515,690	99,487	107,643	308,560	450,553	95,269	94,903	260,381
(비율)	(100.0)	(17.26)	(19.39)	(63.35)	(100.0)	(19.29)	(20.87)	(59.83)	(100.0)	(21.14)	(21.06)	(57.79)
전남	660,305	111,836	143,277	405,192	658,030	123,581	144,453	389,996	576,579	107,134	118,044	351,401
경북	631,871	105,158	121,836	404,877	634,659	119,217	121,256	394,186	533,653	98,094	95,085	340,474
경남	898,833	148,100	178,838	571,895	913,753	171,554	187,317	554,882	781,433	144,805	146,926	489,702
제주	137,357	25,467	26,771	85,119	144,865	29,347	29,739	85,779	130,908	24,831	24,606	81,471
정보없음	12,916	2,289	1,963	8,664	9,340	1,809	1,497	6,034	4,593	671	591	3,331

자료 : 국민보건의료실태(2022)

- 특히, 입원환자 중 중증은 2020년 9.5만명으로 2016년 8.6만명보다도 증가하여 중증 입원환자 대상 간병돌봄이나 퇴원 이후 재가돌봄에 대한 수요도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양병원은 2021년 말 기준 84개 병원으로 병상수는 1.9만 병상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천명당 병원은 21.0개소 그리고 병상수는 4,735개소로 전국 평균 병상수인 3,124개소보다도 많은 수준임



[표 3-3]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및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1인가구	
전국	합계	5,203,440	5,397,615	5,618,677	5,848,594	6,147,516	6,643,354	7,165,788	7,502,350	7,829,035
	20세 미만	58,020	62,639	61,058	58,154	59,415	76,202	54,052	53,088	48,486
	20-24	367,152	391,628	393,503	402,476	431,750	492,331	492,845	485,508	494,745
	25-29	519,871	537,780	568,288	617,468	685,831	774,580	870,707	901,044	910,457
	30-34	533,193	519,528	516,827	522,405	554,883	618,401	704,883	774,710	826,902
	35-39	420,129	429,109	451,634	470,332	480,733	497,117	521,151	524,136	527,467
	40-44	428,605	408,807	407,777	400,122	401,653	427,295	467,949	494,473	512,605
	45-49	421,153	434,237	455,033	464,099	470,000	476,521	482,287	483,104	476,139
	50-54	430,941	430,168	435,035	450,375	470,795	497,959	541,978	568,098	585,587
	55-59	446,608	481,691	512,691	524,069	528,252	541,536	558,936	569,407	598,564
	60-64	354,599	407,575	445,869	494,506	531,357	580,701	646,566	675,366	709,976
	65-69	313,584	335,978	359,563	375,398	401,256	458,284	529,542	577,241	644,547
	70-74	308,780	310,716	313,648	330,897	352,769	382,524	413,137	442,851	469,016
	75-79	288,138	304,340	329,899	340,000	343,332	350,191	358,008	366,133	391,978
	80-84	197,240	215,488	229,716	246,166	264,647	278,856	304,030	339,221	357,144
	85세 이상	115,427	127,931	138,136	152,127	170,843	190,856	219,717	247,970	275,422
	합계	213,750	222,201	227,600	232,587	238,746	255,269	276,153	284,613	296,799
20세 미만	3,054	3,689	3,482	3,083	3,325	3,798	3,618	2,582	2,322	
20-24	16,204	18,297	17,968	18,073	18,745	21,976	22,397	20,185	21,255	
25-29	15,213	15,462	15,981	16,867	18,264	20,906	23,897	24,560	25,028	
30-34	14,715	14,170	13,532	13,198	13,680	15,539	17,778	19,422	20,493	
35-39	12,882	12,699	13,099	13,304	13,055	13,402	14,193	14,203	14,029	
40-44	14,108	13,631	13,416	12,921	12,650	13,171	14,324	14,931	15,261	
45-49	14,943	15,370	16,034	16,132	16,169	16,426	16,898	17,249	16,723	
50-54	16,515	16,594	16,584	17,262	17,679	18,814	20,469	21,343	22,058	
55-59	18,065	19,362	20,723	21,031	20,863	21,310	22,188	23,030	24,466	
60-64	15,231	17,079	18,660	20,632	21,482	23,174	26,076	27,267	29,089	
65-69	15,642	16,586	16,979	17,066	17,764	19,255	21,792	23,628	26,518	
70-74	16,867	16,856	16,105	16,550	17,445	19,054	20,482	20,877	21,563	
75-79	17,986	18,308	19,886	19,796	19,138	18,834	19,312	18,701	19,436	
80-84	14,123	15,032	15,672	16,247	16,813	16,857	17,900	20,140	20,533	
85세 이상	8,202	9,066	9,479	10,425	11,674	12,753	14,829	16,495	18,025	

- 중장년 1인 가구도 일상돌봄의 중요한 수요집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중장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중장년 1인 가구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년 1인 가구는 2023년 현재 약 78,508가구로서 전체 1인 가구인 29.6만 가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중장년 1인 가구도 일상돌봄과 상담과 여가문화활동, 일자리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돌봄정책 개발 및 연계 필요

2. 노인돌봄수요 진단

- 노인돌봄서비스는 대부분 국가 주도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도 신청자 중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는 주로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노인 그리고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못받거나 등급판정을 받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노인 등으로 분류

[표 3-4] 장기요양제도 노인돌봄사각지대 추정

구분	계	65세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돌봄 사각지대 (A) 신청자-등급판정자	전국	188,111	10,679	21,300	29,522	41,994	45,749	38,867
	서울	28,675	1,678	3,213	4,648	6,237	6,824	6,075
	부산	15,533	741	2,073	2,667	3,568	3,716	2,768
	대구	8,449	530	973	1,386	1,889	2,042	1,629
	인천	8,564	658	1,079	1,360	1,865	1,927	1,675
	광주	5,476	274	626	915	1,270	1,310	1,081
	대전	5,034	308	599	858	1,086	1,153	1,030
	울산	3,294	222	435	572	747	775	543
	세종	780	41	98	107	167	187	180
	경기	37,419	2,482	4,331	5,865	8,362	8,857	7,522
	강원	7,108	456	755	1,101	1,580	1,731	1,485
	충북	6,368	358	765	935	1,426	1,589	1,285
	충남	10,015	496	1,044	1,545	2,232	2,464	2,234
	전북	9,717	471	1,008	1,477	2,211	2,471	2,079
	전남	11,525	449	1,101	1,671	2,574	3,049	2,681
	경북	13,628	730	1,404	1,942	3,043	3,480	3,029
	경남	14,140	650	1,567	2,173	3,276	3,587	2,887
	제주	2,396	135	229	300	461	587	684
	돌봄 사각지대 (A) 신청자-등급내자 * 1-5+인자지원등급	전국	329,831	20,738	41,792	53,930	74,832	78,443
서울		45,455	3,318	5,696	7,413	9,939	10,454	8,635
부산		26,664	1,562	3,833	4,718	6,233	6,202	4,116
대구		14,373	1,101	1,898	2,431	3,216	3,312	2,415
인천		15,061	1,271	2,166	2,584	3,312	3,259	2,469
광주		11,202	614	1,593	2,072	2,673	2,504	1,746
대전		9,002	686	1,270	1,601	1,963	1,944	1,538
울산		5,144	378	720	908	1,195	1,162	781
세종		1,242	65	159	186	277	295	260
경기		61,616	4,528	7,715	9,902	13,791	14,430	11,250
강원		12,049	799	1,445	1,910	2,754	2,915	2,226
충북		10,926	671	1,361	1,679	2,455	2,693	2,067
충남		18,066	930	2,048	2,729	4,092	4,562	3,705
전북		20,507	986	2,761	3,526	4,770	4,838	3,626
전남		23,951	945	2,545	3,656	5,570	6,215	4,920
경북		24,556	1,272	2,767	3,787	5,691	6,229	4,810
경남		26,203	1,372	3,376	4,298	6,112	6,491	4,554
제주		3,914	240	439	530	789	938	978

자료 : 건강보험공단(2023) 2022년 말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의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2022년 말 기준 7.8만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은 7.5만 명 정도로 전체 노인의 17.8%임
- 장기요양신청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등급내자는 5.6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13.23%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는 돌봄서비스의 제공대상인 등급판정자를 기준으로 신청자 중 등급판정자를 제외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돌봄사각지대는 약 9천명 정도임
- 또한 신청자 기준 등급내자로 돌봄사각지대를 추정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약 2.1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장기요양제도의 돌봄사각지대는 최소 약 9천명에서 최대 3.0만명 정도로 추정됨
- 한편, 장기요양서비스의 차매노인 돌봄사각지대를 추정해 보면, 차매등록인원 중 장기요양 이용자는 2022년 말 기준 2.2만명으로 전체 차매등록노인 중 약 2.3만명은 장기요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표 3-5] 장기요양보험의 차매돌봄 사각지대

(단위: 명)

구분	차매등록인구 [A]	노인인구	장기요양등급자 현황							차매장기요양이용자	차매노인장기요양사각지대
			전체	1급 [a]	2급 [b]	3급 [c]	4급 [d]	5급 [e]	인근지원등급 [f]		
서울	66,126	1,733,580	150,096	8,384	14,559	39,516	57,113	12,272	3,112	46,342	88,614
부산	29,539	745,199	74,815	2,928	5,461	17,680	31,560	5,687	1,189	18,939	45,566
대구	21,350	466,338	48,779	1,725	4,025	12,001	19,170	5,598	907	17,124	26,302
인천	20,333	497,057	57,448	2,284	5,074	15,353	24,167	3,971	715	15,460	36,104
광주	11,545	233,878	30,495	1,028	1,807	6,556	12,269	2,801	648	9,052	16,057
대전	12,121	244,756	28,508	1,116	2,110	6,800	11,244	3,129	519	10,126	14,792
울산	7,182	175,709	16,492	776	1,453	4,577	6,496	1,217	279	4,971	9,827
세종	1,844	42,560	4,856	246	460	1,181	1,882	558	91	1,699	2,719
경기	85,367	2,122,718	227,155	10,830	19,706	60,609	86,344	22,262	5,253	77,690	127,314
강원	20,759	366,555	42,145	2,414	4,731	12,365	14,581	2,715	741	15,173	22,374
충북	22,309	332,237	41,793	1,657	3,757	10,203	16,311	4,567	1,043	15,957	21,581
충남	37,183	454,534	63,805	2,306	4,848	14,327	25,852	7,180	1,675	22,777	33,411
전북	44,737	423,128	66,244	1,685	3,770	11,299	28,189	9,717	1,309	21,874	34,095
전남	44,928	470,874	73,833	1,932	4,844	13,688	31,522	8,302	1,715	24,592	37,411
경북	48,904	630,486	87,105	2,644	5,855	19,115	36,757	10,773	1,575	30,817	45,902
경남	52,150	669,646	89,209	2,820	6,382	18,552	39,056	9,569	1,489	28,558	49,310
제주	7,582	121,156	12,198	907	1,411	3,336	3,956	898	277	5,074	5,711
전체	533,959	9,730,411	1,114,976	45,682	90,253	267,158	446,469	111,216	22,537	366,225	617,090

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 차매등록 현황

[표 3-6]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및 이용비율

구분	장기요양보험 ㉠			노인맞춤돌봄 ㉢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			노인돌봄 [D]	노인돌봄 [E]	전체노인 [F]	비율	
	신청자	등급 판정자	인정자	일반 돌봄군	중점 돌봄군	전체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A+B)	(A+B+C)		D/F	E/F
전체	1,348,961	1,160,880	1,019,130	457,099	57,300	514,399	14,536	186,128	295,046	1,533,529	2,028,239	9,267,290	16.55	21.89
서울	185,420	156,745	139,965	37,376	4,177	41,553	2,590	14,237	39,483	181,518	237,828	1,658,207	10.95	14.34
부산	93,454	77,921	66,790	30,641	4,199	34,840	480	5,122	16,431	101,630	123,663	712,412	14.27	17.36
대구	59,435	50,986	45,062	23,741	5,205	28,946	251	7,562	20,877	74,008	102,698	435,698	16.99	23.57
인천	69,293	60,729	54,232	12,970	2,136	15,106	476	14,854	11,246	69,338	95,914	463,850	14.95	20.68
광주	37,229	31,753	26,027	13,050	1,822	14,872	80	2,895	12,523	40,899	56,397	222,970	18.34	25.29
대전	34,960	29,926	25,958	15,516	1,396	16,912	240	5,472	7,884	42,870	56,466	232,663	18.43	24.27
울산	20,660	17,366	15,516	8,727	404	9,131	50	1,969	5,575	24,647	32,241	163,812	15.05	19.68
세종	5,779	4,999	4,537	1,453	73	1,526	99	567	1,235	6,063	7,964	40,219	15.07	19.80
경기	275,660	238,241	214,044	56,468	6,135	62,603	5,987	62,887	56,263	276,647	401,784	1,992,807	13.88	20.16
강원	51,179	44,071	39,130	23,431	2,412	25,843	289	9,458	16,975	64,973	91,695	349,874	18.57	26.21
충북	49,958	43,600	39,032	19,298	2,290	21,588	356	9,018	9,204	60,620	79,198	316,939	19.13	24.99
충남	75,834	65,819	57,768	29,350	3,169	32,519	275	10,062	12,389	90,287	113,013	436,895	20.67	25.87
전북	78,151	68,434	57,644	33,158	5,331	38,489	1,484	7,158	16,048	96,133	120,823	410,619	23.41	29.42
전남	87,152	75,627	63,301	48,397	7,032	55,429	500	8,409	20,640	118,730	148,279	457,481	25.95	32.41
경북	103,368	89,740	78,812	51,958	6,104	58,062	794	12,322	21,872	136,874	171,862	618,275	22.14	27.80
경남	106,321	92,181	80,118	42,525	4,918	47,443	512	9,901	24,449	127,561	162,423	638,801	19.97	25.43
제주	15,108	12,712	11,194	9,040	497	9,537	73	3,235	1,952	20,731	25,991	115,768	17.91	22.45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2022년 12월 기준) 및 통계청 노인인구 현황을 근거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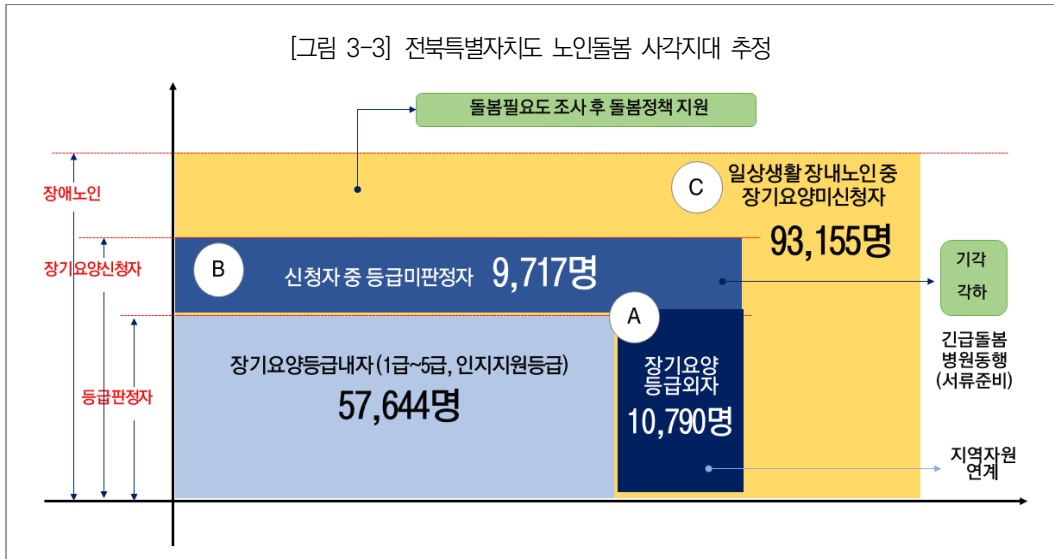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의 치매돌봄사각지대는 치매등록인구와 함께 경도인지장애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대 약 4.2만명 정도가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
- 한편, 전체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여 노인맞춤,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돌봄이용자는 최소 9.6만명에서 최대 12.1만명 정도임
- 노인주거시설을 포함하여 시설과 재가의 모든 돌봄서비스의 이용자가 12.1만명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노인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약 17.1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어 약 5만명 정도는 여전히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추정할 수 있음

[표 3-7]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돌봄수요 추정

특성	기능제한없음	도움필요노인			전북 노인인구	도움필요노인			돌봄필요 노인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치매노인		IADL 장애	IADL+ ADL	치매노인		
전체	87.8	6.6	5.6	25.3	423,128	27,926	23,695	107,051	158,672	
연령	65~69세	98.7	2.8	1.5	20.6	129,798	3,634	1,947	26,738	32,319
	70~74세	91.9	4.7	3.4	25.7	95,537	4,490	3,248	24,553	32,291
	75~79세	86.5	7.6	5.8	28.0	76,268	5,796	4,424	21,355	31,575
	80~84세	78.2	11.4	10.5	27.8	65,548	7,472	6,883	18,222	32,577
	85세 이상	58.0	19.2	22.8	34.0	55,977	10,748	12,763	19,032	42,543
전체	-	-	-	-	-	32,140	29,265	109,901	171,306	

자료 : 보건복지부(2021) 노인실태조사 기능상 장애인인구비율을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 돌봄필요노인 추정

[그림 3-3]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돌봄 사각지대 추정



-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돌봄사각지대를 추정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자 중 장기요양등급 외자 약 1.1만명과 장기요양신청자 중 등급미판정자 9.7천명 등이 가장 시급한 돌봄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분류
- 또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미이용자인 약 9.3만명도 장기적으로는 돌봄서비스의 욕구가 있는 사각지대로 분류 가능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돌봄은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노인맞춤돌봄 등의 돌봄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장기요양 등급 미판정자 중 기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급성기로 인한 기각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긴급돌봄을 통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또한, 장기요양등급신청자 중에서 각하결정이 된 노인의 경우는 서류미비로 인한 각하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병원동행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이외에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노인이지만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노인 약 9.3만명에 대해서는 돌봄필요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공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적절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표 3-8] 장기요양 이용자 추계(연평균 증가율 적용)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475,382	520,043	578,867	648,792	732,181	807,067	986,589	1,090,812	1,206,044	1,333,450	1,474,314	1,630,060	1,802,258	1,992,647	2,203,148
서울	77,073	82,411	88,998	96,775	105,334	111,380	129,363	139,416	150,250	161,926	174,509	188,070	202,685	218,436	235,411
부산	23,991	27,024	31,410	35,847	42,136	47,590	60,518	68,245	76,958	86,784	97,865	110,360	124,451	140,340	158,259
대구	19,903	21,792	24,301	28,010	31,884	35,188	43,413	48,221	53,562	59,494	66,082	73,401	81,530	90,559	100,588
인천	26,551	29,359	32,820	36,862	41,439	44,963	54,732	60,386	66,624	73,507	81,100	89,478	98,722	108,920	120,171
광주	12,744	13,751	15,214	16,889	19,201	21,019	25,517	28,115	30,978	34,132	37,608	41,437	45,656	50,304	55,426
대전	14,161	14,953	15,817	17,521	19,921	21,689	25,552	27,735	30,104	32,675	35,466	38,495	41,783	45,352	49,226
울산	5,832	6,487	7,309	8,362	9,671	11,094	13,921	15,595	17,469	19,569	21,921	24,556	27,508	30,815	34,519
세종	1,557	1,825	2,189	2,592	3,004	3,419	4,672	5,462	6,385	7,464	8,726	10,200	11,924	13,939	16,295
경기	101,320	112,109	125,817	141,263	158,222	172,024	211,366	234,292	259,705	287,875	319,100	353,712	392,078	434,606	481,747
강원	21,712	23,551	25,759	28,186	30,922	33,412	39,943	43,672	47,749	52,208	57,082	62,412	68,239	74,611	81,577
충북	17,202	18,943	21,499	24,512	28,479	31,949	40,102	44,929	50,336	56,395	63,182	70,786	79,306	88,851	99,545
충남	26,280	28,449	31,925	36,873	42,150	46,752	57,497	63,762	70,710	78,416	86,961	96,437	106,946	118,600	131,524
전북	24,503	27,395	30,827	34,873	40,408	45,787	57,929	65,159	73,292	82,439	92,728	104,301	117,318	131,961	148,430
전남	29,214	31,987	35,715	39,720	44,184	49,681	61,192	67,913	75,371	83,649	92,835	103,031	114,346	126,904	140,840
경북	35,686	38,849	43,313	48,432	54,947	62,113	76,592	85,052	94,446	104,878	116,462	129,325	143,609	159,471	177,085
경남	30,424	33,657	38,039	43,611	51,350	59,463	75,668	85,358	96,289	108,620	122,530	138,222	155,923	175,890	198,415
제주	7,229	7,501	7,915	8,464	8,929	9,544	10,651	11,251	11,885	12,556	13,264	14,011	14,801	15,636	16,518

- 한편, 노인돌봄사각지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인돌봄의 기반이 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장기추계에 기반한 돌봄사업 확대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의 장기요양 이용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장기요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돌봄인프라의 구축 필요
- 전북자치도의 장기요양 이용자는 2020년 기준 4.5만명 정도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8.4만명으로 약 두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30년에는 14.8만명으로 2020년보다도 약 세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북자치도의 장기요양 이용자의 증가율을 보면, 2025년도에는 2022년보다도 43.3%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30년에는 156.2%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추가적인 돌봄수요 추정과정에서 장기요양 이용자의 증가추이를 감안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필요

3. 장애인 돌봄수요 진단

- 장애인돌봄은 대부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제한적인 지원으로 인해 상당수 장애인이 관련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활동지원 시간도 충분하지 못해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일정한 사각지대 발생
- 장애인실태조사(2023)를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추정해 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타인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25.3%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 장애인 중에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은 약 4.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1.9만명 그리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2.8만명 정도로 추정됨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2023년 현재 4,402명으로 전체 돌봄 필요 장애인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경험을 기반으로 장애인돌봄수요를 추정해보면 2023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2.1만명정도로 추정됨
- 따라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약 1.2만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6만명 정도로 추정됨
-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주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시간이 장애인활동지원보다도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정책의 확대도 필요한 과제임

[표 3-9]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장애인 추정 (전체)	65세 미만 장애인	65세 이상	돌봄 수요
	전체	65세+	전체	65세+	전체	65세+	전체	65세+				
혼자서 스스로	51.3	44.9	46.9	38.8	47.8	43.8	45.4	40.6	59,106	24,593	30,864	
대부분 혼자서	16.5	18.5	19.2	23.6	20.1	22.0	19.4	22.2	25,257	10,509	16,876	
일부도움 필요	17.7	21.2	19.5	21.7	17.2	18.4	23.0	25.9	29,943	12,459	19,689	㉠
대부분 필요	8.6	8.9	8.9	10.1	8.7	9.4	9.0	8.5	11,717	4,875	6,462	㉡
거의 남의도움 필요	5.9	6.5	5.5	5.8	6.2	6.3	3.3	2.8	4,296	1,788	2,12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0,189	54,169	76,020	
돌봄수요									45,956	19,122	28,280	

[표 3-10]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장애인 추정	돌봄사각지대	
						65세 미만	65세 이상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8.2	9.5	14.1	16.0	20,83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3.1	3.2	6.5	5.7	7,421	11,701	
노인 장기요양보험	5.2	5.7	7.5	9.9	12,889		15,391
장애인 생활도우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	1.2	2.9	1.5	1,953		

자료 : 보건복지부(2023) 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6.5천명이고 이용자는 5.0천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약 13만명 중 3.85%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은 전국 평균 이용률인 4.58%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충북, 경북, 울산 등에 이어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의 약 80%이상은 12구간 이하로 대부분 150시간(일 5시간) 이용자로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요에 비해 이용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
- 월 최대 480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1구간 수급자는 23명으로 전체 이용자 13.8만명의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
- 장애인 중 모든 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24시간 돌봄 대상자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
- 또한, 중증장애인이면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 장애인나 장애인 중 학교 재학 중이거나 직장인은 별도의 추가적인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은 기능제한을 중심으로 구간별 돌봄서비스의 시간을 결정하고 있어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존재

[표 3-1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활동 지원 대상자	123,715	23,121	9,052	5,727	6,866	4,808	5,520	1,788	653	26,946	2,960	3,859	5,598	5,163	5,716	5,625	8,597	1,715
등록 장애인	2,641,896	388,795	175,467	130,520	152,226	69,314	71,440	51,383	12,944	586,421	100,515	97,117	134,004	130,189	136,472	178,341	188,825	36,918
활동 지원 이용률	4.68	5.93	5.16	4.39	4.51	6.94	7.73	3.48	5.04	4.59	2.94	3.97	4.18	3.97	4.19	3.15	4.55	4.65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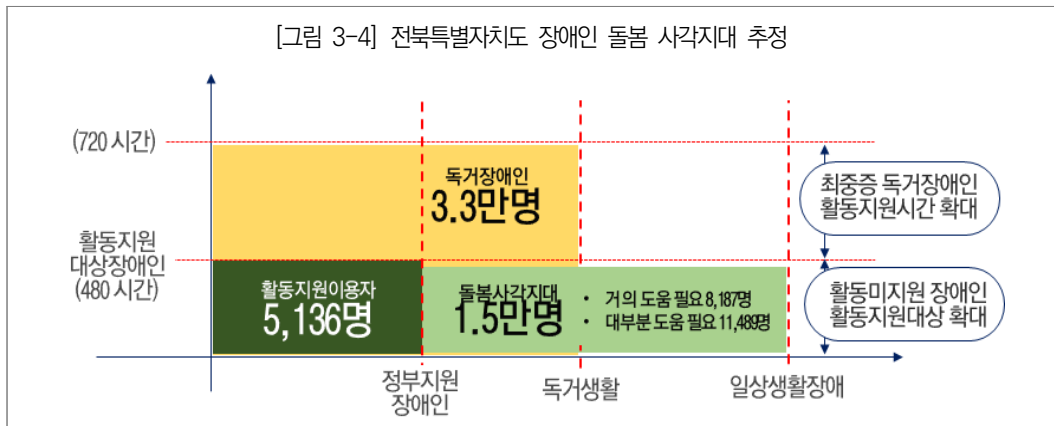
[표 3-12]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480	450	420	390	360	330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47	계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5)	
전체	23	170	833	1,821	282	1,032	2,081	1,465	3,615	4,131	7,233	19,400	38,989	42,741	13,828	982	138,626
자체	5	77	270	799	186	516	895	284	952	802	1,073	2,728	4,229	4,729	1,210	58	18,363
뇌병변	15	78	474	818	83	368	785	743	1,143	1,297	2,320	2,661	3,659	3,924	1,488	54	19,910
사각	1	4	15	30	5	28	48	100	337	547	1,530	3,822	4,006	2,085	399	16	13,006
청각			1	3		1	10	1	14	8	23	75	209	394	175	20	934
언어			3	6		1	11	19	27	41	63	141	360	563	249	9	1,493
지적	2	11	65	152	8	90	270	278	865	1,032	1,585	6,138	16,019	20,502	7,346	609	54,972
자폐성			3	1		7	21	28	145	324	540	3,211	8,647	6,323	1,210	65	20,525
신장			1	6		7	19	6	71	42	47	250	676	1,585	733	65	3,508
심장											2	7	21	30	12	1	73
호흡기						1	1	1	10	6	8	35	106	199	59	8	434
간							1		1	1	2	3	2	26	10		46
안면												1	3	12	5		21
장루요루						2	2				1	11	27	42	21		106
뇌전증				1		3	7	4	11	10	17	81	153	240	70	6	603
정신			1	5		8	11	1	39	21	22	203	872	2,537	841	71	4,632

자료 : 보건복지부(2023) 내부자료(2023년 6월 기준)

- 전체 등록장애인 중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가구는 26.6%로 추정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독거 장애인에 대한 돌봄정책 제공 필요
- 여기에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전환 이후 돌봄시간의 감소로 인해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는 일상생활장애인(ADL, IADL)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정부의 활동지원 미지원자와 독거장애인과 노인장애인 등 특수욕구를 가진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 가능



4. 아동 돌봄수요 진단

- 아동돌봄서비스는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돌봄과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이 주된 돌봄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취학 아동은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아동돌봄 사각지대는 주로 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보육의 중요한 제도인 아이돌봄의 경우도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지원대상의 제한 문제 그리고 돌봄교사의 부족에 따른 필요한 시간대의 이용제한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

[표 3-13] 아동돌봄 사각지대 유형화

구분	만0세-만5세	사각지대
영유아돌봄	기관보육	·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전북자치도 약 700개 읍면동) · 보육시설 특수보육 미제공(시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보육 등)
	가정보육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구간 제한(중위소득 150%) · 아이돌봄서비스 돌봄교사 부족으로 인한 이용제한 · 특정시간 이용 한계(등하교시 돌봄서비스 이용 등) · 특정상황 이용 한계(자녀, 부모 병원이용시, 부모 야근 혹은 주말근무시 등)
아동돌봄	방과후 돌봄	· 다함께돌봄(만6~12세 미만) · 초등돌봄(1~6학년) · 지역아동센터(만18세 미만) · 방과후아카데미(초등4~중등3학년)
		· 입소대기(다함께 돌봄 및 초등돌봄) · 지역아동센터 미설치지역(농어촌 지역) · 초등저학년 오후 돌봄 공백(5시 이후 돌봄지원 미흡) · 초등학생 출근 준비시간(7시30분~9시) 공백 · 부모 야근시 초등학생 자녀 8시 이후 돌봄 공백

[표 3-14] 아동돌봄 시간대별 돌봄제도 및 사각지대

구분		7:30~9: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학령중	부모	출근 시간	근무시간										퇴근시간	양육 or 야근/회식				
	영유아	어린이집(보육가능)															가정돌봄	
	초등저	아침 공백	학교(정규수업(12:30 or 13:30) 하교)					방과후+초등돌봄교실	오후공백	저녁공백								가정돌봄
	초등고	아침 공백	학교(정규수업(13:30 or 14:30) 하교)					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작은도서관 등		(취약가정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가정돌봄
방학중	부모	출근 시간	근무시간										퇴근시간	양육 or 야근/회식				
	영유아	어린이집(보육가능) or 1주일 가족돌봄 휴가사용 등)															가정돌봄	
	초등저	아침 공백	초등돌봄교실(급식비 자부담)					오후공백	저녁공백								가정돌봄	
	초등고	아침 공백	다함께돌봄(급식, 간식 자부담), 지역아동센터(급식, 간식비 무료) 작은도서관(5시간 이내 운영, 급식, 간식없음)					오후공백	저녁공백								가정돌봄	
	초등고	아침 공백	(취약가정 아동)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급식, 간식 무료)															가정돌봄

자료 : 김은희(2022) 재구성

- 전북특별자치도의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는 2022년 말 기준 1.4만명으로 신청자 1.6만명의 92.4%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고 초등돌봄교실의 신청자 기준 돌봄사각지대는 미이용자 약 1.2천명 그리고 학기중 기준 16시 이후 돌봄수요 등이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함
-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46개소의 8.4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정원대비 이용률은 86.8% 그리고 대기인원은 83명 정도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인프라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가 대표적인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는 2022년 기준 이용자는 7,747명으로 해당 연령대 빈곤아동 16,559명의 약 43.7% 정도만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아동 중 방과후 나홀로 아동에 대한 돌봄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적 돌봄 전체 이용자는 총 3.1만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재학생인 8.7만명의 35.02%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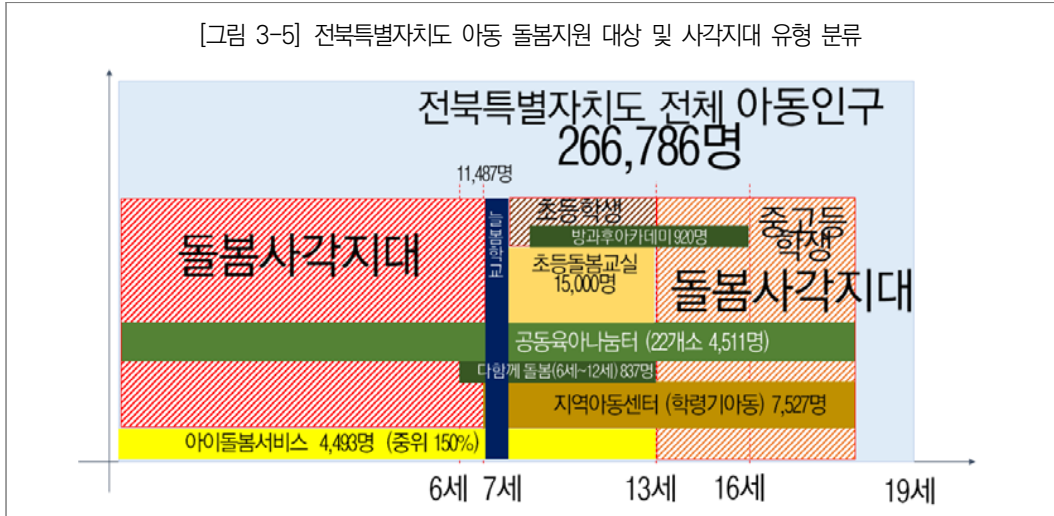
[표 3-15] 방과후 돌봄시설이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초등학생 수(명)	방과후 돌봄시설 이용자 현황					전체 공적돌봄 이용자	공적돌봄 이용률
		초등돌봄교실 (방과후~17시)	다함께 돌봄센터 (자율)	지역아동센터 (14사~19시)	청소년 방과후 교실	학교돌봄터 (방과후~21시)		
서울	378,174	45,151	28,445	11,157	600	675	86,028	22.75
부산	151,924	13,612	10,639	4,601	410	80	29,342	19.31
대구	120,617	12,065	9,097	5,089	510		26,761	22.19
인천	155,703	17,627	10,531	4,388	160		32,706	21.01
광주	81,510	6,122	6,044	7,167	250		19,583	24.03
대전	74,628	9,775	6,071	3,577	190		19,613	26.28
울산	64,941	6,153	4,532	1,215			11,900	18.32
세종	32,584	4,591	2,398	328	40		7,357	22.58
경기	752,540	65,774	49,675	20,824	1,360	306	137,939	18.33
강원	69,150	11,647	6,820	4,421	390		23,278	33.66
충북	81,605	9,055	6,857	4,625	440		20,977	25.71
충남	116,105	15,097	9,678	6,219	240	60	31,294	26.95
전북	87,237	14,539	8,398	7,247	370		30,554	35.02
전남	87,094	14,198	8,725	9,302	430		32,655	37.49
경북	123,214	18,313	10,832	6,691	430		36,266	29.43
경남	181,155	22,761	14,140	6,726	595		44,222	24.41
제주	40,417	5,588	3,028	1,633	240		10,489	25.95
계	2,598,598	292,068		105,210	6,655	1,121	600,964	23.13

자료 : 교육부(2022) 내부자료

[그림 3-5]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돌봄지원 대상 및 사각지대 유형 분류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전체를 공적돌봄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현재의 돌봄제도 하에서 초등학생 전체 아동 대비 공적 돌봄의 이용수준은 공적 돌봄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일정수준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음
- 종합해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동은 일상적인 보육과 교육을 제외하면 방과후 혹은 긴급한 위기상황에서의 돌봄에서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아동 약 3.1만명 이외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일부 다함께돌봄센터 등에서 일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7세 미만 아동 중 정규 돌봄시간 이외 시간제 보육과 24시간 보육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7세 이후 학령기에서는 정규 교과과정 이후 방과후 돌봄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서 관련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지원대상이 3만명 내외 수준으로 여전히 해당 연령대 아동의 방과후 돌봄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일부 방과후 돌봄으로 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인프라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당 연령대 아동의 상당수가 방과후 휴로시간을 보내는 나홀로아동이 존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데는 여전히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

5. 청년 돌봄수요 진단

- 기존의 돌봄정책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보호의 개념에서 돌봄정책이 추진 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고립과 은둔 그리고 사회적 배제 등을 경험하는 다양한 지역주민이 다수 발생 하고 있고 돌봄정책의 수요도 단순한 보호중심에서 상담과 재할, 보건의료와 주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새로운 돌봄수요에 대응한 돌봄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청년의 가족돌봄도 증가하고 있고 고립과 은둔 상황에 노출된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돌봄수요의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필요
- 최근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부모의 질병이나 병원 입원 등에 따른 돌봄제공자의 부재로 인해 부모의 돌봄을 자녀인 청년이 담당하는 이른바 가족돌봄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에서는 청년의 부양가능성이 큰 저소득, 한부모, 중증장애인 가구의 청년인구는 약 4.4만가구의 8.3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취약가구를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인구는 최소 8.3만명에서 최대 9.2만명 정도로 추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추정치는 인구주택총조사 1.4%, 건강보험빅데이터 11.4%,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 최소 6.2%에서 최대 16.2%로 추정
- 가족돌봄청년은 부모세대인 장년층의 돌봄정책 부재 혹은 미흡으로 인해 가족인 자녀가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장년층의 입원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돌봄정책의 확대와 함께 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청년 대상 상담과 교육, 의료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

[표 3-16] 가족돌봄청년 추정치

구분		인구주택 총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전국 일-생활 균형실태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 대상 연령		13~34세	13~34세	19~29세	19~34세	13~18세	19~34세
추정 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년	4.8%	11.4%	12.9%	-	6.2%	16.2%
	가족돌봄 청년	-	-	-	-	2.4%	10.8%
	주돌봄자 청년	1.4%	0.8%	-	0.6%	0.9%	4.3%
추정 의 한계	대표성	○	○	○	○	×	
	실제 제공 여부 파악	×	×	○	○	○	
가족의 범위		동거 가족만 포함	2촌 이내 가족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자료 : 함선유(2023) 가족돌봄청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돌봄수요 유형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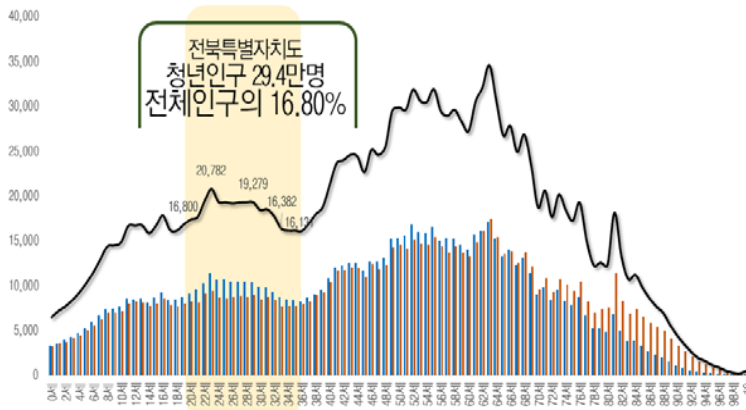


구분	전체 정책수요 (3차)	취약가구 내 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정책수요대상	
		수급자	차상위		2차	1차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년 [㉔]	47,757 (j)	22,350	15,043	360	48,117 ㉑	37,753 ㉒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㉕]	31,838 (i)	14,900	10,029		32,198 ㉓	25,289 ㉔
주돌봄 청년 [㉖]	12,676 (h)	5,932	3,993		13,036 ㉕	10,285 ㉖
전체	92,271	43,182	29,065		92,631	72,607

주 :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2022),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2023), 전북특별자치도 실태조사(2022)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 가족돌봄청년이나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돌봄수요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봄자원은 대부분 고령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새로운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돌봄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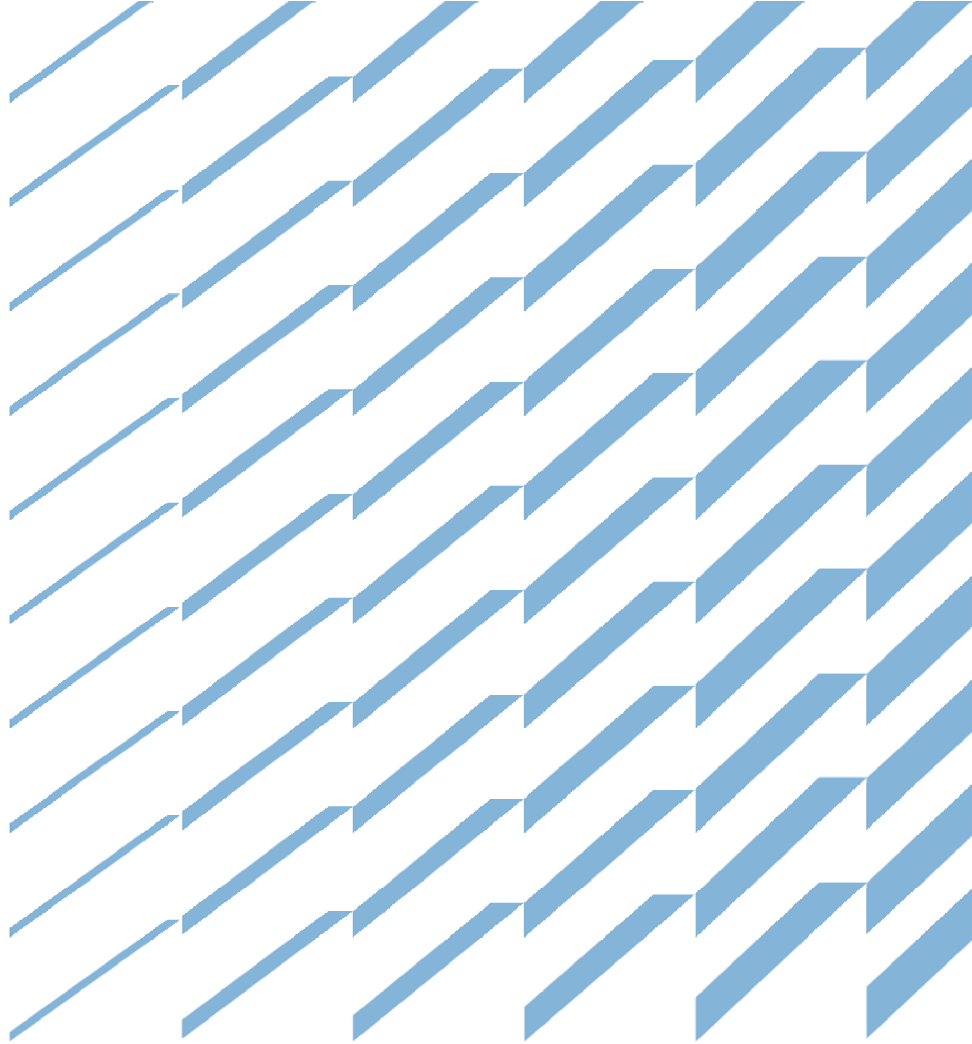
[그림 3-7]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대별 고립은둔인구 추정



[표 3-17] 고립은둔인구 추정

구분	출현율	고립은둔인구 추정
19-34	5.0	14,740
35-49	5.4	17,870
50-64	6.6	30,091
65-74	8.3	18,703
75이상	10.5	20,768

자료 : 김성아(2023) 고립은둔실태 조사 분석결과 재구성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돌봄정책 현황



1. 일반 지역주민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2. 노인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3. 장애인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4. 아동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5. 청년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제 4 장 전북특별자치도 돌봄정책 현황

1. 일반 지역주민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정책은 크게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상돌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체사업인 주민도움센터와 복지기동대 등의 사업이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로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의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안정 도모와 제공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0%이하를 대상으로 제공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조손,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으로 신체수발과 신변활동,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표 4-1]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지역주민 대상 돌봄서비스 현황

구분	가사간병	일상돌봄	주민도움센터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	만65세 미만, 중위소득 70%이하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조손,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시군구청장 인정자)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가족돌봄 청년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 전주2(완산, 덕진),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24년 신규 운영)	· 생활불편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가구포함),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생활안정지원 : 위기에 처한 가구* 중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지원 내용	· 신체수발 · 신변활동 · 가사지원 · 일상생활 지원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간병교육, 청년후시 지원 등)	· 각종 민원신청, 시장보기, 택배, 긴급 상황발생 시 도움서비스 제공,	· 생활불편 지원: 100만원 이내 긴급수리, 주거환경개선 활동의 실비 지원 · 생활안정지원 : 70만원 이내 생활안정지원금 · 위기가구 발굴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공과금 및 월세 정기제납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 고위험 예측가구
이용 인원	· 이용자 1,007명 · 제공인력 456명 · 제공기관 28개소		· 31,114건 지원 · 위기가구발굴 2,056건 · 방문상담2,820건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등임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크게 A, B형과 C형 두 개의 사업유형으로 구분되는데, A, B형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기준 1,279천원)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이 해당되고, C형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를 대상으로 함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제공시간은 유형에 따라 최소 월 24시간부터 최대 월 40시간 까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시간당 단가는 17,200원으로 시간에 따른 서비스 비용은 A형은 월 41.2만원, B형은 월 46.4만원, C형은 월 68.8만원으로
-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지원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2023년 현재 총 28개 제공기관에서 1,007명이 이용하고 있고, 제공인력은 총 456명임

[표 4-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구분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 지원 시간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제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 1,007명, 제공인력 456명, 제공기관 28개소				

[표 4-3] 일상돌봄 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구분	유형	주요서비스 내용	지역
기본 서비스	공통	재가 돌봄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일상지원 서비스(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제공
		가사 지원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동행 지원	· 이용자의 정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서비스 제공
특화 서비스	공통	식사 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3회) 군산,남원,김제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이동 및 동행 보조를 통한 병원 수납 등 지원(월16시간 이내) 군산,남원
		심리 지원	· 중장년 대상 심리지원 실시(월4회) 전주,군산,남원,김제
	돌봄필요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전주,군산,남원,김제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1과정당 총8회) 군산,남원
		가족돌봄청년	· 청년힐링 프로그램 지원 전주,군산,남원,김제
	· 전복의 치유농업(농장) 자원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지원(월 4회)		

- 일반 지역주민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서비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
-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로 재가돌봄과 가사돌봄 그리고 동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화서비스로 식사 및 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그리고 돌봄필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표 4-4] 일상돌봄 서비스의 내용 및 단가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단가
돌봄 필요 중장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월 25만원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월 24만원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4회)	월 24만원
	휴식 지원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일 6.3만원
	건강생활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월 20만원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월 12만원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월 20만원
가족 돌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월 25만원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월 24만원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4회)	월 24만원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일 6.3만원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8회)	과정당 15만원
	독립생활 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3회)	월 12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2024)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재구성

[표 4-5] 주민도움센터 운영현황

서비스 유형	내용									
사업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각종 민원신청, 시장보기, 택배, 긴급 상황발생 시 도움서비스 제공. · 청·장년 일자리 제공 · 몸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심부름) 제공 ※ 설치 : 전주2(완산, 덕진),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24년 신규 운영)									
지원현황	[참고] 사업유형별 지원현황									
	구 분	운영실적 (합계)	배 달 및 수 송					전화상담 (가정방문)	위기 가구 발굴	기타*
			시장 보기	물품	서류 작성	가전제품 수리	병원 약국			
	합 계	31,114	6,290	5,615	889	480	1,272	2,820	2,058	12,690
	전주시	2,959	521	1,136	16	22	130	384	11	739
	익산시	3,599	609	663	103	-	300	69	112	1,743
	정읍시	2,257	1,019	329	127	31	82	194	198	277
	남원시	2,627	547	296	13	6	168	614	383	600
	김제시	2,511	10	528	409	66	4	63	966	465
	진안군	4,167	1,146	941	19	2	205	754	99	1,001
	무주군	1,271	747	175	33	142	41	56	-	77
장수군	2,067	-	841	114	86	-	4	13	1,009	
임실군	6,111	651	221	43	-	294	11	-	4,891	
순창군	1,732	730	63	12	106	1	499	-	321	
고창군	1,813	310	422	-	19	47	172	276	567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민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 사회복지협회와 함께 주민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민도움센터의 사업대상을 모든 지역주민으로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령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신청과 시장보기 그리고 택배나 긴급상황발생 시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민도움센터는 2024년 현재 전주와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그리고 부안 등 1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직 군산, 원주 등 2개 지역은 아직까지 주민도움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관련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주민도움센터의 사업현황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총 31,114건을 지원하였고, 전화상담 2,820건,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2,058건 등이며 지원사업 유형별로 보면 시장보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물품지원, 병원 및 약국 동행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노인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는 크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 그리고 응급안심서비스, 노인 의료돌봄 시범사업, 노인급식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접지원과 주거개선, 건강지원, 생활지원 등의 연계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등급판정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

[표 4-6]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구분	노인맞춤돌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아간돌봄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의료돌봄 시범사업	노인급식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노인	· 장기요양수급자 (1~5등급인정등급), 등급외자, 맞벌이 가정 어르신 등	·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복귀자, · 시설 퇴소자, · 재가 사각지대, · 인지저하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등	· (무료경로식당) 급식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저소득 결식 노인
지원 내용	· 직접지원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체육, 일상생활 지원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 연계, 기타서비스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 방문목욕-간호, 진료 보조, 요양상담 · 주-아간보호: 신체활동 지원 교육·훈련 · 시설보호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	· 노인 아간돌봄서비스 제공	· 게이트웨이 · 화재감지기 · 활동량감지기 · 출입감지기 · 응급호출기	· 돌봄 필요한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하여 필요에 따른 보건 의료 돌봄 주거·영양·일상 생활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지원	· (무료경로식당) 연 300일 식사 제공 ·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연 360일 도시락 배달 서비스
이용 인원	· 이용자 : 38,184명 · 전담인력 : 2,698명	· 1~5등급 : 56,195명 · 인지등급 : 1,433명	· 17개소 144명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가구 1,494가구	· 약 700명 지원	· (무료경로식당) 2,730명 · (식사배달) 2,400명

- 응급안심서비스는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 그리고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케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감지기, 그리고 응급호출기 등의 안전 및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노인의료돌봄시범사업은 전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서 돌봄필요도에 기초하여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복귀자, 시설퇴소자, 재가 사각지대, 인지저하 대상자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등임
- 노인의료돌봄시범사업의 주요 돌봄서비스의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와 돌봄, 주거, 영양지원 그리고 일상생활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료경로식당과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을 배달하여 지원하는 도시락 배달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 돌봄서비스는 신체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식사와 주거, 응급안심 등의 돌봄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

[표 4-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파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급여내용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 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월 15만원)			
보험재정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를 0.9182% / 건강보험료를 7.09%)			
본인부담율	급여종류	본인부담비율		
	일반	기타의료급여대상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15%	6%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표 4-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판정자 현황(65세 이상 노인)

(단위 : 명, %)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원 등급	등급외	등급내	전체 노인	등급내 노인비율	전체 등급자 비율
합계	1,191,487	48,696	94,044	286,514	486,506	121,112	24,773	129,842	1061645	9,730,411	10.91	12.24
(비율)	100.00	4.09	7.89	24.05	40.83	10.16	2.08	10.90	89.10	-	-	-
서울	161,657	8,807	15,370	42,434	62,718	13,497	3,287	15,544	146113	1,733,580	8.43	9.33
부산	81,046	3,038	5,876	19,054	34,560	6,415	1,369	10,734	70312	745,199	9.44	10.88
대구	54,605	1,912	4,347	13,428	21,979	6,347	1,033	5,559	49046	466,338	10.52	11.71
인천	62,132	2,570	5,571	16,961	26,061	4,308	751	5,910	56222	497,057	11.31	12.50
광주	32,392	1,122	1,925	7,197	13,435	2,982	566	5,165	27227	233,878	11.64	13.85
대전	30,569	1,230	2,318	7,403	12,350	3,299	574	3,395	27174	244,756	11.10	12.49
울산	17,756	813	1,515	4,661	6,998	1,466	406	1,897	15859	175,709	9.03	10.11
세종	5,132	221	458	1,231	2,003	649	114	456	4676	42,560	10.99	12.06
경기	245,955	11,620	20,651	65,705	95,712	23,869	5,982	22,416	223539	2,122,718	10.53	11.59
강원	44,133	2,575	4,823	13,017	15,699	2,853	765	4,401	39732	366,555	10.84	12.04
충북	44,361	1,767	3,683	10,607	17,726	5,225	1,160	4,193	40168	332,237	12.09	13.35
충남	67,080	2,447	4,915	15,134	27,502	7,897	1,837	7,348	59732	454,534	13.14	14.76
전북	68,737	1,745	3,742	11,774	29,999	10,363	1,513	9,601	59136	423,128	13.98	16.24
(비율)	100.00	2.54	5.44	17.13	43.64	15.08	2.20	13.97	86.03	-	-	-
전남	77,625	2,089	5,034	14,516	33,865	9,214	1,764	11,143	66482	470,874	14.12	16.49
경남	90,328	2,764	5,837	19,632	39,301	11,378	1,712	9,704	80624	630,486	12.79	14.33
경남	95,349	2,967	6,608	20,204	42,492	10,362	1,640	11,076	84273	669,646	12.58	14.24
제주	12,630	1,009	1,371	3,556	4,106	988	300	1,300	11330	121,156	9.35	10.4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장기요양보험통계 재구성

-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판정자는 등급외자를 포함한 경우 총 6.8만명 정도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16.24%를 차지하고 있고 등급외자를 제외한 등급내자의 경우는 총 5.9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13.98%를 차지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판정자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16.24%로 전국 평균인 12.24%보다도 약 4%p 이상 높은 수준이고 등급내 노인 비율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3.98%로 전국 평균인 10.9%보다도 약 3%이상 높은 수준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장기요양서비스의 등급판정자 비율은 전남의 16.49%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등급내 노인의 비율도 전남 14.12%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장기요양판정자의 등급별 구성비를 보면, 1등급이 2.54%, 2등급 5.44% 등으로 중증도 비율이 약 8%정도 수준으로서 전국 평균 1등급 4.09%, 2등급 7.89%에 비하면 중증도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4-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판정자 현황(65세 이상 노인)

(단위 : 명, %)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등급	등급외	등급내 노인	전체 노인	전체 등급자 비율	등급내 비율
전체	68,737	1,745	3,742	11,774	29,999	10,363	1,513	9,601	59136	423,128	16.24	13.98
전주시	15515	522	969	2964	6854	1844	310	2052	13463	111,617	13.90	12.06
군산시	8,402	199	415	1,419	3,336	1,409	302	1,322	7080	57,042	14.73	12.41
익산시	9,827	224	514	1,588	3,762	2,128	301	1,310	8517	62,046	15.84	13.73
정읍시	6,318	135	242	910	2,696	1,046	109	1,180	5138	31,905	19.80	16.10
남원시	4,434	108	267	894	2,038	507	77	543	3891	24,126	18.38	16.13
김제시	5,126	107	253	798	2,275	833	80	780	4346	27,950	18.34	15.55
완주군	4,132	112	264	718	1,936	526	46	530	3602	24,192	17.08	14.89
진안군	1,664	49	101	270	760	280	33	171	1493	9,433	17.64	15.83
무주군	1,263	22	70	226	602	154	22	167	1096	8,554	14.77	12.81
장수군	1,128	36	77	224	546	98	12	135	993	8,030	14.05	12.37
임실군	2,045	40	105	412	1,004	210	28	246	1799	10,357	19.75	17.37
순창군	1,915	36	91	280	983	181	36	308	1607	9,779	19.58	16.43
고창군	3,898	76	217	644	1,968	488	70	435	3463	19,839	19.65	17.46
부안군	3,070	79	157	427	1,239	659	87	422	2648	18,258	16.81	14.5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장기요양보험통계 재구성

-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의 장기요양판정자 현황을 보면, 전체 노인인구 대비 등급판정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정읍시가 약 19.80%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임실군 19.75%, 고창군 19.65% 등의 순임
- 전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판정자의 비율은 정읍시와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등의 지역이 19%를 상회하여 가장 높았고 전주시와 군산시, 무주군, 장수군 등의 지역은 15% 이내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등급판정자의 비율이 낮은 수준임
- 전체 노인인구 대비 등급 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창군이 17.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실군 17.37%, 남원시 16.13%, 정읍시 16.10% 등의 순임
- 전체적으로 보면, 무주, 장수, 고창, 임실 등의 군부 지역이 장기요양 판정자 및 등급내자의 비율이 전주, 군산, 익산 등의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장기요양서비스의 등급판정자 중에서 등급 외 노인은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형 돌봄서비스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등급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돌봄 정책 구상 필요

[표 4-1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돌봄유형별 이용자 현황(65세 이상 노인)

(단위 : 명)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통합재가 서비스
합계	1,073,452	642,777	123,959	20,389	201,647	2,291	552,950	247,221	19,682	1,712
서울	145,709	93,919	4,095	2,361	20,652	855	82,431	29,561	3,359	135
부산	66,832	47,648	3,476	1,323	11,740	74	40,353	7,247	323	107
대구	49,587	28,899	3,660	338	11,879	68	26,985	9,544	1,301	10
인천	59,814	34,600	6,359	1,940	8,804	71	32,319	17,978	1,004	65
광주	27,364	18,571	4,674	1,186	6,028	1	17,738	3,850	183	21
대전	27,951	16,739	1,681	842	5,942	0	14,818	6,560	500	14
울산	15,570	9,516	1,923	459	3,773	5	7,795	2,617	232	27
세종	4,752	2,488	334	128	1,202	4	2,273	1,291	61	2
경기	231,548	127,925	9,001	3,967	40,822	841	114,936	69,822	5,360	430
강원	41,945	23,578	3,899	870	6,416	147	18,755	12,874	1,246	115
충북	41,982	21,673	4,062	523	9,332	13	18,690	12,222	998	62
충남	60,638	35,402	10,936	1,143	11,970	50	28,280	14,758	1,228	126
전북	59,286	33,849	16,587	2,186	14,773	26	33,102	10,541	740	239
전남	64,994	40,355	17,071	1,186	12,427	32	32,245	12,938	983	76
경북	81,135	48,361	13,976	676	18,014	77	37,099	17,070	1,383	57
경남	82,921	54,379	19,967	939	15,586	23	40,537	14,088	659	187
제주	11,424	4,875	2,258	322	2,287	4	4,594	4,260	122	3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장기요양보험통계 재구성

-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총 5.9만명의 등급내자 중에서 방문요양이 3.4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지용구 3.3만명 그리고 방문목욕 1.6만명 등의 순임

[표 4-11]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돌봄유형별 이용자 현황(65세 이상 노인)

(단위 : 명)

구분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통합재가 서비스
전체	59,286	33,849	16,587	2,186	14,773	26	33,102	10,541	740	239
전주시	13261	7413	2689	455	3602	2	8559	1942	101	56
군산시	7286	4,184	627	686	1,784	6	4,320	1,443	17	0
익산시	8,757	4,851	2,230	202	2,276	3	4,866	1,837	137	33
정읍시	5,121	3,437	1,812	152	1,104	1	2,755	717	120	7
남원시	3,943	2,294	1,761	193	799	1	1,756	770	32	54
김제시	4,317	2,388	1,868	47	958	1	2,274	813	64	2
완주군	3,526	1,809	1,094	103	1,011	1	2,047	592	34	27
진안군	1,469	786	552	24	345	0	619	290	35	2
무주군	1,171	622	405	5	293	0	560	308	13	0
장수군	996	582	437	8	201	1	418	225	21	2
임실군	1,811	1,082	743	21	390	2	879	285	46	55
순창군	1,564	1,001	648	7	287	1	766	271	41	1
고창군	3,403	1,950	929	124	939	5	1,908	543	43	0
부안군	2,661	1,450	792	159	784	2	1,375	505	36	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장기요양보험통계 재구성

[표 4-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및 현황

구분	주요내용						
자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중점돌봄군</td> <td>·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td> </tr> <tr> <td>일반돌봄군</td> <td>·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td> </tr> </tbody> </table>	대상자 구분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대상자 구분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개인별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원내용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 실시	·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지원 · 식료품지원 · 후원금지원	
		·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지원 · 건강보조지원	
·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참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분	전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노인수	423,128	111,617	57,042	62,046	31,905	24,126	27,950	24,192	9,433	8,554	8,030	10,357	9,779	19,839	18,258
사업량	38,184	6,145	4,420	4,180	3,740	3,050	3,095	2,520	1,290	1,543	780	1,543	1,513	2,310	2,055
이용률	9.02	5.51	7.75	6.74	11.72	12.64	11.07	10.42	13.68	18.04	9.71	14.90	15.47	11.64	11.26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점돌봄군과 16시간 미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돌봄군으로 구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서비스 유형은 직접서비스로서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서비스로서 생활지원과 주거환경개선, 건강지원 연계 그리고 기타서비스로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직접서비스는 주로 방문 안전지원, 전화 안전지원, ICT 안전지원,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신체건강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자는 2023년 말 기준 약 3.8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90.2%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무주군의 이용률이 18.04%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순창군 15.47%, 임실군 14.90% 등의 순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자는 총 9.7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23.04%정도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은 임실군이 3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무주군 31.73%, 순창군 31.47%, 진안군 29.25%, 고창군 28.8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은 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이 20% 내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4-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시 군	전체 노인 인구수 [a]	맞춤형 노인돌봄 [a]	장기요양서비스 [b]	돌봄서비스 이용노인 [c=a+b]	돌봄서비스 이용률
전체	1,754,757	423,128	38,184	59,286	97,470	23.04
전주시	642,727	111,617	6,145	13,261	19,406	17.39
군산시	259,980	57,042	4,420	7,286	11,706	20.52
익산시	270,036	62,046	4,180	8,757	12,937	20.85
정읍시	103,620	31,905	3,740	5,121	8,861	27.77
남원시	76,781	24,126	3,050	3,943	6,993	28.99
김제시	81,430	27,950	3,095	4,317	7,412	26.52
완주군	97,827	24,192	2,520	3,526	6,046	24.99
진안군	24,465	9,433	1,290	1,469	2,759	29.25
무주군	23,251	8,554	1,543	1,171	2,714	31.73
장수군	20,983	8,030	780	996	1,776	22.12
임실군	25,956	10,357	1,543	1,811	3,354	32.38
순창군	26,764	9,779	1,513	1,564	3,077	31.47
고창군	51,750	19,839	2,310	3,403	5,713	28.80
부안군	49,187	18,258	2,055	2,661	4,716	25.83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2023) 내부자료

[표 4-14]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시범)

구분	주요내용																											
사업대상	·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복귀자, 시설 퇴소자, 재가 사각지대, 인지저하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등 *노인 의료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전주시 선정 ('23.3.) 및 사업추진('23.7. ~ 25.12.)																											
지원 서비스	· 보건의료 : 건강의료안전망(방문진료, 방문간호, 운동지도, 복약지도) / 재택의료 서비스, 방문보건(보건소), 치매관리(보건소) · 영양돌봄 : 재가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응급간병, 긴급돌봄, 건강자킴이, 건강모니터링 · 생활지원 : 식사지원(도시락, 영양음식, 밀반찬, 음식재료, 이동지원, 틈새가사, 청소, 빨래) · 주거 : 주거환경개선, 낙상예방 작업치료, 케어안심주택 지원 * 케어안심주택은 평화영구 임대아파트 103동 21호, 팔복동 고령자 주택 12호 등 총 33호 운영 * 거점공간 운영 사업은 진북동 새들마을센터, 팔복동 플랫폼, 주민공유공간 온평 등 운영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및 타일시공, 낙상예방을 위한 가정환경 조성 등 사업 추진 · 기타 : 스마트돌봄플랫폼, 거점공간 운영, 소소한 수리, 생활민원 대응, 일상생활지원(전구 교체 등) * 스마트돌봄서비스는 관제시스템을 통한 행동 빅데이터 구축, 응급대응,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감지기, 활동센서, 응급호출 등 장비설치를 통한 응급대응, 챗봇두리(IOT 기반 돌봄체계 극복을 위해 돌봄인형을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우울감 해소 등 지원)																											
지원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대상자 유형</th> <th rowspan="2">총계</th> <th colspan="5">우선대상군</th> <th rowspan="2">재가 사각대상군</th> </tr> <tr> <th>소계</th> <th>장기요양 재가급여자</th> <th>등급 외 기각자</th> <th>맞춤돌봄 중점군</th> <th>급성기 요양병원 퇴원자</th> </tr> </thead> <tbody> <tr> <td>대상규모 (단위:명)</td> <td>24,090</td> <td>15,416</td> <td>12,752</td> <td>2,122</td> <td>542</td> <td>6,674</td> </tr> <tr> <td>사업인원 (단위 명)</td> <td>700</td> <td>560</td> <td>300</td> <td>130</td> <td>60</td> <td>140</td> </tr> </tbody> </table>	대상자 유형	총계	우선대상군					재가 사각대상군	소계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 외 기각자	맞춤돌봄 중점군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자	대상규모 (단위:명)	24,090	15,416	12,752	2,122	542	6,674	사업인원 (단위 명)	700	560	300	130	60	140
대상자 유형	총계			우선대상군						재가 사각대상군																		
		소계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 외 기각자	맞춤돌봄 중점군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자																						
대상규모 (단위:명)	24,090	15,416	12,752	2,122	542	6,674																						
사업인원 (단위 명)	700	560	300	130	60	140																						

- 노인의료돌봄서비스는 전주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역복귀자, 시설퇴소자, 재가돌봄 사각지대, 그리고 인지저하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노인의료돌봄서비스는 전주시를 거점기관으로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LH공사 전북본부 등이 참여하여 돌봄과 주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전주시의 노인의료돌봄서비스의 돌봄서비스 유형은 크게 보건의료, 영양돌봄, 생활지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제공
-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LH와 연계하여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와 고령자 주택 등 총 33호를 확보하여 돌봄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
- 노인의료돌봄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총 700명으로 이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300명, 등급 외 기각 및 각가자 130명, 맞춤돌봄 중점군 60명,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환자 70명 그리고 재가노인 사각지대 대상자 140명 등으로 구성

[표 4-15]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사업설명
1	건강-의료안전망 구축	방문진료, 방문간호, 만성질환 관리
2	맞춤형 운동지도	일상생활유지 기능훈련 및 운동지도
3	영양더하기사업	식사지원(도시락, 영양음식, 음식재료 지원)
4	퇴원환자 집중 생활지원	퇴원후 2개월 이내 집중관리(도시락, 밑반찬, 가사, 물물지원)
5	틈새가사 및 돌봄지원	대청소·방역, 이불빨래, 응급간병 지원
6	주거환경개선	안전바 설치, 문턱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7	낙상예방직접치료	가정내 동선을 고려한 가구재배치 및 행동수정,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
8	통합돌봄 거점공간 운영	진북동 새뜰마을, 팔복동 고령자주택 커뮤니티공간 운영
9	자기결정권지원사업(인생노트)	인생노트, 사전연명의료, 성년후견인제도 등 홍보·교육
10	재택의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방문형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11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12	치매안심센터 사업	경도인지장애, 치매환자에게 사례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연계
13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 환자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퇴원지원계획 지원연계
1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 서비스
15	건강백세운동교실	거점공간에 어르신을 위한 요가, 체조 등 건강 프로그램 연계
16	안심동행	은퇴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2명이 병원 동행 등 외출지원
17	어르신병원동행 서비스	요양보호사 1인이 병원동행 지원
18	건강지킴이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교육 및 지원
19	재가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
20	통합재가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 기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통합제공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필요노인에게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지원
22	긴급돌봄 서비스	긴급수술, 장기요양 등급판정전 긴급돌봄 서비스
23	자활간병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간병지원
24	영구임대아파트 활용 케어안심주택 운영	영구임대아파트 공실을 활용한 케어 안심주택 운영
25	해피하우스 사업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 주택점검 및 보수, 살균서비스
26	노인일자리 사업(합사세요-소소한 수리)	소소한 수리, 단순생활 불편사항지원 등
27	스마트돌봄 플랫폼	데네 장비설치를 통한 일상생활 알림, 동작감지, 응급호출 등 안전망 구축
28	챗봇 '두리'	케어인형(정서지원: 말동무, 복약알림, 음악, 날씨 등 생활정보 등)
29	전주시민 안심서비스 앱	일정시간 휴대폰 미사용시 보호자 자동 구호문자 발송
30	통합돌봄 거점공간 구축	주거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플랫폼 구축
31	노인일자리 사업(시니어 설문조사 사업)	은퇴인력을 활용한 돌봄 대상자 발굴조사
32	ICT 정보공유 플랫폼 개발사업	통합돌봄 건강정보 공유 플랫폼 사업

- 의료돌봄서비스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하여 돌봄사업과 연계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상호 지원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노인의료돌봄서비스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연계가능한 돌봄사업으로는 맞춤형 운동지도, 영양더하기 사업, 퇴원환자 집중 생활지원, 틈새가사 및 돌봄지원, 주거환경개선, 낙상예방 작업치료, 재택의료시범사업, 방문건강관리지원,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 건강백세 운동교실, 건강지킴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임

- 전북형 통합돌봄서비스 설계과정에서 기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통합돌봄서비스 계획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돌봄정책의 대상과 돌봄유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검토 필요
- 다음으로 노인돌봄정책의 유형으로서 노인응급안심지원서비스로서 지원대상은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로서 독거장애인이나 가족의 직장 및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노인응급안심지원서비스의 지원내용으로는 가정 내 장비모니터링을 설치하여 화재나 응급호출 등의 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노인응급안심지원서비스는 게이트웨이와 활동감지기, 치매예방 및 노래 등의 콘텐츠,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가정 내 안심서비스 제공
- 노인응급안심서비스의 지원자는 김제시가 3.3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무주군 2.8천명, 장수군 2.6천명, 전주 2.5천명 익산시 2.0천명, 군산시 1.9천명 등에게 제공하고 있음

[표 4-16] 노인응급안심지원서비스 내용 및 현황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 가정에 설치된 맥내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응급호출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광역지원기관 1개소, 시·군 지역센터 14개소		
	· 설치장비 :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구 분	신규장비	기존장비
	게이트웨이	모니터+가치대(태블릿 pc기반)	전화기
	활동감지기	적외선 활동감자+레이더 감지(심박, 호흡)	적외선 활동감지
	콘텐츠 (치매예방, 노래 등)	모니터 내장	-
	설치 및 A/S	통신사	응급관리요원
이용요금	10,000원/월 이내 (통신료 외 임대료, 장비A/S등)	기기값 35만원, 2,200원/월(통신료)	
공급방식	조달서비스 구매 후 통신사 임대방식*	지자체 구매 및 보급	

구분	전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사업량	27,953	2,545	1,882	2,013	1,498	1,744	3,266	2,779	1,296	2,742	2,583	1,048	1,967	1,298	1,292
응급요원	27,953	2,545	1,882	2,013	1,498	1,744	3,266	2,779	1,296	2,742	2,583	1,048	1,967	1,298	1,292

[표 4-17] 급식지원 내용 및 현황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 무료경로식당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 등) ·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지원내용	· 무료경로식당 : 1식 4,500원 (연 300일 식사 1식 지원) ·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 1식 5,000원 (연 360일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현황	· 무료경로식당 : 2,530명(2023년) ·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 2,200명(2023년)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명)
무료 경로식당	1,054	471	288	149	130	168	91	20	52	43	42	42	95	85	2,730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568	163	217	314	260	121	146	79	88	93	92	72	91	96	2,400
급식지원 전체 노인수	1,622	634	505	463	390	289	237	99	140	136	134	114	186	181	5,130
노인인구	111,617	57,042	62,046	31,905	24,126	27,950	24,192	9,433	8,554	8,030	10,357	9,779	19,839	18,258	423,128
급식지원 비율	1.45	1.11	0.81	1.45	1.62	1.03	0.98	1.05	1.64	1.69	1.29	1.17	0.94	0.99	1.21

- 노인급식지원서비스는 크게 무료경로식당과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 무료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의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은 몸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무료경로식당은 1식 4.5천원을 지원하고 연 300일 1식을 제공하고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은 1식 5.0천원으로 연 360일 도시락 배달서비스 제공
- 급식지원 인원은 무료경로식당이 2023년 말 기준 2,530명이었고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은 2,200명을 지원
- 급식지원 노인의 규모를 보면, 무료경로식당과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을 모두 포함하여 총 1,622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이는 전체 노인의 약 1.45%정도 수준임
- 지역별로 보면, 급식지원노인은 지원인구의 규모로 보면 전주가 63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505명, 정읍 463명, 남원 300명 등의 순이고 전체 노인대비 노인급식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은 장수군이 1.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주군 1.64% 등의 순임

[표 4-18] 세부사업별 이용대상 가능자

구분	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맞춤 돌봄(종합)	노인 의료돌봄	노인응급 안심서비스	급식지원	가사간병	장애인활동 지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A				●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B				●	●				
장애1급-3급(중증)				●				● (장애인활동 지원탈락자)	●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차상위계층(기초수급 포함)				●			●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등								●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		●	●		
고령 부부노인가구(75세 이상)				● (단가가사 서비스)		●			
조손가구						●			

- 유사돌봄서비스 대상자의 범주를 구분해 보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장기요양재가급여 등의 서비스의 대상자이고 노인맞춤돌봄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과 가사간병,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의 이용이 가능하고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입원 퇴원환자 등은 가사간병서비스에서 지원 가능
- 독거노인과 고령부부노인 등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공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과 소년소녀 가장 및 조손가정은 가사간병 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 노인의료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를 포함하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응급의료서비스는 독거노인과 고령 부부노인, 그리고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아울러 급식지원은 차상위와 기초수급 노인 그리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가사간병서비스는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장기입원 퇴원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빈곤계층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처럼,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현재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장기입원환자 퇴원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표 4-19] 세부사업별 이용가능 서비스 내용

구분	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맞춤 돌봄	노인 의료돌봄	노인응급 안심 서비스	급식지원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가사지원(청소, 세탁, 취사, 정보기 등)	●				● (식사관리)	●			●	●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신체정결, 배설관리, 옷입기, 몸 단장, 식사도움, 이동)	●	● (목욕 도움만)		●		●			●	●
건강지원 (감염예방, 체위변경, 복약보조, 심신기능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등)	●			●	● (영양교육, 보건교육, 운동교육)	●			●	
간호행위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측정, 지남력 평가, 교육 및 상담, 신체훈련, 의뢰 및 검사 등)			●			●				●
안전지원 (응급상황대응, 안전관리, 안전확인 등)					●	●	●		●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	●				●	●			●	●
사회참여활동 지원 (문화여기활동, 평생교육활동, 체험여행활동, 자조모임 등)					●					
정서지원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공)	●			●	●	●			●	
정신건강지원(우울예방,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대상)		●	●	●	●			
주거지원(주거환경 개선)						●				
긴급지원						●				
식사지원(식사배달 포함)								●		

- 돌봄서비스의 세부유형별로 지원내용을 보면,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건강지원, 간호 등 보건의료돌봄 등의 서비스를 주된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가사지원, 건강지원에 더하여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신건강지원, 긴급지원, 주거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노인의료돌봄서비스를 긴급지원을 포함하여 가사, 신체활동, 의료돌봄, 안전지원,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응급안심서비스는 안전지원과 정신건강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외에도 가사간병과 장애인활동지원 등은 가사지원, 신체활동, 간호 및 보건의료지원, 일상생활지원, 안전지원과 정서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장애인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 장애인돌봄정책은 크게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그리고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중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아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로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19세 미만 장애아 심한 장애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아동돌봄과 장애부모 휴식지원 등의 사업 제공

[표 4-20] 장애인 돌봄정책 현황

구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사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장애아 양육가정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각 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시각청각언어지각 자폐성뇌병변 장애인부모를 둔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성인발달 장애인	지역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 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방문 목욕, 방문 간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아돌봄지원 학습놀이활동 신변보호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및 고충상담 ② 장애부모 휴식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자조모임 결성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 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정상적 언어습득을 위한 체계적 언어발달 지원	· 참여형 주간활동지원 · 창의형 주간활동지원	치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민원 업무, 시장보기, 병원이용 보조 등의 서비스
이용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 5,163명 · 가사지원 343명 · 도우기지원 1,2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돌봄 465명 · 휴식지원 92명 	· 4,020명	· 50명	· 66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2,689건 · 인원 : 68,340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2023년 현재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약 455명, 그리고 장애가족 휴식 지원서비스는 92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서비스는 만18세 미만의 시각 및 청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와 청능,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시각 및 청각 그리고 발달장애아동을 둔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정상적 언어습득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23년 현재 약 5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는 만 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참여형 주간활동지원과 창의형 주간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23년 말 기준 약 657명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서비스는 지역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통한 출퇴근 및 외출보조, 민원지원, 시장보기, 병원이용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약 5.3만건 그리고 약 6.8만명으로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4-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세부서비스	이용자 현황			
신체 활동 지원	개인위생관리	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양치질 도움,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옷 갈아입히기 등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이용자 현황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지역	이용자	전체 장애인	이용률
	식사도움	식사 처리기, 식사 보조 등	계(명)	5,163	130,189	3.97
	식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전주	1,833	34,009	5.39
가사 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군산	612	17,534	3.49
	세탁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익산	808	20,274	3.99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빈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정읍	320	9,847	3.25
			남원	169	7,454	2.27
사회 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김제	383	9,163	4.18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완주	346	8,219	4.21
			진안	85	2,741	3.10
			무주	99	2,390	4.14
기타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장수	90	2,298	3.92	
		임실	91	3,063	2.97	
		순창	102	2,809	3.63	
		고창	102	5,422	1.88	
			부안	123	4,966	2.48

- 세부적으로 장애인돌봄서비스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돌봄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그리고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등으로 제공되고 있고, 2023년 현재 약 5,163명에게 제공하였고 전체 장애인의 약 3.97%가 이용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가 5.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완주군 4.21%, 김제 4.18%, 무주군 4.14% 등의 순으로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표 4-2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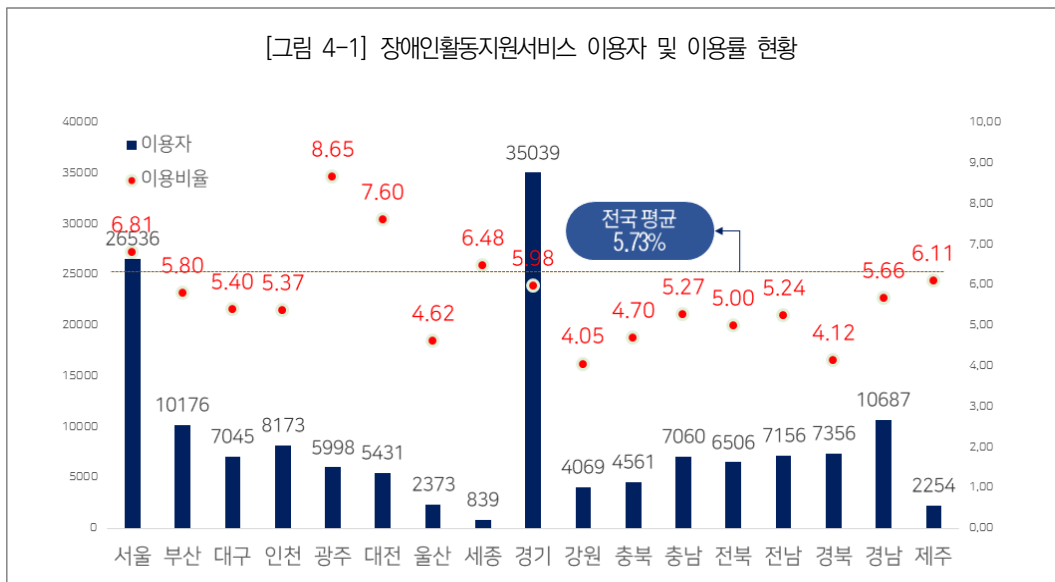
연도	시도	수급자 (명)	이용자 (명)	활동지원 기관수 (개)	활동지원 기관수 (활동보조)	활동지원 기관수 (방문목욕)	활동지원 기관수 (방문간호)	활동지원 인력 (명)	전체 등록 장애인	수급자 (%)	이용자 (%)
2022	서울	24,992	20,376	156	139	12	5	19,819	390,997	6.39	5.21
	부산	9,436	8,055	73	70	1	2	7,815	176,069	5.36	4.57
	대구	6,454	5,087	40	37	3	0	4,891	127,439	5.06	3.99
	인천	7,588	6,099	53	41	10	2	5,892	150,892	5.03	4.04
	광주	5,538	4,944	33	30	3	0	4,879	69,454	7.97	7.12
	대전	5,162	4,259	21	21	0	0	4,217	71,915	7.18	5.92
	울산	2,082	1,649	12	10	1	1	1,551	51,402	4.05	3.21
	세종	748	24,079	8	8	0	0	568	12,848	5.82	4.51
	경기	31,916	579	212	188	18	6	22,421	583,782	5.47	4.12
	강원	3,796	2,685	49	33	15	1	2,302	101,622	3.74	2.64
	충북	4,344	3,425	39	29	7	3	3,153	97,863	4.44	3.50
	충남	6,416	5,059	65	52	13	0	4,236	134,698	4.76	3.76
	전북	5,934	4,538	64	41	22	1	3,984	131,652	4.51	3.45
	전남	6,332	5,201	81	65	13	3	4,519	138,410	4.57	3.76
	경북	6,831	5,048	73	60	13	0	4,375	182,373	3.75	2.77
	경남	9,979	8,093	100	81	17	2	7,431	189,874	5.26	4.26
	제주	1,961	1,602	10	7	2	1	1,325	37,134	5.28	4.31
전체	139,509	110,778	1,089	912	150	27	103,378	2,648,424	5.27	4.18	
2023	서울	26,536	21,600	152	144	8		21,010	389,795	6.81	5.54
	부산	10,176	8,701	67	65	1	1	8,469	175,467	5.80	4.96
	대구	7,045	5,600	45	41	4		5,372	130,521	5.40	4.29
	인천	8,173	6,644	52	39	10	3	6,417	152,226	5.37	4.36
	광주	5,998	5,354	34	31	3		5,200	69,314	8.65	7.72
	대전	5,431	4,382	26	26			4,321	71,440	7.60	6.13
	울산	2,373	1,859	14	12	1	1	1,733	51,383	4.62	3.62
	세종	839	666	7	7			650	12,944	6.48	5.15
	경기	35,039	26,824	234	205	20	9	24,844	586,421	5.98	4.57
	강원	4,069	2,886	56	37	17	2	2,478	100,520	4.05	2.87
	충북	4,561	3,656	40	29	7	4	3,402	97,117	4.70	3.76
	충남	7,060	5,554	65	52	13		4,662	134,004	5.27	4.14
	전북	6,506	5,010	70	47	22	1	4,402	130,189	5.00	3.85
	전남	7,156	5,988	78	65	11	2	5,165	136,472	5.24	4.39
	경북	7,356	5,605	74	63	11		4,938	178,340	4.12	3.14
	경남	10,687	8,769	112	94	17	1	8,018	188,825	5.66	4.64
	제주	2,254	1,779	10	7	2	1	1,489	36,918	6.11	4.82
전체	151,259	120,877	1,136	964	147	25	112,570	2,641,896	5.73	4.58	

[표 4-2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별 유형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명)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활동지원	5,163	1,833	612	808	320	169	383	346	85	99	90	91	102	102	123
가산급여	343	140	57	44	11	10	19	19	4	4	3	4	2	8	18
추가지원	1,260	733	131	128	37	18	62	46	17	10	5	8	11	34	19
전체	6,766	2,706	800	980	368	197	464	411	106	113	98	103	115	144	160
등록 장애인	130,189	34,009	17,534	20,274	9,847	7,454	9,163	8,219	2,741	2,390	2,298	3,063	2,809	5,422	4,966
이용률	5.20	7.96	4.56	4.83	3.74	2.64	5.06	5.00	3.87	4.73	4.26	3.36	4.09	2.66	3.22

-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앙정부의 활동지원서비스와 함께 가산급여에 더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비로 투입하여 추가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 이용자는 약 6,755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13.0만명의 5.20%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말을 기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을 보면, 전북은 2022년 말 기준 5.0% 정도로 전국 평균인 5.73%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본예산)	2023년 (2회추경)	2023년 (3회추경)		
국가 지원	지원인원(명)	2,522	2,640	2,974	3,413	3,706	4,264	4,781	4,762	4,762	
	계	28,511	37,884	56,914	71,932	83,844	100,194	119,386	120,000	114,285	
	예산 (백만원)	국비	19,958	26,519	39,840	50,353	58,691	70,136	83,570	84,000	80,000
		도비	3,421	4,546	6,830	8,733	10,061	12,023	10,745	10,800	10,285
		시·군비	5,132	6,819	10,244	12,847	15,092	18,035	25,071	25,200	24,000
가산 급여	지원인원(명)	72	72	69	90	108	177	245	253	253	
	계	71	71	109	189	494	606	1,361	1,404	2,055	
	예산 (백만원)	국비	50	50	77	132	346	424	953	983	1,439
		도비	8	8	12	23	59	73	122	126	185
		시·군비	12	12	20	34	89	109	286	295	431
도지원 추가 지원	지원인원(명)	379	392	450	485	900	996	1,130			
	계	965	1,187	1,430	3,562	3,836	5,304	6,028			
	예산 (백만원)	도비	290	356	429	1,069	1,151	1,591	1,808		
		시·군비	675	831	1,001	2,494	2,685	3,713	4,220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외에 장애아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은 2023년 기준 돌봄서비스 382명, 휴식지원 346명 등에게 제공하고 있음

[표 4-25]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연도	수행기관	사업비(천원)	돌봄서비스 배정량(명)	돌봄서비스 사업량(명)	휴식지원 배정량(명)	휴식지원 사업량(명)	수행인력 (명)
2023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	5,893,083	465	382	92	346	5(전담1, 보조4)
2022		5,235,953	576	312	92	70	5(전담1, 보조4)
2021		2,158,906	296	248	64	69	5(전담1, 보조4)
2019		1,845,900	285	307	92	148	2(전담, 보조)
2020		2,327,650	296	313	92	331	2(전담, 보조)
2018		1,146,719	250	257	92	127	2(전담, 보조)
2017		940,208	223	253	92	140	2(전담, 보조)
2016		838,895	223	223	92	219	2(전담, 보조)
2015		821,459	223	223	92	196	2(전담, 보조)
2014		714,244	200	205	92	201	2(전담, 보조)
2013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07~2020)	423,300	180	242	80	81	2(전담, 보조)
2012		366,900	150	150	82	82	2(전담, 보조)
2011		402,000	170	179	75	68	2(전담, 보조)
2010		124,200	35	37	68	66	2(전담, 보조)
2009		111,054	32	32	-	66	2(전담, 보조)
2008		111,240	32	35	-	31	2(전담, 보조)
2007		102,134	37	37	-	34	1(전담)

[표 4-26]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현황

항 목	내 용			
사업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	· 만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재가, 시설)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회당 50분, 월 8회(주 2회), 의료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불가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액			
	구 분	제공액	본인부담액	
	기초생활수급자	월25만원	무료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	월23만원	2만원
		65%이하	월21만원	4만원
120%이하		월19만원	6만원	
180%이하	월17만원	8만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참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2년 이용자	4,056	1,722	625	654	225	119	151	245	39	34	22	53	29	74	64
'23.9월 이용자	4,020	1,609	624	691	241	123	158	255	38	34	23	53	39	66	66
전체*	14058	3609	1873	2504	1188	739	881	972	288	251	186	307	285	528	447
이용률	28.60	44.58	33.32	27.60	20.29	16.64	17.93	26.23	13.19	13.55	12.37	17.26	13.68	12.50	14.77

-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및 감각 등의 기능향상을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청능이나 심리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발달재활서비스의 돌봄서비스의 유형은 언어청능, 미술 및 음악치료, 행동 및 놀이치료 그리고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별 차등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지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는 최대 8만원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에게는 2만원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자는 2023년 말 기준 이용자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약 4천여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28.6%정도가 이용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역별 이용률을 보면, 전주가 44.58%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군산 33.32%, 익산 27.6% 등의 순으로 도시지역의 이용률이 농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27]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항 목	내 용			
사업목적	·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의 지원 인프라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 완화 및 해소			
서비스 대상	·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성인발달장애인			
서비스 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월132~176시간 제공 * 소그룹을 구성해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을 통해 참여형·정형 등 이용자 맞춤 프로그램 구성하되 프로그램 중 외부활동 30% 이상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단가 : 16,150원(시간당)			
	구분	1인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율	100%+8,070원	100%	80%
	단가(1인당)	24,220원	16,150원	12,920원
	그룹당 총 지급액	24,220원	32,300원	38,760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참고]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2년 이용자	557	178	111	54	22	36	48	39	6	6	1	10	18	11	17
'23.9월 이용자	647	206	115	75	25	38	49	42	9	7	21	13	18	13	16
전체*	14,058	3,609	1,873	2,504	1,188	739	881	972	288	251	186	307	285	528	447
이용률	4.60	5.71	6.14	3.00	2.10	5.14	5.56	4.32	3.13	2.79	11.29	4.23	6.32	2.46	3.58

주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인)을 기준으로 이용률 산정

- 발달재활서비스의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이후 성인장애인의 돌봄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은 소그룹을 통한 주간활동지원사업으로 월 132시간에서 최대 176시간을 제공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소득별 차등지원으로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약 1.6만원으로 1인과 2인 그룹 그리고 3인 그룹 등으로 적용요율과 단가를 차등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9월 말 기준 647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 1.4만명의 4.60%가 이용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역별 이용률을 보면 군산시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주시 5.71%, 김제시 5.56%, 남원시 5.14% 등의 순으로 도시지역의 이용률이 농촌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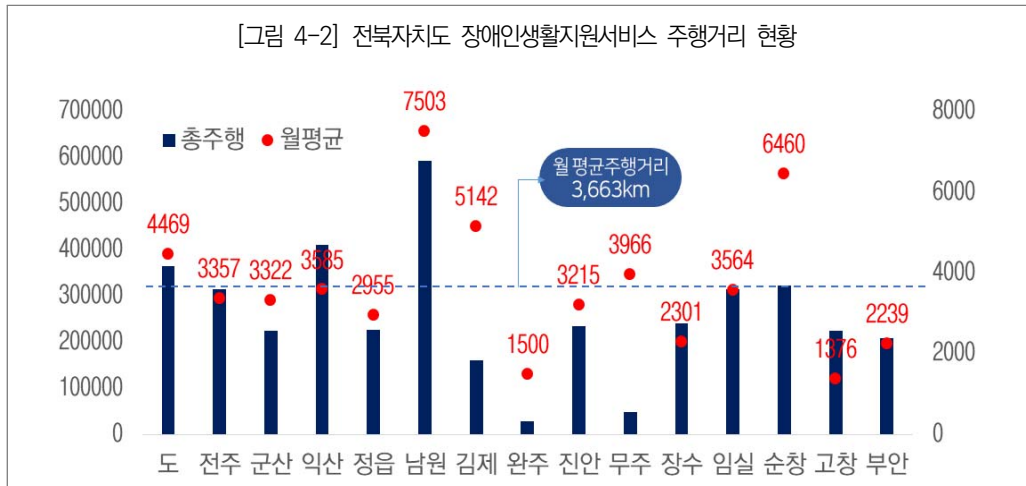
[표 4-28]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서비스 현황

항 목	내 용
사업목적	·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서비스 대상	·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소재한 지역 등록 장애인 우선(인근지역 장애인 가능)
서비스 내용	·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민원 업무, 시장보기, 병원이용 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

[참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분	계			민원업무		출퇴근		장보기		병원진료		교육참여		기타	
	건수	인원	이용료 수입 (천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	52,689	68,340	98,375	1,341	1,726	5,044	6,373	1,131	1,461	6,828	9,521	12,307	14,655	26,038	34,604
도	4,424	8,151	6,678	166	195	1,018	1,813	57	109	277	539	0	0	2,906	5,495
전주	5,741	6,996	5,379	69	74	565	617	124	151	171	517	1,954	2,023	2,858	3,614
군산	5,444	6,170	6,589	28	32	618	644	63	90	599	677	22	99	4,114	4,628
익산	6,115	6,924	5,999	19	19	352	358	0	0	142	192	5,223	5,923	379	432
정읍	4,836	6,061	5,976	167	209	1,019	1,277	0	0	272	341	0	0	3,378	4,234
남원	9,339	13,252	14,238	541	794	526	559	407	514	2,258	3,227	3,305	4,136	2,302	4,022
김제	5,318	5,693	11,886	19	20	0	0	2	2	758	754	388	374	4,151	4,543
완주	1,297	1,672	4,239	5	5	0	0	6	6	23	30	640	875	623	756
진안	1,367	1,767	4,966	18	25	622	775	25	36	412	496	15	90	275	345
무주	1,466	1,986	5,367	37	39	0	0	54	55	510	722	146	203	719	967
장수	1,089	1,892	3,305	0	0	0	0	35	35	182	310	72	350	800	1,197
임실	1,849	2,519	6,964	0	0	0	0	20	20	445	697	135	135	1,249	1,667
순창	1,288	1,750	7,743	8	5	23	3	93	136	327	489	54	2	783	1,115
고창	1,523	1,820	3,369	123	151	212	237	169	220	286	340	320	412	413	460
부안	1,593	1,687	2,077	141	158	89	90	76	87	166	190	33	33	1,088	1,129

[그림 4-2] 전북자치도 장애인생활지원서비스 주행거리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활이동지원서비스는 2023년 말 기준 약 6.8만명이 이용하였고 이용건수는 5.2만건으로 지역별로는 남원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시 등의 순임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서비스의 이용현황을 보면,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민원업무가 약 1.7천명, 출퇴근 지원 6.4천명, 장보기 1.5천명, 그리고 병원 진료 9.5천명, 교육참여 1.5만명 등으로 대부분 교육참여로 인한 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병원 진료와 출퇴근 지원 등이 다른 이용형태보다도 높게 나타남
- 전북자치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서비스의 월평균 주행거리는 2023년 말 기준 약 4,469km로서 지역별로 보면, 남원시가 월평균 7,503km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순창군 6,460km, 김제시 5,142km, 무주군 3,966km 등의 순임
- 다음으로 장애인 돌봄사업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 부재 시 긴급돌봄이 필요하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시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과 함께 사회참여 활동 지원 그리고 식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24시간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지원도 제공하고 있는데, 시설지원은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8명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말 기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위해 지정된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2개 센터로서 정원 11명 중에서 현원은 8명이 운영하고 있음

[표 4-2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이용자 현황
이용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이용사유	보호자 부재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일시적 돌봄 지원(보호자 입원, 경조사, 긴급상황 시)	
지원기간	1회 입소 시 입소 사유에 따라 1~7일(연 최대 30일)	
이용료 (1일 기준)	▶이용료 1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무료	▶식비 30천원 예산 지원 15천원 + 본인부담 15천원,
제공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 기관 : 2개 센터 · 정원 11명/현원 8명
수행기관 유형	거주시설 활용형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빈 공간 2개소(남,여)를 활용)	
이용정원/인력	남 4명, 여 4명 / 제공인력 11명 (센터장 1, 돌봄인력 10)	
추진체계	① 이용신청 (발달장애인 보호자 →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돌봄센터) ② 대상자 선정·배치, 돌봄계획 수립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③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긴급돌봄센터)	

4. 아동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사업

-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크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등이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외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학교 이하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초등돌봄교실도 역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 다만, 각각의 돌봄서비스도 유형별로 지원대상의 선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우선지원이 원칙인 반면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등은 맞벌이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 4-30] 초등돌봄서비스의 지원체계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시행시기	2004	2017	2005	2010	2004
근거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육부 고시)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추진기관			전북도		도교육청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만 6~12세 미만	초4~ 중3학년	초등학교 이하	초 1~6학년
지원기준(소득)	취약계층 우선	저학년·맞벌이 가정 우선	취약계층 우선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중심(없음)	저학년·맞벌이 가정 우선
지원형태	무상	이용료 일부 부담(10만원/월 이내)	무상	무상(프로그램비 일부 부담 가능)	무상(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운영시간	학기 14 ~ 20시	14 ~ 20시	방과 후 ~ 21시	주5일 상시개방(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방과후~17시(일부 저녁돌봄 운영)
	방학 12 ~ 17시	9 ~ 18시	여건에 따라 자율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내용	보호, 교육, 문화·정서지원·급·간식 제공 등	보호, 교육, 놀이·체험, 학습(특별활동) 일부 급·간식 제공 등	체험활동, 보충학습 지원, 급식, 상담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자녀돌봄 품앗이, 놀이활동, 안전관리 등	보호, 교육, 놀이·체험, 방과후학교 연계 및 일부 급·간식지원 등
운영규모	287개소, 7,527명	49개소, 837명	24개소, 920명	22개소, 4,511명	738개실, 15,000명

자료 : 흥현균공정승(2022) 아동돌봄서비스 현황과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표 4-31] 연령에 따른 아동돌봄서비스 사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아이드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유치원 돌봄교실	아침돌봄, 온종일 돌봄, 저녁돌봄,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 교실																			
공동육아 나눔터	공간, 자녀돌봄, 정보·제공 나눔																			
초등돌봄 교실	방과 후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	정기 및 일시돌봄																			
늘봄학교	늘봄(방과후/돌봄)																			
지역아동 센터	돌봄서비스																			특별한 경우 제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 후 돌봄																			

- 지원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호와 교육, 문화 및 정서지원과 함께 급식지원이 주된 돌봄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체험활동과 보충학습 그리고 상담과 급식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돌봄 품앗이와 놀이활동 그리고 안전관리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 돌봄교실은 보호와 교육, 놀이체험, 급식과 간식을 주된 돌봄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지역아동센터 28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6개소 등이 설치운영 중에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7,399명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381명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는 2020년 7.8천명에서 2023년 8.4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381명에서 2023년 837명으로 증가

[표 4-3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구분	소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23년	345	8,364	287	7,527	49	837
'22년	338	8,230	287	7,477	44	753
'21년	325	7,946	288	7,450	34	496
'20년	314	7,780	286	7,399	26	381

[표 4-3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 및 이용자 현황

서비스 유형	내용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 월-금요일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원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운영 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중 : 14:00~20:00 (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12:00~17:00 (필수 운영 시간) ※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div>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프로그램 : 빈곤·방임 아동 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 교육 프로그램 : 숙제독서 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예체능교육 · 놀이와 오락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 가정방문, 상담·정서적 지지, 부모·가족 상담, 후원자 등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아동 이용기준													
소계	돌봄취약아동(67.2%)								일반아동(32.8%)				
	기초생활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돌봄특례	(구)시군승인아동	(구)소득 70%이하	일반아동	다자녀가족	맞벌이가족	기타
7,527	1,077	781	1,337	168	124	861	523	4	50	1,247	256	630	369

- 지역아동센터는 학기 중에 14시부터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12시부터 17시까지를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는 크게 보호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보호프로그램으로는 빈곤 및 방임된 아동에 대한 보호와 일상생활 지도 그리고 급식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은 숙제나 독서지도 그리고 기초학습부진아동에 대한 교육과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그리고 놀이와 오락 등의 여가프로그램은 견학이나 캠프, 공동체 놀이활동과 특기 적성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는 가정방문과 상담 및 정서적지지 그리고 부모와 가족 상담, 사례관리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는 약 7,527명으로 돌봄취약아동이 4,925명으로 전체 돌봄아동의 약 67.2%가 이용하고 있고 일반아동은 2,502명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32.8%를 차지하고 있음

[표 4-34]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시도	2021년						2022년					
	센터수	신고 정원	이용아동 수			센터당 평균	센터수	신고 정원	이용아동 수			센터당 평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4,057	115,645	106,746	54,722	52,024	26.3	4,005	113,660	105,210	53,844	51,366	26.3
서울	414	12,276	11,276	5,865	5,411	27.2	413	12,121	11,157	5,836	5,321	27.0
부산	209	5,525	5,080	2,663	2,417	24.3	185	4,935	4,601	2,424	2,177	24.9
대구	186	5,210	4,881	2,379	2,502	26.2	194	5,410	5,089	2,486	2,603	26.2
인천	177	4,768	4,386	2,256	2,130	24.8	176	4,699	4,388	2,225	2,163	24.9
광주	289	7,799	7,188	3,755	3,433	24.9	295	7,746	7,167	3,655	3,512	24.3
대전	135	3,854	3,482	1,830	1,652	25.8	136	3,883	3,577	1,866	1,711	26.3
울산	54	1,307	1,222	622	600	22.6	54	1,318	1,215	621	594	22.5
세종	13	357	321	181	140	24.7	13	357	328	170	158	25.2
경기	767	23,670	21,606	11,207	10,399	28.2	746	22,784	20,824	10,743	10,081	27.9
강원	169	4,775	4,493	2,369	2,124	26.6	167	4,791	4,421	2,304	2,117	26.5
충북	179	5,099	4,711	2,358	2,353	26.3	175	4,988	4,625	2,328	2,297	26.4
충남	232	6,738	6,252	3,162	3,090	26.9	229	6,735	6,219	3,204	3,015	27.2
전북	286	7,826	7,341	3,692	3,649	25.7	281	7,723	7,247	3,662	3,585	25.8
전남	360	10,058	9,398	4,663	4,735	26.1	358	9,914	9,302	4,669	4,633	26.0
경북	265	7,422	6,756	3,432	3,324	25.5	261	7,255	6,691	3,391	3,300	25.6
경남	258	7,179	6,736	3,451	3,285	26.1	258	7,213	6,726	3,442	3,284	26.1
제주	64	1,782	1,617	837	780	25.3	64	1,788	1,633	818	815	25.5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2023) 지역아동센터 현황 재구성

-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말 기준 281개소로 신고정원 7,723명, 이용자 7,247명이고 센터당 이용아동은 25.8명 정도로 전국 평균인 26.3명과 유사한 수준임

[표 4-3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현황

시군명	센터 수(개소)								아동수(명)		총사자수(명)
	총계	10인 미만	10~19인		20~29인		30인 이상		정원	현원	
			동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합 계	287	1	48	29	81	43	57	28	8,111	7,527	655
전주시	69	0	22	0	29	0	18	0	1,870	1,750	156
군산시	46	0	1	2	14	3	22	4	1,405	1,317	117
익산시	47	0	8	7	20	4	8	0	1,450	1,184	101
정읍시	30	0	5	5	13	3	4	0	779	746	62
남원시	23	1	11	2	4	3	1	1	537	501	47
김제시	11	0	1	3	1	2	4	0	321	321	26
완주군	13	0	0	3	0	3	0	7	383	389	33
진안군	12	0	0	0	0	6	0	6	365	341	30
무주군	6	0	0	1	0	4	0	1	147	145	13
장수군	7	0	0	0	0	6	0	1	206	197	15
임실군	6	0	0	4	0	1	0	1	140	140	13
순창군	4	0	0	1	0	2	0	1	102	86	9
고창군	7	0	0	1	0	5	0	1	200	204	16
부안군	6	0	0	0	0	1	0	5	206	206	17

[표 4-36] 전북특별자치도 드림스타트센터 사업내용

서비스 유형	내용	
기본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면담(격월 1회 ~ 월 1회)	
필수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아동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폭력예방교육,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 및 산후검진, 예비부모 교육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맞춤형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저소득층 기저귀 교체분유 지원, 스포츠강사 이용권 등) · 인지언어(언어발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 정서행동(WEE클래스 상담지원, 통합문화이용권 등) · 가족지원(고위험 임신비 의료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등)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드림스타트센터 추진실적

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사업량*	3,846	610	542	277	318	170	281	327	193	112	150	221	210	233	202
사례수** (중결아동포함)	3,642	601	440	326	319	184	201	329	173	78	129	169	153	256	284
취약계층 아동수***	12,767	4,607	1,857	2,296	769	627	628	727	145	106	116	161	143	350	235
취약아동 이용률	28.53	13.05	23.69	14.20	41.48	29.35	32.01	45.25	119.31	73.58	111.21	104.97	106.99	73.14	120.85
사례관리자 수	63	8	9	5	5	3	4	5	4	2	3	4	3	4	4

*** 취약계층아동수 : 0세 이상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아동

- 드림스타트센터의 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서비스를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면담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필수서비스로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영양교육과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자녀발달과 양육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맞춤형 서비스로는 취약아동의 대상별로 신체건강이나 인지언어 그리고 정서행동과 가족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 드림스타트센터의 지원 사업량은 2023년 말 기준 3,846건이었고 중결아동을 포함한 아동사례 수는 3,642명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드림스타트센터의 돌봄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아동 비율은 전체 취약아동 약 1.3만명 중 약 28.5% 정도 수준임

[표 4-37]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내용 및 이용자 현황

서비스 유형	내용
사업목적	• 일시간급돌봄 등의 수요에 따른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부담 경감
사업내용	• 보호, 교육, 놀이·체험, 학습(특별활동) 일부 급·간식 제공 등 · 표준 운영시간: (학기중) 14:00~20:00, (방학중) 09:00~18:00 · 추가 연장 운영시간: (아침돌봄) 07:00~09:00, (저녁돌봄) 20:00~22:00
지원대상	• 6~12세 아동(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맞춤형서비스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현황

구분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기관수	49	18	3	7	2	1	2	8	2	1	1	4
정원	1032	360	65	135	40	18	40	187	48	25	30	84
현원	837	284	62	77	35	16	40	169	42	21	30	61
종사자	124	41	6	21	5	3	4	22	4	3	3	12

- 다함께돌봄센터는 일시 및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육아부담을 목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와 놀이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다함께돌봄센터는 2023년 말 기준 총 49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총 이용정원 1,032명 중에서 837명이 이용하고 있음

[표 4-38]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구분	센터수	정원 기준		현원 기준		이용률 (정원대비)	이용률 (전체초등학생)		
		이용아동수	센터당 평균이용 아동 수	이용 아동수	센터당 평균이용 아동수		전체 초등학생수	정원 기준	현원 기준
전체	870	21,661	24.9	20,547	23.6	94.9	195,910	11.06	10.49
서울	232	6004	25.9	6,432	27.7	107.1	28,445	21.11	22.61
부산	51	1074	21.1	978	19.2	91.1	10,639	10.09	9.19
대구	6	139	23.2	112	18.7	80.6	9,097	1.53	1.23
인천	25	578	23.1	496	19.8	85.8	10,531	5.49	4.71
광주	21	485	23.1	386	18.4	79.5	6,044	8.02	6.39
대전	22	606	27.5	321	14.5	53.0	6,071	9.98	5.29
울산	26	525	20.2	457	17.6	87.0	4,532	11.58	10.08
세종	6	140	23.3	154	25.7	110	2,398	5.84	6.42
경기	225	6,153	27.3	5,669	25.2	92.1	49,675	0.01	11.41
강원	33	895	27.1	768	23.3	85.8	6,820	13.12	11.26
충북	31	639	20.6	612	19.7	95.8	6,857	9.32	8.93
충남	41	1,019	24.9	946	23.1	92.8	9,678	10.53	9.77
전북	43	911	21.2	791	18.4	86.8	8,398	10.85	9.42
전남	26	664	25.5	739	28.4	111.3	8,725	7.61	8.47
경북	52	1,203	23.1	1,128	21.7	93.8	10,832	11.11	10.41
경남	25	526	21	476	19.0	90.5	14,140	3.72	3.37
제주	5	100	20	82	16.4	82.0	3,028	3.30	2.71

[표 4-39]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현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자원일수	비고	
총 계		16,787명 (중복제외)	23,662,030천원			
저소득층 아동	연중	조식(1식)	247명	810,152천원(기금 24%, 도비 1%, 시군비 75%)	365일	
		조식식(2식)	113명	744,448천원(기금 24%, 도비 1%, 시군비 75%)	365일	
	방학중	중식	8,743명	7,082,065천원(기금 24%, 도비 1%, 시군비 75%)	90일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7,463명)	6,380,865천원(교육청특별회계 100%)	95일	방학중 중식과 중복지급
지역아동 센터 이용아동	방학중	중식	7,684명	8,644,500천원(도비 25%, 시군비 75%)	250일	상반기분(125일) 예산 편성
	학기중	석식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방학 중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급식 제공
-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1식 9천원을 지원단가로 2023년 말 기준 약 1.7만명으로 아동에게 급식지원
-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크게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약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① 수급자가구,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아동, ② 학교장, 통리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 중 아동급식위원회 선정 아동, ③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은 총 1.7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중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연중 360명, 방학 중 중식 8.7천명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8.4천명 등에게 급식지원

[표 4-40]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지역별 지원현황

구 분	시군명	지원인원	지원내용
합 계	14개 시군	16,787	
저소득층 아동	급식카드	전주, 정읍, 남원, 김제	5,566 가맹업체에서 급식카드사용
	부식배달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3,421 • 식자재, 완제품 등 가정에 배달 · (부식업체) 위탁계약 체결한 부식업체에서 배달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마트 등에서 부식 구입 하여 직접 배달 · (자활업체·노인시설)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에서 부식 구입 후 배달
	도시락배달	진안	116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4개 시군	7,684	단체급식, 부식도시락 배달

[표 4-41]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현황

서비스 유형	내용	
사업내용	· 맞벌이 가정 및 돌봄부재로 인한 긴급돌봄 필요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우선지원대상은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가정, 부모 중 한명이 장애인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혹은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모의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 등)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제 돌봄서비스 제공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분	전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계	4,493	1,532	839	642	275	355	176	230	43	78	31	56
시간제 일반형	4,050	1,456	728	562	240	299	159	198	38	73	26	53
영아 종일제	80	30	6	21	2	5	1	2	3	2	3	0
시간제 종합형	86	13	50	4	6	1	1	0	1	2	2	2
질병감염 아동지원	277	33	55	55	27	50	15	30	1	1	0	1
전체 아동	150,635	64,213	24,290	21,955	7,423	5,595	5,259	8,895	1,333	1,317	1,271	1,502
이용아동비율	2.98	2.39	3.45	2.92	3.70	6.34	3.35	2.59	3.23	5.92	2.44	3.73

-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와 만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수요가 있는 개별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돌봄서비스로서 2023년 현재 전북은 총 4,49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서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해당됨

[표 4-4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6,978원 (60%)	4,654원 (40%)	3,489원 (30%)	8,141원 (7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100%)

5. 청년 돌봄정책 현황 및 주요사업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정책은 크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으로 구성
- 청년돌봄정책 중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및 정서적 우울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 지원 등의 사업 추진
-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도 병약한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지원과 식사 및 영영관리지원, 병원동행 지원, 간병지원 그리고 농촌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
-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사업은 심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지원사업과 함께 가족돌봄 청년 전담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자기돌봄비 지원 등의 사업 추진

[표 4-43] 청년대상 돌봄서비스 현황

	청년마음건강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전담 시범사업	고립은둔청년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소년	·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소년 * 자기돌봄비는 중위소득 100%이내 청년 대상 지원	·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전복 거주 청년	· 혼인하지 않는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포함) 중인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19세~39세)
지원 내용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맞춤형 심리지원 · 식사영양관리지원 · 병원동행지원 · 간병교육 · 농촌치유프로그램	· 돌봄비용지원: 연 최대 200만원 지급 ·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필요 서비스 연계 · 공동생활 프로그램 지원 · 가족 지원(상담, 자조모임 등)	· 초기상담을 통해 고립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공동생활 프로그램 지원 · 가족 지원(상담, 자조모임 등)	· 임대조건 시중시세 40% 수준 지원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지원
이용 인원	이용자 : 347명					

[표 4-44] 청년마음건강서비스 현황

항 목	내 용			
사업목적	·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19세 ~ 34세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우선순위 대상자 1.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이동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54,000원	6,000원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63,000원	7,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이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재평정 3회)				

- 청년 돌봄사업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년마음건강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9세와 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 돌봄사업의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의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이동,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뢰된 청년 등임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사전사후검사, 심리지원 및 대인관계향상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총 62개소에서 347명의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

[표 4-4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지원인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이용자 347명, 제공인력 91명, 제공기관 62개소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 다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으로는 초기상담을 통한 고립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과 공동생활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상담과 자조모임 등의 가족지원 등 제공
-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전북사회서비스원이 2년간 수탁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자기회복, 사회적 관계의 개선, 상담 및 일경험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 이외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정책 중 주거지원사업으로는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지원사업과 청년 공공임대임대보증금 지원 등의 사업 추진 중
-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 청년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지원
- 이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청년대상의 사업으로서 정신건강 토탈케어, 청년비전형성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그리고 초등돌봄서비스와 청년농촌치유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4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구분	소득기준	연령기준	시행시군구	결재금액	이용자수 (결제기준)	제공기관 (등록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24세 이하	전시군(전국사업)	54,576,000	67	1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140%이하)	전연령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521,039,565	1,732	38
청소년비전형성 지원서비스 '꿈을 jobja'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13세-만24세	전주, 군산, 익산	53,364,500	71	6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활용중재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만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남원	46,595,000	46	2
성인심리 지원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35세 이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임실, 부안	619,035,000	807	47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청년사업단)	소득기준 없음	만18-39세	전시군(도개발)	120,942,000	133	1
초등돌봄서비스(청년사업단)	소득기준 없음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	전주, 익산, 완주	114,676,500	106	1
전북청년농촌치유 프로그램 업	소득기준 없음	만18세-만39세	전시군(도개발)	720,000	3	8

[표 4-4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대비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계	1,754,757	642,727	259,980	270,036	103,620	76,781	81,430	97,827	24,465	23,251	20,983	25,956	26,764	51,750	49,187
청년인구 (19-39세)	380,612	7,130	55,330	13,843	12,641	3,159	7,137	3,847	20,468	60,700	3,537	2,729	16,891	17,988	3,187
청년신청자 (19-39세)	597	234	122	55	34	40	39	42	-	4	15	4	5	-	3
비율	0.16	3.28	0.22	0.40	0.27	1.27	0.55	1.09	-	0.01	0.42	0.15	0.00	-	0.09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597명으로 전체 청년의 약 0.16% 정도가 이용 중에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의 비율은 전주시가 청년 대비 청년대상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원시 1.27%, 완주군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5장

전북형 돌봄체계 조성 및 운영방안

1. 추진 방향
2. 전북형 돌봄정책 추진(안)
3. 전북형 돌봄정책 추진체계(안)
4. 전북형 돌봄정책 예산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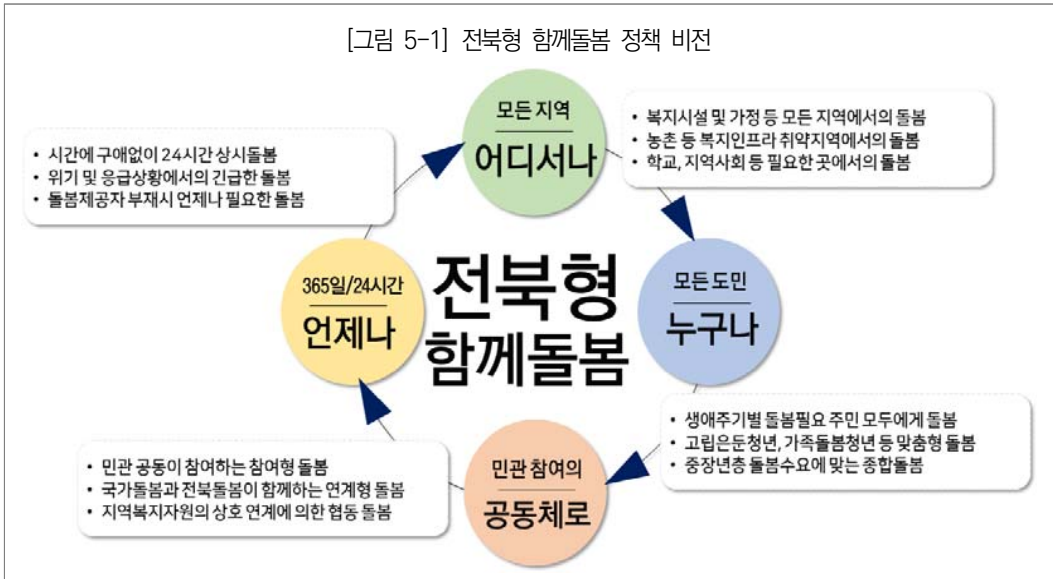


제5장 전복형 돌봄체계 조성 및 운영방안

1. 추진 방향

- 전복형 함께돌봄의 추진방향은 24시간 상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돌봄시설만이 아닌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의 모든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며 국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노인이나 장애인만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설정
- 그리고 민간의 돌봄제공기관만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 그리고 다양한 지역자원이 상호연계하는 민관연계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정책방향으로 설정
- 먼저 전복형 돌봄체계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돌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즉, 전복형 함께돌봄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지원하는 돌봄환경 조성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 설정
- 언제나 돌봄체계는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 돌봄수요가 있는 도민이 언제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시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주돌봄자의 부재 등에 따른 위기상황이나 응급상황에서도 긴급한 돌봄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 다음으로 모든 지역에서 어디서나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정책방향으로 설정
- 어디서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돌봄수요 노인을 선별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 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 즉, 돌봄필요 주민 중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보호나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시설 내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으로 설정
-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의 시설 내 돌봄만 아닌 학교나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돌봄제도 구축

[그림 5-1] 전북형 함께돌봄 정책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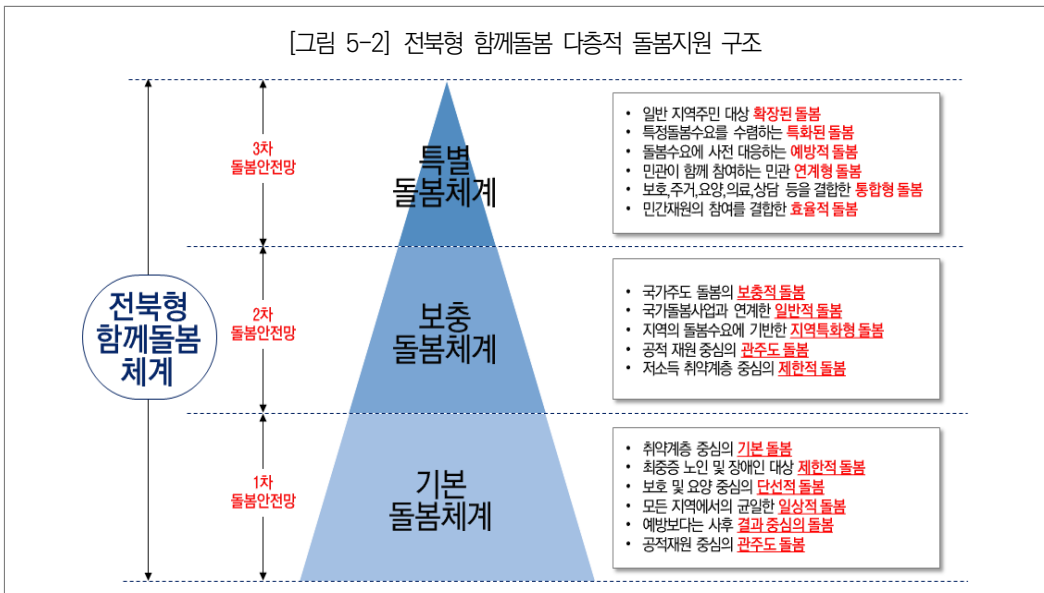


- 또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자 선별과정에서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도민의 돌봄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
-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돌봄수요와 돌봄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고립은둔청년이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청년을 위한 통합돌봄 제공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제시
-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독사 증가 등에 대한 대응으로 고립과 소외의 위기에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상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정책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추진
- 돌봄은 단순한 신체적 보호와 지원만이 아닌 의료와 주거, 문화여가와 심리상담 및 재활 등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전북형 돌봄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민간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동체 돌봄을 중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 민관의 다양한 돌봄수행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참여형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통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욕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돌봄욕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추진

2. 전복형 돌봄정책 추진(안)

가. 전복형 함께돌봄 추진방안

- 전복형 함께돌봄은 국가의 다양한 돌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단위와 생활단위에서 촘촘한 돌봄안 전망 구축 추진
- 세부적으로는 국가돌봄과 기존 지역돌봄과 연계하여 3단계로 다층의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국가의 돌봄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정책으로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으로 국가돌봄과 연계한 돌봄의 확장 지원 추진
- 두 번째는 새로운 돌봄수요 즉, 新돌봄수요 대응 돌봄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돌봄 사각지대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돌봄안전망 구축 추진
- 즉, 돌봄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돌봄수요(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소외 중장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정책 지원
- 최근 사회적 고립의 심화에 따른 고립은둔 청년 및 소외 중장년 가구 등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추진



- 가령, 고립은둔청년 및 중장년, 재가노인 등 돌봄대상자의 수요에 기반한 상담, 재활, 의료 등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관련 돌봄안전망 구축 추진
- 마지막으로 전북형 함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축, 즉, 돌봄필요도에 따른 돌봄수요층 대상 통합돌봄과 중위소득 85% 이하의 모든 도민에게는 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 돌봄 추진
- 돌봄필요도 조사에 기반하여 돌봄필요정도와 돌봄욕구, 돌봄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되 중위소득 85%이하(4인 가구 기준 487만원) 돌봄수요가 있는 중산층 등의 도민에게는 무상 돌봄서비스 제공

[표 5-1] 전북형 함께돌봄 정책 구조

구분	돌봄대상	1차 안전망 (기본돌봄)	2차 안전망 (보충돌봄)	3차 안전망 (특별돌봄)
영유아 아동	· 출산전후 영유아 · 방과 후 돌봄 수요 아동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 · 초등돌봄/방과후돌봄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가시간병방문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농번기돌봄지원	· 산모신생아건강한 아동복지 · 산후건강한 아동복지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유치원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 과일지원	
청년	· 고립은둔 청년 · 가족돌봄 청년	· 일상돌봄		돌봄필요에 따른 8대+& 지원
장애인	· 퇴소준비 시설장애인 · 재가 장애인 · 일상생활장애인(ADL, IADL) · 장애아동 · 장애가족	· 장애인활동지원 · 가시간병방문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추가) · 긴급돌봄 · 틈새돌봄 · 전북형 영유아발달증진	· 의료돌봄 · 가사돌봄 · 이동돌봄 · 시설돌봄 · 주거돌봄 · 식사돌봄 · 동행돌봄 · 인건지원 · 긴급지원(&)
노인	· 장기요양노인(정등급외자) · 장기요양 미수급노인 · 장기요양 재가노인 · 치매노인 · 독거노인 · 돌봄필요 노인(별도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맞춤형돌봄 · 가시간병방문지원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 긴급돌봄 · 틈새돌봄	
장년	· 병원입원 환자 · 자녀돌봄 가족(병원동행) · 빈곤가정 주민	· 일상돌봄 · 가시간병방문지원		
일반 도민	· 돌봄욕구가 있는 전체 도민 * 돌봄필요도 조사 후 적격자	· 가시간병방문지원		
재원		국비+도비+시군비	도비+시군비	도비+시군비+자부담

[표 5-2]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함께돌봄(안) 지원대상 구분

구분	영유아: 아동(생후~만12세)	청소년(13세~19세)	장년(20~39세)	중장년(40~64세)	노인(만 65세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생후3개월~만13세 이하 / (4,493명) [돌봄 등하원, 준비물 챙기기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복지(도)	확대	출산일 이후 12개월 [산모 건강관리 및 가정방문돌봄]			
출산여성 응가도우미(도)	확대	출산전 30일 출산후 180일			
유치원돌봄교실 (도)	확대	만 6세 미만 [온종일, 저녁, 방과 후 돌봄연상 돌봄]			
찾아가는 돌봄교실	확대	특초, 만6세 미만 아동 / 놀이차량 방문 놀이			
초등돌봄 간식지원	신설	초등~2학년 / 13,257명 과일간식 제공			
공공육아나눔터	고도화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모두 / 4,511명 자녀돌봄 공간제공,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지원, 놀이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고도화	만18세 미만 아동(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지원의 50% 이내) / (7,527명) 방과후 신체, 인지,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제공			
농번기 아동돌봄지원	고도화	2세~9세 이하 [아이돌봄은 설치운영]			
다함께돌봄	고도화	만6~12세 / (837명) 일시돌봄, 방과후 하 원 지원 등			

구분	영유아, 아동(생후~만12세)	청소년(13세~19세)	청년(20~39세)	중장년(40~64세)	노인(만 65세 이상)
초등돌봄/방과후 돌봄	고도화 7세~12세 / (15,000명) 학교돌봄, 학습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고도화 만110세~만17세 / (920명) 방과후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				
청년미음간지원	확대 만19~34세 이하 청년/ 347명 상담, 상담-정서 지원				
임상돌봄서비스	확대 돌봄필요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 전주, 군산, 남원, 김제 등 4개 지역				
간담돌봄	확대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로 간담돌봄이 필요한 자 / 가정방문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도화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 (57,628명) 신체,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노인맞춤돌봄	고도화 65세 이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 (38,134명)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만18세~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5,163명)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가사간병지원	확대 신년신년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미만(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1,007명) 양육부조, 신체수발지원, 간담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특가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상시보호 필요 장애인 / 27,953명				
전북형 특별돌봄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지역주민 (돌봄필요도 조사 후 지원)				

나. 전북형 돌봄체계의 운영원칙 및 재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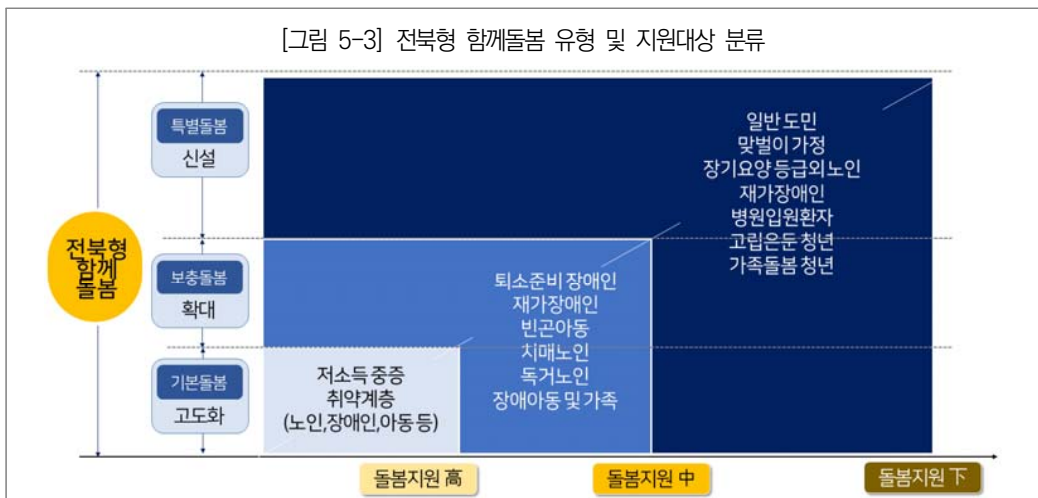
- 전북형 돌봄체계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돌봄필요도 조사에 기반한 돌봄욕구가 있는 도민을 우선발굴하고 돌봄서비스는 1차부터 3차 돌봄안전망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전북형 돌봄체계의 돌봄안전망은 국가 돌봄제도인 1차 안전망을 우선지원하고 다음으로 국가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충적 돌봄을 2차 돌봄안전망으로 구축
- 전북형 돌봄은 1차 국가 돌봄체계와 2차 지역 돌봄체계에서 누락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돌봄제도 설계
- 즉, 전북형 돌봄은 돌봄욕구가 있는 도민에 대해서는 우선 1차와 2차 돌봄정책을 우선지원하고 해당 지원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별도의 3차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여 지원체계 구축
- 전북형 돌봄의 운영재원은 국비지원에 더하여 순수 도비와 시군비 그리고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운영
- 국가돌봄과 지역돌봄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재원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되 전북도가 신규로 추진하는 특별돌봄은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추진하고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재원으로 구성하여 사업 추진
- 종합하자면 전북형 돌봄체계는 국가주도의 기본돌봄과 기존 지역의 보충돌봄 그리고 돌봄필요도에 따른 별도의 특별돌봄의 3단계 돌봄체계로 구축

[표 5-3] 전북형 함께돌봄 유형 및 내용

구분	주요유형	세부내용	비고
전북형 돌봄체계	기본돌봄	· 현행 돌봄서비스의 지원기준 유지 (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일상생활수행 능력 진단 기준) * 현재 돌봄제도의 정책지원 기준 유지	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보충돌봄	· 유형별 돌봄서비스의 지원기준을 유지하되 지원대상 확대 * 현재 돌봄서비스의 지원기준은 개별지침에 따라 유지	
	특별돌봄	·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돌봄필요 정도에 따른 선정 · 개별 돌봄서비스의 유형별 서비스 지원단가 설정	소득 및 재산기준 미적용 * 중위소득 85% 이하는 전액 무상돌봄서비스 제공하고 그 이상은 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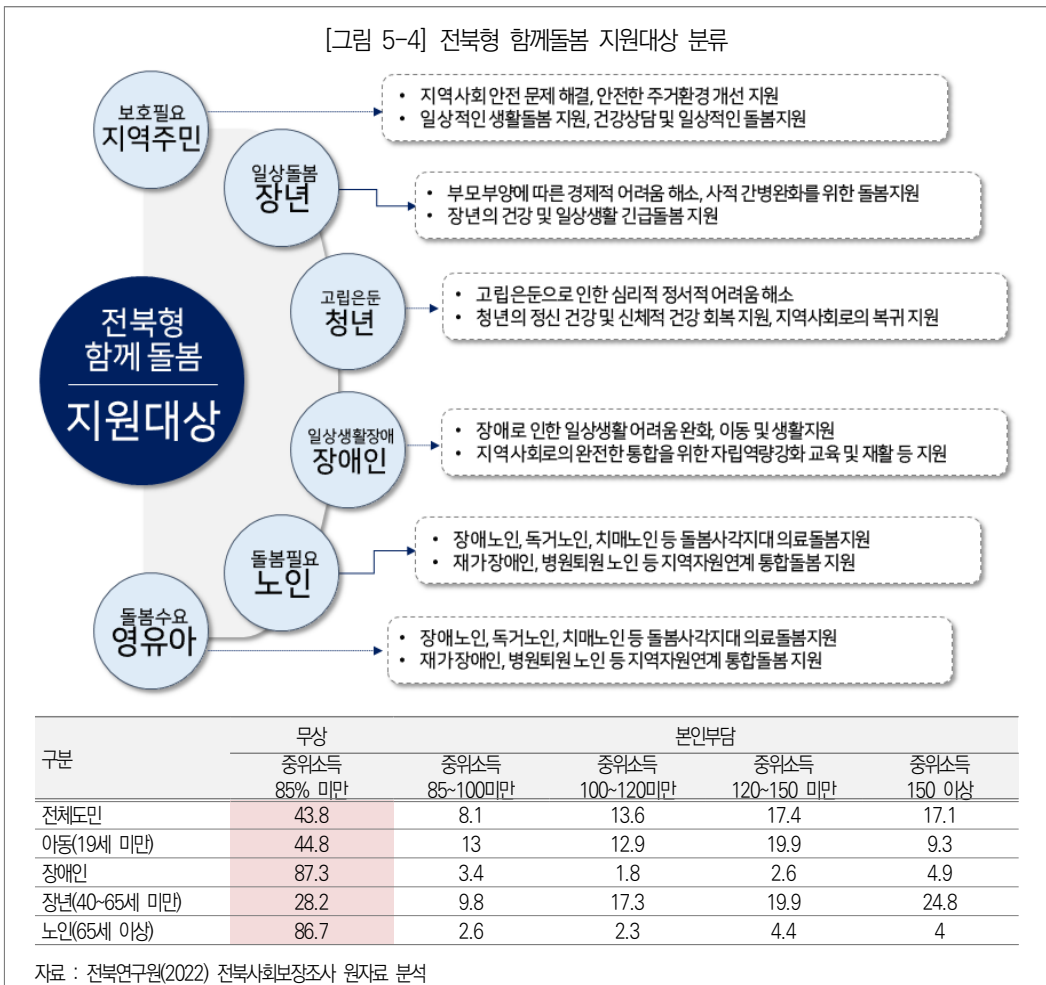
다. 전북형 돌봄체계 대상 및 지원기준

- 전북형 돌봄정책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돌봄수요나 필요도가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 전북형 돌봄 지원대상은 크게 생애주기별 돌봄욕구에 맞춰 영유아, 노인, 장애인, 청년, 장년, 지역주민 등 6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즉,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돌봄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또한, 전북형 돌봄은 국가단위에서 추진하는 기본돌봄을 기준으로 기존 돌봄체계에서 배제되었거나 기존 돌봄으로는 지원되지 않은 돌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돌봄수요를 발굴하여 지원 대상 선별 필요
- 지원대상 기본돌봄을 기준으로 기존 돌봄체계에서 배제되었거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돌봄수요를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
- 가령, 기존 돌봄체계에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병원입원 환자나 퇴원환자 그리고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요양 등급의 노인,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각각의 돌봄욕구를 차별화하여 돌봄욕구와 필요도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전북형 돌봄을 기존 돌봄은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 일부 제공되고 있는 이른바 보충돌봄으로 대상자 확대추진



- 특히 지역단위 돌봄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보충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돌봄수요를 파악하여 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설계
- 마지막으로 국가돌봄체계와 기존 보충돌봄체계에서 보호되지 못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 복지치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특별돌봄체계로 지원
- 특별돌봄 대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와 보충돌봄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돌봄기준과 요건을 판단하여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추진

[그림 5-4] 전북형 함께돌봄 지원대상 분류



구분	무상		본인부담		
	중위소득 85% 미만	중위소득 85~100미만	중위소득 100~120미만	중위소득 120~150 미만	중위소득 150 이상
전체도민	43.8	8.1	13.6	17.4	17.1
아동(19세 미만)	44.8	13	12.9	19.9	9.3
장애인	87.3	3.4	1.8	2.6	4.9
장년(40-65세 미만)	28.2	9.8	17.3	19.9	24.8
노인(65세 이상)	86.7	2.6	2.3	4.4	4

자료 : 전북연구원(2022) 전북사회보장조사 원자료 분석

[표 5-4] 전북형 돌봄 지원대상 및 정책목표

구분	주요 지원대상	정책목표
지역주민	·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일상적인 생활돌봄 지원, 건강상담 및 일상적인 돌봄지원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장년	· 부모부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 사적 간병인화를 위한 돌봄지원 · 장년의 건강 및 일상생활 긴급돌봄 지원	장년의 돌봄부담경감
청년	· 고립·은둔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해소 · 청년의 정신 건강 및 신체적 건강 회복 지원, 지역사회로의 복귀 지원	청년의 심리사회적 안정
장애인	·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완화, 이동 및 생활지원 ·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재활 등 지원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
노인	· 장애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의료돌봄지원 · 재가장애인, 병원퇴원 노인 등 지역자원연계 통합돌봄 지원	노인의 돌봄사각지대 해소
영유아	· 병원입원 등에 따른 일시적 이동 및 보호 지원 · 맞벌이 가족의 영유아 돌봄에 따른 경제사회적 돌봄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돌봄가정 양육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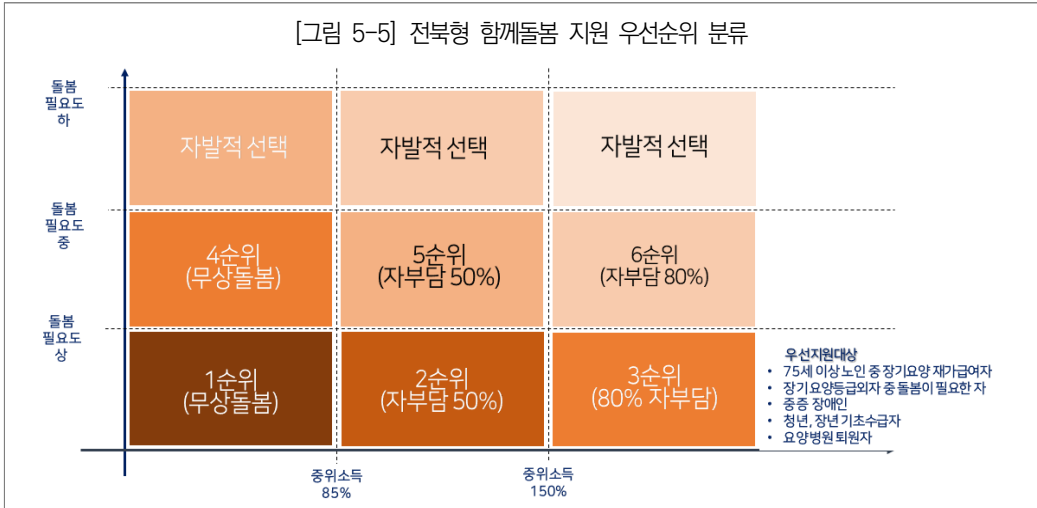
- 전북형 돌봄체계의 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은 지역사회 안전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지원을 위해 건강상담, 일상생활 돌봄을 주된 지원내용으로 구성
- 장년은 부모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적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퇴직과 1인 가구로 인한 고독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및 심리사회적 돌봄서비스로 구성
- 청년은 고립과 은둔에 따른 정서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경제적 돌봄과 함께 사회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지원과 생활지원 그리고 주거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재활과 통합을 지원
- 노인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함께 병원 입원 후 퇴원노인에 대한 급성기 환자의 일시적 돌봄과 간병 등의 돌보서비스로 구성하여 지원
- 마지막으로 영유아는 병원입원에 따른 일시적 이동이나 보호를 위한 긴급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함께 맞벌이 가족의 영유아 돌봄에 따른 경제사회적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긴급 및 양육 돌봄서비스로 구성하여 지원

[표 5-5] 전북형 함께돌봄 지원대상 분류

구분	돌봄대상	돌봄목표	돌봄서비스 수요
영유아아동	· 출산전후 영유아 · 방과후 돌봄 수요 아동 · 빈곤아동	건강한 성장과 발달	· 출산 전후 건강 및 양육지원 · 초중등 학생 방과후 돌봄 · 빈곤아동 학습지원(상담 및 교육지원)
청년	· 고립은둔 청년 · 가족돌봄 청년	신속한 사회적 복귀	· 고립은둔청년 상담 치유 지원 · 고립은둔청년 일상적 돌봄
장애인	· 퇴소준비 시설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 · 재가 장애인 · 일상생활장애인(ADL, IADL) · 장애가족	지역사회로의 자립과 통합	· 퇴소 전 자립역량 교육 및 체험지원 · 최중증 장애인 돌봄 지원 · 재가장애인 방문돌봄 지원 · 일상생활장애인 활동지원 및 일상생활 돌봄 · 장애가족 치유 및 상담 지원
노인	· 장기요양노인 등급외자) · 장기요양 미수급노인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노인 · 차매노인 · 독거노인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 방문의료 및 돌봄지원 · 차매노인 및 가족 치료 및 치유지원 · 독거노인 일상돌봄 및 긴급돌봄지원
장년	· 병원입원 환자 · 자녀돌봄 가족(병원동행) · 빈곤가정 주민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	· 퇴원시 가정 내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 · 돌봄부재 시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 · 일상돌봄
일반가구	·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	· 생활안전 및 일상돌봄 · 일상돌봄

- 전북형 돌봄의 대상별 주요 지원대상과 수요를 보면, 영유아 및 아동은 출산전후 아동이나 방과 후 돌봄아동 그리고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은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치유, 일상적 돌봄제공
- 그리고 장애인은 퇴소준비 시설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 그리고 재가장애인과 일상생활수행 장애인과 장애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로의 자립과 통합을 목표로 퇴소 전 자립역량강화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 재가장애인 방문돌봄 등의 서비스 제공
- 노인은 장기요양노인 등급외자와 장기요양 미수급노인, 그리고 차매노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방문의료와 돌봄지원, 차매노인 및 가족 대상 치료와 치유지원
- 그리고 장년은 병원입원 환자와 자녀돌봄 가족, 빈곤가정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를 목표로 퇴원 시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돌봄부재 시 긴급돌봄 지원
- 일반가구는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를 목표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과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그림 5-5] 전복형 함께돌봄 지원 우선순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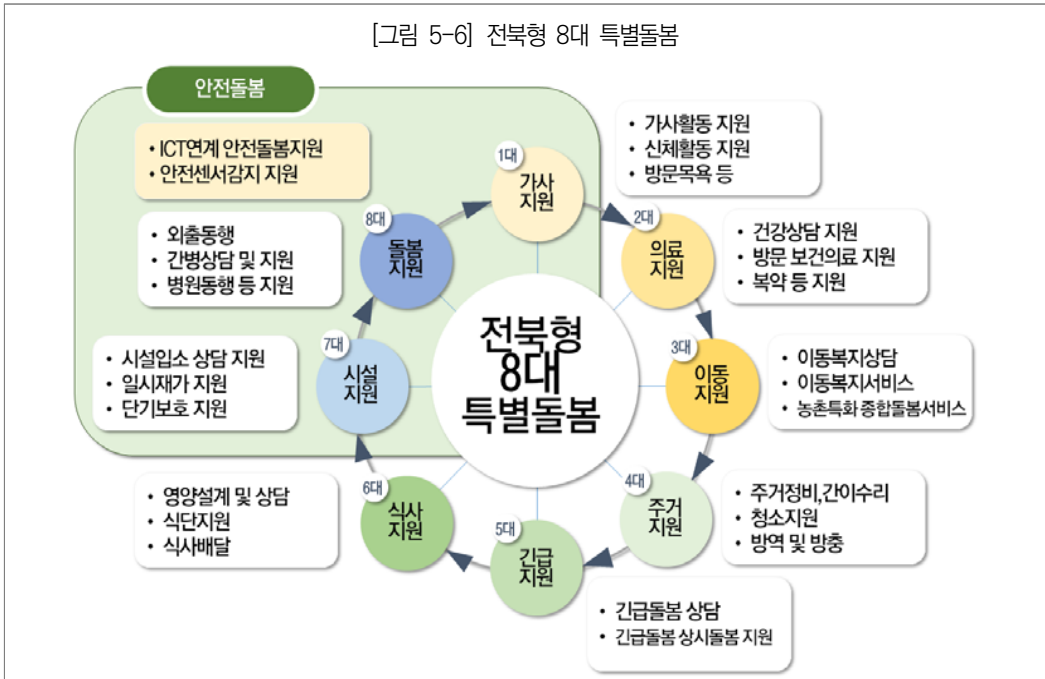
- 전복형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돌봄필요도와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차등지원 추진
- 특별돌봄은 중위소득 85%미만은 전액 무상돌봄으로 추진하고 85%이상 120%이하는 본인부담 50%, 중위소득 120%이상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비용지원
- 2024년 시행초기에는 중위소득 85%이하만 무상돌봄으로 지원하고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90% 이하 무상돌봄 지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비용부담 기준을 설정하되 중위소득 85%이하는 무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85%이상은 자부담 50%, 중위소득 150% 이상은 80% 자부담으로 설정하여 지원
- 돌봄필요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병합하여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차등화하여 선별
- 돌봄필요도가 높고 중위소득 85% 이하를 1순위 돌봄대상으로 선별하고 재정적 지원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돌봄필요도가 높지만 중위소득 85%이상 150% 미만은 2순위 돌봄대상자로 선별하되 재정지원의 자부담 50%를 부과하여 지원
- 다음으로 돌봄필요도가 가장 높고 중위소득 150%이상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3순위 대상으로 선별하되 80% 자부담으로 구성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필요도가 중증도이지만 중위소득 85%미만은 지역주민은 4순위 돌봄대상자로 선별하되 무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다만 돌봄필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주민 중에서도 우선지원대상은 7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증장애인, 청년 및 장년 기초수급자 그리고 요양병원 퇴원자 등으로 구성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전북자치도의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전북도민 중 중위소득 85% 미만 무상돌봄 대상자는 43.8%정도로 추정되고 중위소득 85%이상 100%미만은 81%, 그리고 중위소득 100이상 120%미만은 13.6%, 중위소득 120%이상 150%미만은 17.4%로 추정
- 전북 전체 도민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80%를 부담하는 중위소득 150%이상 도민은 전체 도민의 약 17.1%정도로 추정
- 다음으로 아동 중에서도 중위소득 85%미만 무상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44.8%, 장애인은 87.3%, 장년 28.2% 그리고 노인은 86.7%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
- 또한, 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본인부담금이 80%에 해당하는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전체도민 17.1%, 아동 9.3%, 장애인 4.9%, 그리고 장년 24.8%, 노인 4.0% 등으로 추정

라. 전북형 돌봄체계 내용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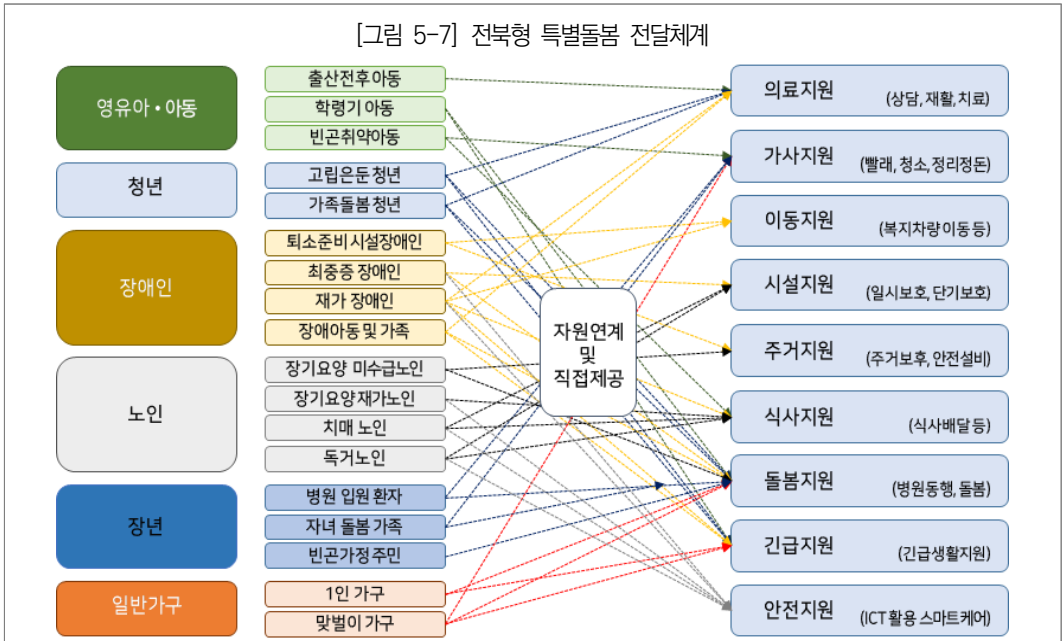
- 전북형 돌봄서비스의 지원분야는 가사지원과 의료지원, 이동지원, 주거지원, 긴급지원, 식사지원, 시설지원, 돌봄지원 등 8대 돌봄서비스로 구성
- 가사지원은 가사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등으로 구성하고, 의료지원은 건강상담지원, 방문보건의료, 복약지도 지원 등으로 구성
- 이동지원은 이동복지상담, 이동복지서비스 제공, 농촌특화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성하고 주거지원은 주거정비, 간이수리, 방역 및 방충 등으로 구성
- 긴급지원은 긴급돌봄상담, 긴급돌봄 상시돌봄지원 등으로 구성하고 식사지원은 영양설계 및 상담, 식단설계 및 식사배달 등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건강관리 지원
- 다음으로 시설지원은 일시적인 시설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설입소 상담, 일시재가 및 단기보호 지원 그리고 돌봄지원으로는 외출지원, 간병상담 및 지원, 병원동행 등의 이동과 민원 편의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원

[그림 5-6] 전북형 8대 특별돌봄



- 마지막으로 시설과 돌봄서비스는 ICT와 연계한 안전돌봄체제로 구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전북형 돌봄서비스는 각 돌봄대상자에 대한 8대 돌봄서비스로 제공되되 제공기관의 지정을 통한 직접제공과 유사한 돌봄서비스로의 연계서비스로 구성하여 지원
- 전북형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별 세부적인 돌봄서비스의 유형을 구체화해보면, 아동돌봄은 의료나 가사, 동행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청년은 의료와 가사, 주거와 식사 돌봄서비스로 구성하여 상담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구성
- 장애인은 의료와 가사 그리고 이동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구성하여 재활치료와 이동지원 주택의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구성
- 노인을 대상으로는 복약지도와 방문형 맞춤형 운동재활 등을 위한 의료돌봄과 일상생활지원, 가사활동지원 등의 가사지원, 일시보호와 단기보호 등의 시설돌봄 등의 서비스로 구성
- 장년돌봄은 심리상담을 중심으로 한 의료돌봄과 청소 등의 가사돌봄 그리고 주거개보수를 위한 주거돌봄, 식사배달 등으로 돌봄서비스 구성

[그림 5-7] 전복형 특별돌봄 전달체계



- 마지막으로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돌봄서비스는 의료와 가사 그리고 주거와 동행 등으로 돌봄서비스 구성 운영

[표 5-6] 전복형 함께돌봄 대상별 돌봄서비스 유형

구분	의료	가사	이동	시설	주거	식사	동행	안전	긴급지원
영유아 아동	상담 재활치료 조기발견 출산지원	일상돌봄 가사지원 방과후돌봄 학습지원					병원동행		긴급돌봄
청년	심리상담 건강상담	일상돌봄 (청소 등)			개보수 안전설비	식사배달			
장애인	상담 재활치료 조기발견	가사지원 청소지원	차량이동		개보수 편의시설	식사배달 설거지 등 지원	병원동행 외출동행 활동지원	단순수리 교체지원 시안전확인 방역방충	
노인	상담 치료재활 복약지원 방문건강상담	일상돌봄 가사지원 청소지원	차량이동	일시보호 단기보호	개보수 안전설비	식사배달 설거지 등 일상지원	재가돌봄 병원동행 간병지원 외출동행	안전설비 장기교체 단순설비 시안전확인 방역방충	
장년	심리상담 건강상담	가사지원 청소지원			개보수 안전설비	식사배달 설거지 등 일상지원	병원동행	안전설비 장기교체 단순설비	
일반가구	정신건강상담	일상돌봄 가사지원			주택개보수		간병지원 병원동행		

마. 전북형 돌봄 지원비용 및 단가 설정

- 전북형 돌봄 중 특별돌봄 대상자에게는 중위소득 기준 85% 이하는 모두 무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85%이상부터는 일정 자부담 후 이용
- 돌봄서비스의 지원단가는 유형별로 신체, 가사, 동행, 일상생활지원은 시간당 17,000원, 방문진료 등 시간당 12만원 등으로 구성하여 설계
- 가령, 돌봄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이용한도를 설정하여 과이용 방지 및 이용대상 확대 추진 (* 주거정비 연 4회, 대청소 연 1회, 방역방충 연 3회 등 한도 설정)

[표 5-7] 전북형 8대 특별돌봄 주요사업 및 지원단가

구분	주요사업	지원단가
의료돌봄	[방문진료] 상담 및 재활, 치료서비스 [방문맞춤운동] 건강교육 및 운동재활 계획 수립 및 지도	방문진료 : 1회 12.0만원 (한방, 10.5만원) 방문맞춤운동 : 1회 5만원
가사돌봄	[가사활동] 취사, 식사준비, 청소 및 세탁 [신체활동] 식사도움, 구강관리, 의복착용 지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혹은 가정 방문 목욕 지원	가사활동 : 시간당 17,000원 신체활동 : 시간당 17,000원 방문목욕 : 1회(한시간) 8.5만원 * 활동지원 시간당 지원단가 16,150원
이동돌봄	[방문이동돌봄] 농촌지역 특화 이동복지서비스 제공	시간당 17,000원 (30분 8,500원)
시설돌봄	[일시보호] 일정기간 일시적인 입소 [안심주택] 긴급한 생활공간이 필요한 한시적 임시주택 지원	일시재가 : 시설 1일 이용료 1시간당 2만원 안심주택 : 1일 5.5만원
주거돌봄	[주거정비] 전등교체, 배관막힘 처리, 열쇠수리, 간이 가구수리 등 [청소지원] 대청소, 대형쓰레기 처리, 집안 정리 수납 [방역방충] 소독, 살충제 도포 등 [낙상예방설비] 주거환경 정비(낙상예방 미끄럼장차, 문턱경사로 등)	주거정비 : 1회 10만원(1년 4회 한도) 대청소지원 : 1회 60만원(1년 1회 한도) 방역방충 : 1회 10만원(1년 3회 한도) 낙상예방 : 연 150만원 한도
식사돌봄	[영양설계]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영양식 설계 및 식이요법 안내 [식사배달] 일반식, 반찬, 죽, 유동식 등 음식조리 및 배달	영양설계 : 무료 식사배달 : 1식 8천원(반찬식 기준) *일반식 9천원
동행돌봄	[외출동행] 근거리외출 동행(산책, 장보기, 관공서 등) [병원동행] 병원진료 이동지원 [간병지원] 병원 퇴원환자 간병지원, 재가노인 간병돌봄 지원	외출동행 : 시간당 17,000원 (30분 8,500원)
긴급돌봄	[신체활동] 식사도움, 구강관리, 의복착용 지원 [일상생활] 청소, 식사, 이동지원 [가사활동] 취사, 청소, 세탁 등 [간병지원] 병원 퇴원환자 간병지원, 재가노인 간병돌봄 지원	신체활동 : 시간당 24,000원 일상생활 : 시간당 24,000원 가사활동 : 시간당 24,000원 간병지원 : 1일 10만원(최대 10일 지원)
안전돌봄	[안부확인] 시기기 활용 건강체크 및 안전여부 확인 [안전감지] 움직임 센서,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 안전확인	시케어 설치유지비 : 약 90만원

-
- 전북형 돌봄 재원은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 1인당 총 120만원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과이용 방지 추진
 - 전북형 돌봄으로 연간 120만원을 한도로 설정할 경우 특별돌봄대상만 3천명 지원시 최대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타시도의 지역돌봄체계의 개인당 지원한도를 보면, 경기도 360도 돌봄은 1인당 15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1인당 15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하여 지원
 - 전북형 돌봄의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되, 소요예산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사업 추진(총 36억원 예산소요 시 전북도 18억원, 시군 18억원 부담)

3. 전북형 돌봄정책 추진체계(안)

가. 전북형 돌봄서비스 추진체계 및 역할

- 전북형 돌봄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 돌봄전담부서의 돌봄필요도조사를 기반으로 돌봄필요도가 높은 도민을 대상으로 3단계 돌봄서비스의 유형 선별
- 1차적으로는 14개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서 돌봄서비스 희망자 대상 돌봄필요도 조사 실시 후 돌봄유형 선별
- 돌봄서비스 신청자 대상 돌봄필요정도에 대한 ① 방문조사 이후 ② 돌봄계획 수립, ③ 돌봄서비스 유형선별(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유무 및 추가돌봄욕구 평가), ④ 돌봄서비스 유형 선별, ⑤ 돌봄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읍면동에서는 돌봄욕구에 대한 방문형 조사를 토대로 직접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이나 서면신청서 등을 통해 돌봄필요도에 대한 조사 진행
- 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은 신청방문과 의뢰방문 그리고 의무방문으로 구분하고 신청방문은 본인 및 가족의 신청에 따른 방문조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의뢰방문,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무방문 등으로 진행
- 신청방문은 돌봄욕구가 있는 돌봄대상자나 가족의 신청이나 온라인신청, 전화상담 및 신청시 방문형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별

[표 5-8] 돌봄서비스 신청 및 조사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방문대상	돌봄필요도 조사(안)
신청방문	· 본인 및 가족 (직접 및 온라인, 전화 등)	· 돌봄욕구가 있는 돌봄대상자 및 가족 * 읍면동 돌봄창구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콜센터 등)	
의뢰방문	· 사회복지시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건강보험공단 등	· 복지기관으로부터 돌봄욕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의뢰한 돌봄서비스의 의뢰자	① 돌봄대상자 특성 ②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서비스(기존 돌봄) ③ 돌봄대상 평가(신체적, 정서적 기능 저하정도 등) ④ 돌봄필요도 평가(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주거 및 생활환경)
의무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7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입여자(1~5등급, 인지등급 등) · 퇴원환자 중 재가복귀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 중증장애인(지체, 뇌병변 등) · 청년 및 장년 중 기초수급자	

- 의뢰방문은 복지기관으로부터 돌봄욕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의뢰한 돌봄서비스 의뢰자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별
- 마지막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돌봄우선대상자인 7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퇴원환자 중 재가복귀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청년 및 장년 중 기초수급자를 의무대상자로 선정하여 방문형 조사 진행
- 다음으로 시군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돌봄서비스의 연계 조정(시군 단위 복지자원 연계), 돌봄서비스 이용 정산 등을 통해 돌봄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원
- 또한, 시군에서는 시군 차원에서의 돌봄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돌봄전담부서 설치, 민간수행기관 지정 및 관리, 시군 돌봄협의체 구성 및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돌봄비용 집행, 돌봄욕구조사 및 돌봄서비스 연계조정, 돌봄대상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의 업무 수행

[표 5-9] 전북형 특별돌봄 추진체계

구분	주요사업	주요사업 절차										
전북 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형 돌봄 종합계획 수립 · 전북형 돌봄 시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 전북돌봄추진단 구성운영 · 전북형 돌봄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 및 선발 지원 · 전북형 돌봄 시범사업 대상지역 교육 및 컨설팅 · 전북형 돌봄 시범사업 운영 평가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형 돌봄 시군 지원계획 수립 · 시군 돌봄전담부서 설치 운영 · 민간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시군 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 돌봄비용 집행 · 돌봄욕구조사 기본계획 설계 · 돌봄서비스의 연계 조정 · 돌봄대상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p>(참고) 돌봄수행기관 협약 절차</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고·안내</th> <th>신청접수</th> <th>심사</th> <th>선정·협약</th> </tr> </thead> <tbody> <tr> <td>시군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고</td> <td>신청접수 (서류확인 등)</td> <td>심사기준마련 심사위구성</td> <td>심사결과 확정 선정기관 협약</td> </tr> </tbody> </table> <p>* 돌봄수행기관은 공개모집 원칙</p>	공고·안내	신청접수	심사	선정·협약	시군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고	신청접수 (서류확인 등)	심사기준마련 심사위구성	심사결과 확정 선정기관 협약		
공고·안내	신청접수	심사	선정·협약									
시군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고	신청접수 (서류확인 등)	심사기준마련 심사위구성	심사결과 확정 선정기관 협약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대상자 욕구조사(돌봄필요도 조사) · 돌봄대상자 통합사례회의 구성 운영 · 돌봄대상자 돌봄서비스 제공 및 평가 	<p>(참고) 돌봄서비스 신청절차</p> <table border="1"> <thead> <tr> <th>현장방문</th> <th>돌봄조사</th> <th>계획수립</th> <th>서비스 제공</th> <th>사후관리</th> </tr> </thead> <tbody> <tr> <td>의무방문 신청방문</td> <td>돌봄필요도 조사</td> <td>개인별 맞춤계획 수립</td> <td>돌봄서비스 연계 및 의뢰</td> <td>결과평가 사후관리</td> </tr> </tbody> </table>	현장방문	돌봄조사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의무방문 신청방문	돌봄필요도 조사	개인별 맞춤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및 의뢰	결과평가 사후관리
현장방문	돌봄조사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의무방문 신청방문	돌봄필요도 조사	개인별 맞춤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및 의뢰	결과평가 사후관리								
사회서비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종사자 교육 · 긴급돌봄서비스 연계 · 돌봄서비스 광역자원 연계(광역자원 거점연계기관) · 복지콜센터 운영 및 돌봄서비스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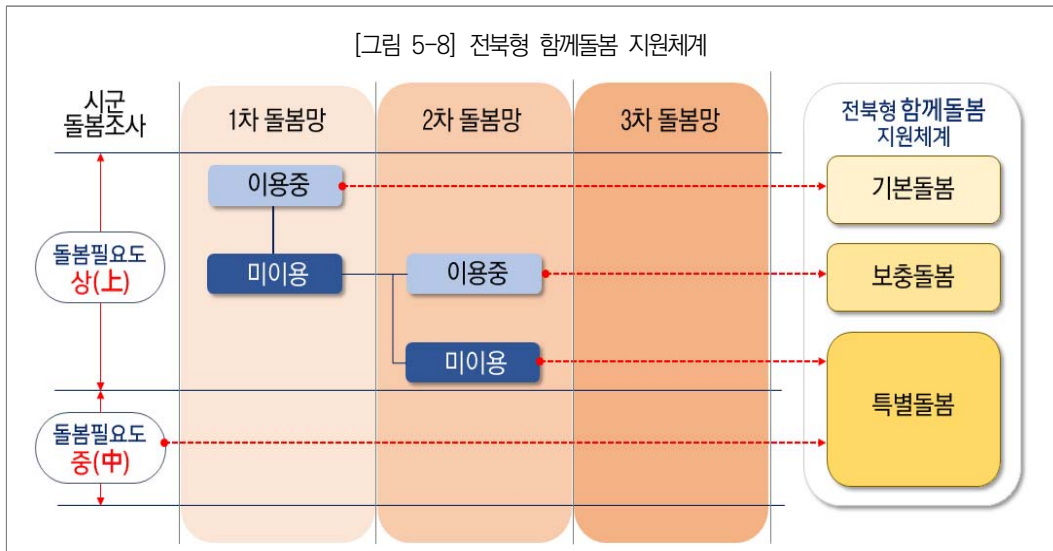
- 한편 시군에서는 돌봄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등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시군에서는 돌봄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문 게시와 신청접수, 그리고 돌봄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를 통해서 심사결과에서 일정한 역량을 가진 기관을 돌봄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협약 진행
- 전북자치도에서는 전북형 돌봄종합계획 수립(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광역 돌봄협의체 구성(돌봄 전담과, 전북사회서비스원, 광역공공센터 등), 특별돌봄 예산 배분 및 평가, 전북형 돌봄 정책 홍보 및 우수사례 전파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단위 돌봄종합계획 수립, 시군 돌봄지원계획에 대한 지원, 시군 돌봄 지원정책 평가, 전북돌봄인력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등 추진
- 또한, 돌봄정책 개발 및 돌봄자원 발굴, 돌봄서비스의 연계(광역돌봄자원) 등을 위한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돌봄정책추진단 구성운영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돌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돌봄대상자 및 돌봄자원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 시군 돌봄정책에 대한 지원,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영 방안 등 구상 필요
- 또한, 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이행과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고도화를 위해 돌봄전달체계 구축 및 농촌지역 돌봄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필요
- 마지막으로 전북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종사자 교육, 돌봄서비스 광역자원 연계 조정 추진
- 아울러 긴급돌봄서비스의 거점 지원기관 및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돌봄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전북 돌봄종합계획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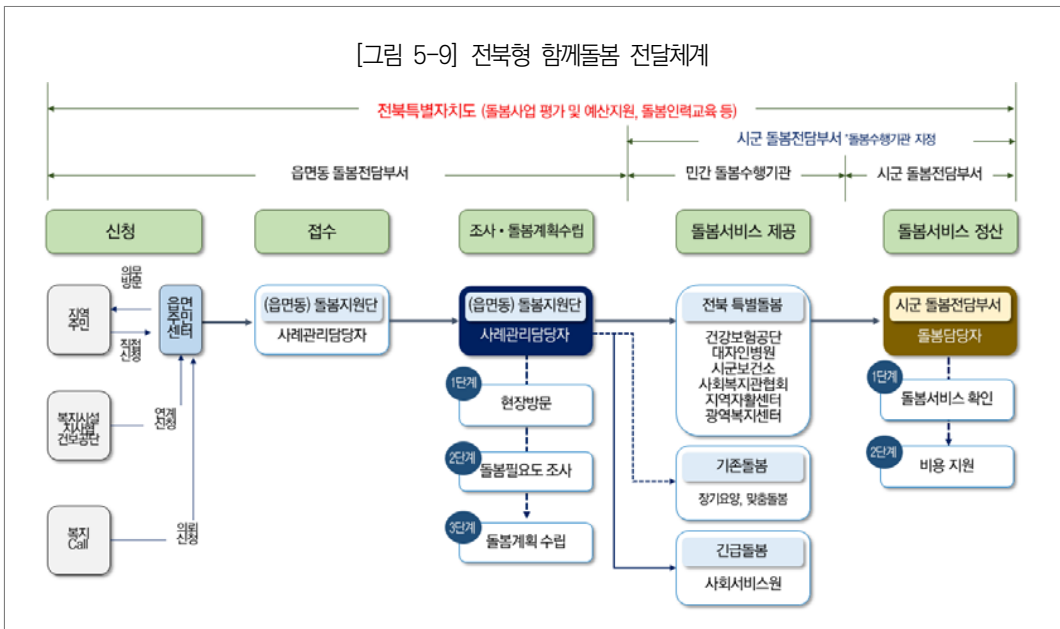
- 돌봄대상자 및 돌봄자원의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시군 돌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돌봄전달체계 구축 및 돌봄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돌봄제공기관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전복형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안)

- 전복형 돌봄서비스는 국가중심의 기본돌봄을 중심으로 1차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으로 1차 국가돌봄제도에서 누락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역이 제공하는 2차 돌봄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
- 전복형 돌봄의 3차 돌봄안전망인 특별돌봄은 1차 국가돌봄제도와 2차 보충돌봄에서도 보호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 돌봄필요도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제공
- 따라서 전복형 돌봄은 1차 돌봄안전망을 기반으로 2차의 보충적 지원 그리고 1차와 2차 돌봄의 사각지대 대상을 중심으로 3차 돌봄안전망의 개입을 통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로 운영
- 돌봄필요도조사에 기초하여 돌봄대상자가 선별되면 선별 대상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제도의 이용유무와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돌봄필요도가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특별돌봄서비스 제공
- 3차 돌봄안전망은 1차와 2차의 돌봄정책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실상의 보충적 돌봄제도로 운영 추진
- 전복형 돌봄체계는 기본돌봄과 보충돌봄 그리고 특별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함께 돌봄체제로 운영하여 보다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추진



- 전북형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신청, 접수, 조사 및 돌봄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의 정산 및 평가 등의 5단계로 추진
- 읍면동 돌봄창구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신청, 접수, 조사 및 돌봄계획 수립을 통한 돌봄대상자의 돌봄서비스 전단계의 모든 업무 수행
- 읍면동 돌봄창구(돌봄전담부서)에서는 돌봄욕구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과 돌봄필요정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조사결과에 기반한 돌봄계획 수립 등 업무 추진
- 다음으로 민간제공기관에서는 읍면동의 돌봄조사에 기반한 돌봄계획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제공기관은 읍면동 돌봄계획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기관 연계 등 업무추진
- 시군구 돌봄전담부서에서는 민간제공기관의 돌봄서비스 제공 확인 및 돌봄비용 정산하는 역할 수행, 즉, 시군구에서는 민간제공기관의 돌봄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 후 돌봄내용 등에 기초하여 민간제공기관에 돌봄비용 지불
-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돌봄서비스 전반 평가 및 예산지원, 돌봄인력 교육 등을 진행, 즉,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회서비스원을 돌봄인력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과 돌봄서비스 진행 전과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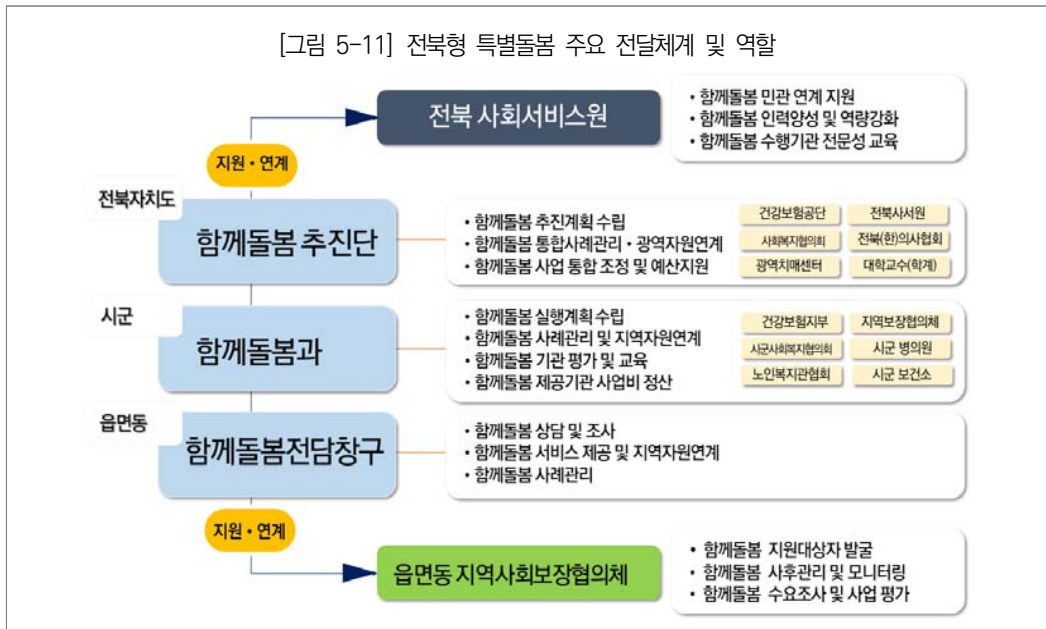


[그림 5-10] 전북형 함께돌봄 수행주체별 사업내용

수행	돌봄대상자 상담 및 선정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정산 및 사후관리	
읍면동	돌봄대상 조사	돌봄서비스 연계				
	① 돌봄대상 상담조사 * 돌봄필요도조사 ② 돌봄대상 선별 ③ 돌봄계획 수립 ④ 사례관리	① 돌봄협의체 운영 ② 돌봄기관 연계				
시군	중요 돌봄대상 조사	돌봄협의체 운영			돌봄비용 정산	돌봄성과 관리
	① 중요대상 돌봄수요조사 ② 중요돌봄대상 선정	① 돌봄협의체 운영 ② 광역돌봄자원 연계			① 돌봄비용 정산 ② 돌봄비용 지불	① 돌봄서비스 평가 ② 돌봄성과 평가 ③ 돌봄기관 평가
민간 제공기관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자원연계		
			① 맞춤형계획수립 ② 돌봄서비스 제공	① 돌봄자원연계 * 기존돌봄		
전북 사서원	긴급돌봄 상담선정		긴급돌봄 제공	기타 돌봄연계		
	① 긴급돌봄상담 ② 긴급돌봄대상 선정		① 긴급돌봄 제공 ② 긴급돌봄 평가	① 돌봄자원연계 * 기존 돌봄		
전북 자치도				돌봄자원연계	돌봄인력교육	돌봄기관 관리
				① 광역돌봄자원연계 *광역공공센터 등	① 돌봄종합계획수립 ② 돌봄인력교육	① 돌봄기관 평가 ② 돌봄기관 성과관리

- 전북자치도는 돌봄대상자의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보험공단, 복지시설 등을 협약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북형 돌봄 및 대상자 발굴과 연계 업무 지원
- 전북형 돌봄체계 운영을 위해 주요 전달체계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시군 돌봄정책 전담부서, 그리고 민간제공기관, 전북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작동하여 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기반 마련 필요
- 읍면동은 돌봄대상자의 상담 및 선정을 주된 업무로 추진하기 위해 돌봄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돌봄서비스의 연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시군에서는 고위험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돌봄관련 주요 기관들 간의 돌봄협의체 구성운영 그리고 돌봄비용 정산 및 돌봄성과 관리 등의 업무 추진
- 민간기관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과 함께 돌봄자원의 연계 등을 통해 해당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역자원 연계 업무도 동시에 수행
- 마지막으로 전북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에 대한 상담과 선정 그리고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과 기타 돌봄자원의 연계 등의 업무 수행

[그림 5-11] 전북형 특별돌봄 주요 전달체계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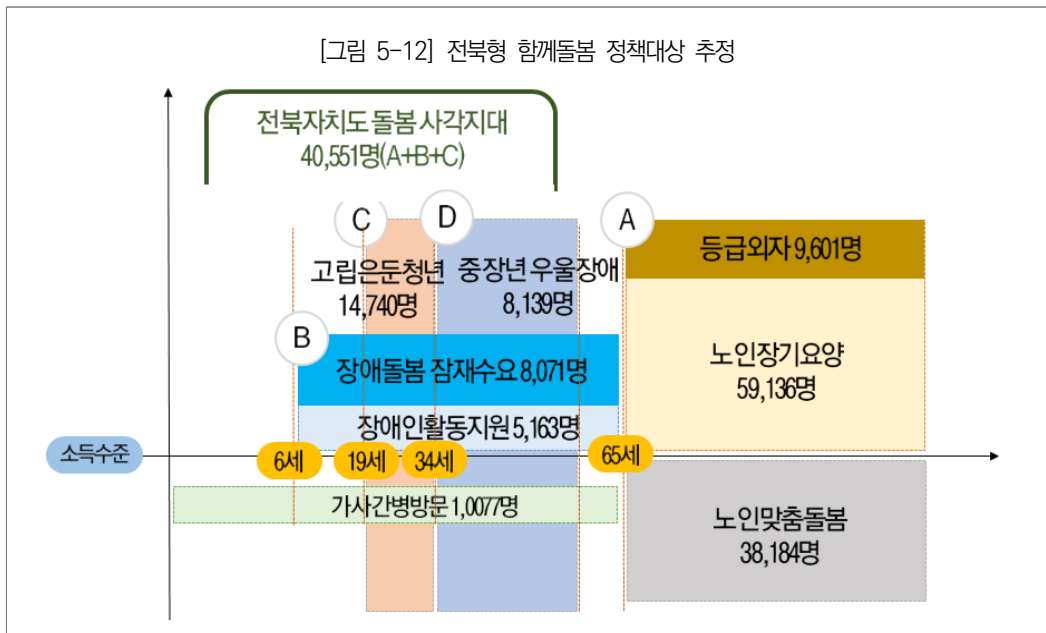
- 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도 및 시군별 돌봄전담부서의 구성 및 운영하고, 이중 공적전담부서는 함께돌봄추진단(전북자치도), 함께돌봄과(시군), 함께돌봄전담창구(읍면동) 구성운영
- 다음으로 민간거점조직은 전북사회서비스원(긴급돌봄, 돌봄인력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돌봄대상 발굴, 돌봄자원 연계 등) 업무 수행
- 시군의 돌봄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서 실행계획 수립,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기관 평가 및 돌봄서비스 제공자 교육 등의 업무수행
- 시군단위의 돌봄협의체는 건강보험 전북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시군 보건의료기관, 노인복지관 협회, 그리고 시군 보건소가 함께 참여하여 돌봄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 수행
- 읍면동 단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참여하여 돌봄대상자에 대한 발굴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이후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그리고 돌봄대상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평가 등의 업무 추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 주민센터와 함께 돌봄대상자의 발굴 및 사후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업무 분담

4. 전북형 돌봄정책 예산계획(안)

- 전북형 함께돌봄 체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돌봄정책과 연계하여 도비지원 보충적 돌봄의 확대와 특별돌봄의 신설을 통해 다층적(3층위) 돌봄안전망 구축
- 기본돌봄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고위험 돌봄대상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을 위해 민관 돌봄사업과의 상호 연계 강화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보충돌봄은 청년, 장년 등 새로운 돌봄수요층과 기본돌봄에서 배제된 고위험 돌봄대상자를 발굴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확대
- 특별돌봄은 돌봄욕구와 돌봄필요도가 있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신설하여 기본돌봄과 보충돌봄이 포괄하지 못한 돌봄사각지대를 발굴 및 추가지원

[표 5-10] 전북형 함께돌봄 정책 대상과 방향

구분	정책대상	정책방향
기본돌봄(1층)	저소득 취약계층 및 외상중심의 고위험 돌봄대상자	기존 돌봄사업과의 연계 강화
보충돌봄(2층)	청년, 장년 등 새로운 돌봄수요층 및 기본돌봄 배제 고위험 돌봄대상자	돌봄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특별돌봄(3층)	돌봄욕구와 돌봄필요도가 있는 일반 도민	신규 돌봄서비스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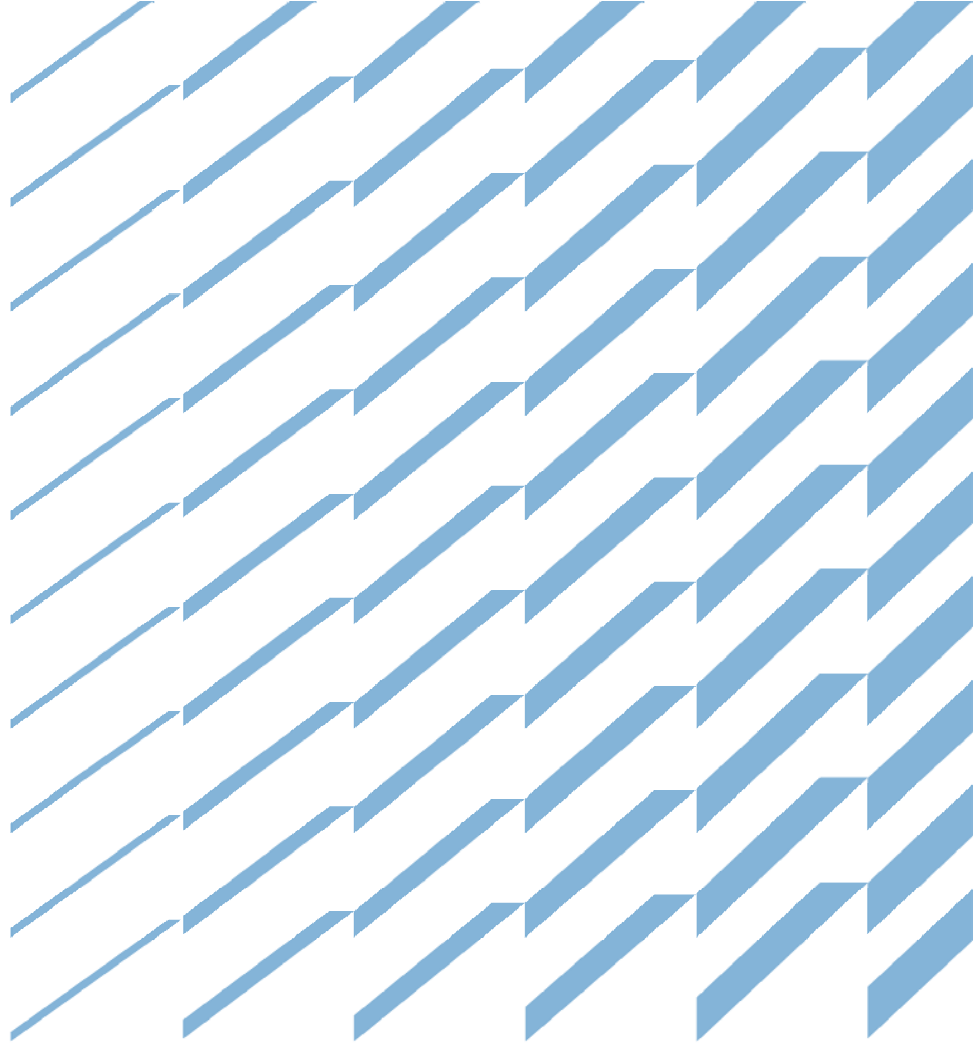


[표 5-11] 전북형 함께돌봄 중장기사업 목표 및 예산계획(인)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사업	사업량				예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본돌봄 (연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4,500명	4,600명	4,700명	4,900명	37,600	38,436	39,271	40,942
	공동육아나눔터	27개소	27개소	28개소	30개소	1,476	1,476	1,531	1,640
	지역아동센터	287개소	287개소	287개소	287개소	56,000	56,000	56,000	56,000
	농번기 아동돌봄지원	21개소	21개소	23개소	25개소	650	650	712	774
	다함께 돌봄	58개소	58개소	57개소	58개소	5100	5100	5012	5100
	초등돌봄/상과후 돌봄	15,000명	16,000명	17,000명	17,000명	교육부 연계	교육부 연계	교육부 연계	교육부 연계
	방과후 아카데미	900명	950명	950명	1,000명	4,116	4345	4345	4573
	노인장기요양보험	57,000명	58,000명	59,000명	61,000명	국/제도 연계	국/제도 연계	국/제도 연계	국/제도 연계
	노인맞춤돌봄	38,000명	39,000명	40,000명	41,000명	55,700	57,166	58,632	60,097
	장애인활동지원	51,000명	5,200명	5,300명	5,400명	137,640	14034	14304	14574
보충돌봄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3,200명	3,300명	3,400명	3,500명	4,600	4,744	4,888	5,0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38,000명	38,500명	39,000명	40,000명	4,000	4,053	4,105	4,211
	산후건강한 아동복지	4,200명	4,200명	4,300명	4,500명	840	840	860	900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도)	-	-	-	-	-	-	-	-
	유치원돌봄교실 운영(도)	444개소	444개소	450개소	450개소	2,400	2,400	2,432	2,432
	찾아가는 돌봄교실	5개소	6개소	7개소	8개소	810	972	1,134	1,296
	초등돌봄 간식지원	13,000명	13,500명	14,000명	15,000명	933	969	1005	1077
	청년마음건강지원	350명	400명	450명	500명	210	240	270	300
	일상돌봄서비스	50명	70명	90명	100명	3,300	4,620	5,940	6,600
	긴급돌봄	107명	130명	150명	200명	70	85	98	131
	가사간병방문지원	1,000명	1,100명	1,200명	1,400명	5,200	5,720	6,240	7,28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8,000명	29,000명	29,000명	30,000명	5,100	5,282	5,282	5,464
	특별돌봄 (신설)	의료돌봄	200명	300명	400명	400명	216	324	432
가사돌봄		400명	500명	600명	600명	972	1,215	1,458	1,458
이동돌봄		350명	500명	500명	500명	108	130	150	173
시설돌봄		30명	40명	40명	40명	38	50	63	63
주거돌봄		9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540	600	600	600
식사돌봄		900명	1,100명	1,100명	1,100명	1,458	1,620	1,782	1,940
동행돌봄		350명	500명	500명	600명	107	153	153	183
안전돌봄		900명	1,000명	1,000명	1,200명	1,080	1,200	1,200	1,440
긴급돌봄		300명	400명	400명	500명	135	180	180	225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특별돌봄(신설)의 재정부담은 도비50% 시군비50%로 계획하여 추진 검토
- 전북형 함께돌봄사업의 신설사업(특별돌봄) 추진 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군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 후 단계적 확대 추진방안 검토
-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 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개발 추진
- 도시형 돌봄(청장년, 일반도민 중심)과 농촌형 돌봄(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각각 1개씩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시군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결론

-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돌봄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고립은둔청년이나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위기청년의 증가로 인해 기존 돌봄체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새로운 돌봄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돌봄안전망 구축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23.2%이고 1인 가구도 35.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립은둔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도 약 5% 내외로 추정되고 있음
- 여기에 전북자치도의 맞벌이 가구는 2021년 말 기준 24.6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54.3%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맞벌이 가구와 함께 주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아동돌봄이나 노인 및 장애인 돌봄도 일시적인 돌봄의 부재가 발생하는 등 돌봄욕구의 다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한 새로운 돌봄안전망 구축 필요
- 현행 돌봄정책은 국가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돌봄체계는 대부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돌봄까지를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돌봄수요의 증가와 긴급한 돌봄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돌봄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정책은 돌봄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이 파편화되어 있고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에 따라서 분절되어 있음
- 따라서 보호와 요양 중심의 단순돌봄을 뛰어넘어 심리·정서,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돌봄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민관 돌봄체계의 연계 강화로 돌봄서비스의 고도화와 질적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돌봄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타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주도의 돌봄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를 진단함
- 여기에 더하여 전북의 돌봄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 돌봄정책 현황과 운영사례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돌봄정책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세가지 방안으로 제시함

- 먼저 전북형 돌봄체계는 국가돌봄과 기존 지역돌봄과 연계하여 3단계로 다층의 촘촘한 돌봄안 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국가의 돌봄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정책으로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으로 국가돌봄과 연계한 돌봄의 확장 지원 추진
- 두 번째는 새로운 돌봄수요 즉, 新돌봄수요 대응 돌봄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돌봄사각지대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돌봄안전망 구축 추진
- 즉, 돌봄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돌봄수요(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소외 중장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정책이 가능하도록 민관의 다양한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돌봄전달체계 구축 추진
- 최근 사회적 고립의 심화에 따른 고립은둔 청년 및 소외 중장년 가구 등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추진
- 마지막으로 전북형 돌봄체계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축, 즉, 돌봄필요도에 따른 돌봄수요층 대상 통합돌봄과 중위소득 85% 이하의 모든 도민에게는 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 돌봄 추진
- 돌봄필요도 조사에 기반하여 돌봄필요정도와 돌봄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되 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기준 487만원) 돌봄수요가 있는 중산층 등의 도민에게는 무상 돌봄 서비스 제공하여 소득수준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부여
- 이를 통해서 전북자치도는 국가의 돌봄체계와 연동하여 모든 도민에게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실천방안 마련 필요
- 다만, 전북형 돌봄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특별돌봄서비스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단계적 전면시행의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전북형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과 전담 조직 등 세부적인 실천로드맵 구상 필요
- 전담조직은 반드시 노인만이 아닌 장애인과 아동, 청년, 일반 지역주민을 모두 아우르는 행정조직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설계와 운영과정 필요

참 고 문 헌

REFERENCE

- 김미옥. (2024).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실행 과제, 보건복지포럼, 330권, 37-49.
- 김송이, 황선영. (2021).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의 역할과 과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8권, 제2호, 225-258.
- 박선희, 강채련. (2024). 경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및 개선과제. 경남연구원
- 송인주, 김지민. (2022). 지속가능한 돌봄 SOS 센터 사업발전방안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이민경, 오다은, 김성희, 김요진, 이동석, 심석순, 이현민. (2021). 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 대안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성은, 이민경, 강지원, 윤수경, 서윤경, 허은영. (2021).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장애돌봄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용호. (2018).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 보건사회연구. 38(4), 10-39.
- 정인경, 문용필, 좌현숙, 이선미. (2023).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모형 개선방안 연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최현임. (2022). 보편적 초등아동 마을돌봄 모델개발 실행연구-지역사회 아동돌봄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71권, 제2호, 1-22.
- 황명구. (2021). 충북형 노인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맞춤형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충북연구원.
- 함선유. (2023). 가족돌봄청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주희, 오욱찬, 이윤경, 함영진, 김동기, 김찬우, 박성준, 김진희. (2020). 65세 이상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광주광역시. (2024).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편람
- 광주광역시. (2024). 광주다움 통합돌봄 운영지침
- 건강보험공단. (2023).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24).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서울복지재단. (2023). SOS센터 운영 매뉴얼
전라북도. (2021). 지역사회보장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eonbuk State's Care System

Jung-Seb Lee · Wonjee Cho · Pyongrok Oh · Hyun Su Kim

1. Research Goals and Methods

- Jeonbuk State should create a comprehensive care safety net at the state level to address these adverse developments: 1) High demand for care services from declining fertility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nd 2) emerging blind spots in the existing care system with more youth in crisis, including socially withdrawn individuals and young caregivers.
- In Jeonbuk State, 23.2% of the population is elderly, and single-person households make up 35.9% of all households. The proportion of youth who suffer isolation is estimated to be around 5%. As of the end of 2021, double-income households numbered 246,000, making up 54.3% of all households. All these statistics indicate a steady increase in demand for urgent care services.
- In dual-income families, a sudden illness or injury of the main caregiver will result in temporary unavailability of care services for children, seniors,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us, it is imperative to build a new version of care safety net that can adapt to changing and diverse care needs.
- The central government's care policies focus on vulnerable social groups, failing to address the daily care needs of local residents.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vance the existing care system into an integrated care delivery system that transcends simple care centered on protection and nursing and encompasse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networking.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better care service delivery and growth.
-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urrent landscape of care services and conducted case studies on local government-led care policies from other cities and provinces. Furthermore, we identified neglected blind spots in Jeonbuk's care system and proposed specific action plans to address them.

2.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We propose three detailed action plans for Jeonbuk-specific care policies.
- First, the Jeonbuk-specific care system must create a three-pronged, multi-layered care safety net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al care system and local care systems, thus providing safe and systematic care services.
 - The primary focus of national care policies is on the low-income vulnerable class, which leaves little space for addressing the care needs of local residents. Thus, Jeonbuk State must redouble its efforts to expand national care-linked care services.
- Second, to formulate a comprehensive care policy that embraces new care needs (e.g., socially isolated youth,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socially neglected middle-aged) following changes in care environments, Jeonbuk State needs to reinforce its partnerships with various public and private caring institutions to build an integrated care safety net and subsequently address blind spots in the care system.

- Last, the Jeonbuk-specific care system should prioritize laying a foundation for providing customized care services to all residents in need of care. The local government must implement an inclusive care system by offering tailored care services based on individual needs and providing free care to all Jeonbuk residents with a median income of 85% or less.
- Customized care services should be based on a survey assessing individual needs and preferences.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ensure the public nature and accountability of income-specific care services by providing free care services to Jeonbuk residents who need care services and whose median income is below 85% (KRW 4.87 million for a family of four).
- In this way, Jeonbuk State should devise detailed action plans to offer more targeted care services to all residents, aligning with the national care system.
- Jeonbuk State's care policies require a comprehensive strategic roadmap, budget, and dedicated organization,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cities and counties. Notably, a proposed dedicated organization must embrace not only elderly people but also people with disabilities, children, youth, and even general residents, which necessitates careful planning and effective operational procedures.
- We propose a pilot project for the newly introduced special care services, dividing them into urban and rural types due to the significant budget involved. We recommend that the full-scale provision of special services be subject to the performance of the pilot project.

Key Words

Integrated Care System, Customized Care Services, Care Safety Net, Socially Isolated Youth, Public-Private Partnership

정책연구 2024-17

전북형 돌봄체계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4년 11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69-2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4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방향 기초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방안 연구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연구
「태조 이성계」 지역 대표 자산화 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헵프) 산업 육성 전략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전북자치도 디지털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 전략 연구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방안 연구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제 관리 모델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확대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 특화 관광자원개발 연구
전북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전략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 방안

현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새만금 산단 전력인프라 구축 대응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활동 현황조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해외도시간 협력관계 구축방안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방향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췌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